http://rri.krc.or.kr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ystem for Farmers and Fishermen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9.

농 림 부
한국농촌공사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9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환
연구위원 박대식

연구보조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최해춘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 연구기간 : 2006.6.12～2006.9.12(3개월)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인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시장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경감지원이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경감 필요가 없는 고소득 계층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2 목 적

○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취지를 재조명해 보고,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 파악을 토대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4. 연구내용 및 결론

4.1. 연구내용

○ 선행연구의 검토

○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경감 지원의 필요성과 취지
- 경감대책의 추진 경과
- 경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관련 법령의 검토

- 농어업인 관련 현행 관련 규정의 검토
- 사회보험 관련 법령
  - · 경감제도의 기본취지(사회보험의 원리)
  - · 현행 법 체계 하에서의 경감지원의 차등 가능 여부

-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 · 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
  - · 사회보험 관련전문가의 의견

○ 외국의 사례
- 대만
- 일본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경감 대책 개선의 기본방향
-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검토
- 대안별 시뮬레이션
-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시행시의 정책과제
- 정책적 측면
- 제도(법률)적 측면

4.2. 연구결과

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경과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제도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8년 통합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할 때부터 도입되었음.
- 처음에는 각 농어업인세대의 산정보험료의 15%를 경감하였으며, 2001년부터 경감율이 22%로 인상되었음.

○ 2004년부터는 시장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8%를 경감하였으며, 추가 경감율은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28%로 인상되었음.

나.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실태

○ 2006.1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세대는 535,826세대임.

○ 농어업인(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농업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재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산정됨.

- 농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276세대에 불과
-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전체의 48%, 재산이 있는 세대가 91.8%로서 대부분의 농어업인 세대가 재산과 종합소득에 기초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료 등급은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세대는 하위등급에 분포하고 있음.

- 그러나 고등급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세대도 일부 존재

○ 농어업인세대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하였으나 2004년부터 매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율이 인상되어 농어업인이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감소하였음.

- 2004 : 40,957원 ⇒ 2005 : 36,660원 ⇒ 2006 : ⇒ 34,955원

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에 대한 견해

○ 선행연구들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계층은 더욱 높게 하고 상위계층은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표 1.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관련 선행연구의 요약

선행연구	차등・제외에 대한 입장	차등지원방법
정명채 외(2000)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 10%, 30%, 50%씩 지원
농특위(2002)	의료서비스여건등 고려 차등지원	경감폭을 세분화 (22~50%)
차흥봉 외(2004)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상,중,하 3등급 구분 1/3, 1/2 ,2/3 지원
이혜훈(2004)	소득등급별 차등화	소득등급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 상한제 설정
최병호 외(2004)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지원	면제 혹은 경감
참여복지기획단(2004)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구체적 방법 미 제시
박대식(2006)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구체적 방법 미 제시

표 2. 건강보험료 경감 차등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견해

기관별		차등・제외의 입장	이유
농림부	A	차등지원・배제 불가	명문규정 부재
	B	차등지원・배제 가능	혜택의 불공평성 존재
보건복지부		지원제한 불가	명문규정 부재
법무법인 정평		지원제한 불가	일괄 규정만으로 지원차등 불가 ⇒ 별도규정 신설과 객관적 기준 적용시 지원 차등 가능
법무법인 화우		차등지원・제외 불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법무법인 태평양		불가	혜택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 및 법령상 근거 필요
농림부 담당변호사		차등지원 곤란	별도의 명시적 근거 필요 ⇒ 현행 법령상의 범위 규정에 변경이나 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법률규정 또는 위임근거 조항에 따른 법제화 필요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기관 및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라.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소득재분배)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은 형평성, 합리성, 실천성 및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

마. 경감대책의 대안 검토

○ 경감지원방법에는 제외, 경감, 면제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여기에서는 차등경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차등경감방안에는 보험료등급별로 차등하는 방안(Ⅰ안, Ⅱ안)과 등급간격별로 차등하는 방안(Ⅲ안, Ⅳ안, Ⅴ안)이 있음.

- 여기에서는 등급간격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함.

○ 대안별 비교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Ⅳ-1안>과 <Ⅴ-1안>이 적용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을 구비하여 <Ⅴ-2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검토한 방안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경감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아울러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표 3. 대안별 개요

대안별 \ 구간수			1	2	3	4	5
제Ⅰ안 제Ⅱ안		등급범위	· 100등급				
		경감율(%)	· 제1안 : 50% ~ 22%(등급별로 0.28%씩 차등) · 제2안 : 50% ~ 25(30)%(등급별로 0.25(0.20)%씩 차등)				
제Ⅲ안		등급범위	49등급 이하	50~59	60~70	71~81	82등급이상
		경감율(%)	50(28)	45(23)	40(18)	35(13)	30(8)
제Ⅳ안	1	등급범위	55등급 이하	56~71	72등급이상	-	-
		경감율(%)	50	40	30	-	-
	2	등급범위	34등급 이하	35~49	50~55	56~71	72등급 이상
		경감율(%)	70	60	50	40	30
	3	등급범위	25등급 이하	26~34	35~55	56~71	72등급 이상
		경감율(%)	70	60	50	40	30
제Ⅴ안	1	등급범위	55등급 이하	56등급 이상	-	-	-
		경감율(%)	50	50~25.25	-	-	-
	2	등급범위	34등급 이하	35~55	56등급 이상	-	-
		경감율(%)	60~50	50	50~25.25	-	-

주 : 경감율은 농어촌부분(22%)까지 포함한 비율임.

표 4. 대안별 비교

		법 개정 필요성	예산 사정	형평성 개선효과	용이성 (실현성)	수용성	종합	추진 순위
제Ⅰ안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제Ⅱ안	1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2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제Ⅲ안		불필요	충분	작음	보통	보통		③
제Ⅳ안	1	불필요	충분	작음	양호	보통		①
	2	필요	불충분	큼	양호	큼	· 법 개정 필요 · 예산 추가 확보	⑥
	3	필요	불충분	큼	양호	큼	· 법 개정 필요 · 예산 추가 확보	⑤
제Ⅴ안	1	불필요	충분	보통	양호	보통		②
	2	필요	충분	큼	보통	큼	· 법 개정 필요	④

주 :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57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등이 있음.

5. 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ABSTRACT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ystem for Farmers and Fisherme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improvement way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ystem for farmers and fisherm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ystem is a system to reduce an economic burden of the farmers and fishermen whos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 are poor, and economic power is weak. However, the reduction system as opposed to high income strata, is pointed out as a social problem in a social fairness -related dimension.

Farmers and fishermen are taking the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reduction for them as well as the premium reduction(22%) for rural inhabitants from 2004. The additional insurance premium reduction rate increased from 8% in 2004 to 28% in 2006. Though it went down every year, the calculated medical insurance premium of farmers and fishermen rose, their substantial medical insurance premium burden decreased.

In January 2006, the number of households having the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men is 535,826. Most of these are belonging to low health insurance premium class, the small part of these are belong to high health insurance premium class. Most precedent studies insisted on the graded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method, and making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upport a difference. The precedent studies insisted that the reduction support rate of the lower tier should be increased, but that of the higher tier should be decreased.

In this study, the premium reduction ways to reduce an economic burden of the farmers and fishermen were examined. The premium reduction ways were based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There are strength and weakness respectively so that we have an

exclusion, reduction, exemption by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support method. In this study, the graded health insurance premium reduction methods were examined chiefly.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 the desirable insurance premium reduction method is as follows: the reduction rate for low class is 51~60%, the reduction rate for intermediate class is 50%, the reduction method for high class is fixed amount reduction. In order to obtain the desired result by using this reduction method, the related law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levy system must be improved.

Researchers: Kyeong-Hwan Choi, Dae-Shik Park

목 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2. 선행 연구의 검토 · 3
1.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6
1.4. 연구 방법 · 8

2.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와 문제점
2.1.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경과 · · · · · · · 9
2.2.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조달의 원칙 · · · · · · · · · · · · 11
2.3.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 · · · · · · · · · 11
2.4. 현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에 대한 견해 · · · 31

3. 외국의 사례
3.1. 대만 · 45
3.2. 일본 · 47
3.3. 시사점 · 48

4.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4.1.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49
4.2.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유형과 장 · 단점 · · · · · · · · 51
4.3.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대안별 검토 · · · · · · · · · · 53
4.4. 경감대책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 · · · · · · · · · · 65
4.5. 금후의 과제 · 73

5. 요약 및 결론 · 80
참고문헌 · 82
부표 1~6 · (84~89)
부록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법령 · · · · · · · · · 90
2. 경감방안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 · · · · · · · 94

표 목 차

제2장

표 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9
표 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내역 · 12
표 2-3. 지역별 농어업인 분포 형황 · 19
표 2-4. 직역별 농어업인 분포 현황 · 19
표 2-5. 농어업인세대의 보험료 등급별 분포 현황 · · · · · · · · · · · · · 21
표 2-6.「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22
표 2-7. 농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23
표 2-8.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24
표 2-9. 임대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 25
표 2-10. 연금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 26
표 2-11. 근로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 27
표 2-12. 근로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 · · · · · · · · · · 28
표 2-13. 연도별 농어업인세대 평균건강보험료 추이 · · · · · · · · · · · 29
표 2-14. 2004년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 · · · · · · · · · · · 30
표 2-15. 2005년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 · · · · · · · · · · · 30
표 2-16. 2006년도(6월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 · · · · · 30
표 2-17.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관련 선행연구의 요약 · · · · · · · · · · · 31
표 2-18. 건강보험료 경감 차등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견해 · · · · · · 44

제3장

표 3-1. 대만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유형별 재원분담비율 · · · · · · · · · 46
표 3-2. 일본 건강보험의 적용유형과 보험료 부과 · · · · · · · · · · · · 47

제4장

표 4-1.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 56
표 4-2. 소득수준별 소득등급의 비교 · 57
표 4-3. 대안별 경감지원 내역 · 62
표 4-4. 대안별 장단점 비교 · 64
표 4-5. 제Ⅰ안의 지원 증감 비교 · 65
표 4-6. 제Ⅱ-1안의 지원 증감 비교 · 66

표 4-7. 제II-2안의 지원 증감 비교 · 66
표 4-8. 제III안의 지원 증감 비교 · 67
표 4-9. 제IV-1안의 지원 증감 비교 · 68
표 4-10. 제IV-2안의 지원 증감 비교 · · · · · · · · · · · · · · · · · · · 69
표 4-11. 제IV-3안의 지원 증감 비교 · · · · · · · · · · · · · · · · · · · 70
표 4-12. 제V-1안의 지원 증감 비교 · · · · · · · · · · · · · · · · · · · 71
표 4-13. 제V-2안의 지원 증감 비교 · · · · · · · · · · · · · · · · · · · 71
표 4-14. 대안별 비교 · 73

그 림 목 차

제2장

그림 2-1. 통합직전(1998)의 의료보험 적용체계 · · · · · · · · · · · · · · · · 10
그림 2-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 · · · · · · · · · · · · · · · · · · 14
그림 2-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의 범위 · · · · · · · · · · · · · · · · 18
그림 2-4. 보험료 등급별 농어업인 분포 현황(2006.1 현재) · · · · · · · · 20

제4장

그림 4-1.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제1안,제2안) · · · · · · · · · · · · · · · 54
그림 4-2.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제3안) · · · · · · · · · · · · · · · · · · 58
그림 4-3.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1) · · · · · · · · · · · · · · · · · · · 59
그림 4-4.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2) · · · · · · · · · · · · · · · · · · · 59
그림 4-5.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3) · · · · · · · · · · · · · · · · · · · 60
그림 4-6.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Ⅴ-1) · · · · · · · · · · · · · · · · · · · 61
그림 4-7.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Ⅴ-2) · · · · · · · · · · · · · · · · · · · 6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건강증진, 재활 및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의 소요 재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가입자가 각자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렇지만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일부 계층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고 있음.

○ 농어업인의 경우 ① 의료이용이 도시민에 비해 불편하고, ②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③ 의료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교통비, 식사비 등)이 소요됨과 아울러, ④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촌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이 실시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가입자[1)]에게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보험료의 15%를, 2001년부터 보험료의 22%를 경감해 주고 있음.
- 추가적으로 농림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 특별법')및 「농어

1) 모든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어업인과 과세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세대가 대상임.

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하여 2004년에는 보험료의 8%를 경감하였고 2005년에는 18%, 금년(2006년)부터는 28%를 경감해 주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2].

- 첫째,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비율(15%)이 너무 낮음.
- 둘째, 노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경감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없고 과표재산이 일정규모 이하(2,000~5,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나 재산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대상자들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셋째, 경감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경감 필요가 없는 고소득 계층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음.
- 이상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경감비율이 22%[3]로 상향조정되었고, 두 번째의 경우는 과표재산규모가 3,500~10,000만원[4]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 따라서 이들 두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이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2005년도 감사원의 농림부 업무 감사 시 비농업소득(일반사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훨씬 많은 계층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것은 보험료 경감대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농업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사업소득의 비중이 큰 고소득 계층도 보험료 경감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

---

2) 정명채 외(2000).

3) 2001년부터 22%로 상향조정됨.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가 2006.7.1 개정되어 과표재산기준이 3,500~10,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 특히 최근 농어업인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에 못지 않은 경제력을 지닌 세대가 농어업인의 규정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 지역 주민간에 위화감을 야기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중 세 번째 문제점(경감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고소득 계층의 수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취지를 재조명해 보고, 실태 파악을 토대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1.2. 선행연구의 검토

○ 농어업인 국민건강 보험료 경감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방식)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영자, 특히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명채 외(2000)는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통합 이후 적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전국민 통합 후의 자영자 전체에게 통용될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상하되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선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여 전국민이 소득과표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대식 외(2001)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22%의 보험료 경감은 농업인 소득의 저위와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미흡하므

로 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홍규 외(2002)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자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수준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는 농어촌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낮은데다가, 원거리 이용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어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 폭(22~50%)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능력을 경감하는 것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보험료 경감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라 고소득 계층이 지원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연구는 정명채 외(2000), 유경준 외(2004), 최병호 외(2004), 차홍봉 외(2004) 등이 있음.

- 정명채 외(2000)는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수준(당시 15%)을 건강보험 통합 이후의 직장인들과의 소득비례 보험료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꾸어 경감수준을 최소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감 지원 수준을 저소득층은 50%, 중간소득층은 30%, 고소득층은 10%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음.

- 홍석표 외(2002)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국고지원금을 세대별로 차등지원함으로써 국고지원금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부담 능력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함.

- 최병호 외(2004)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여 부

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혹은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혜훈(2004)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달성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였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대폭 경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 중의 하나로 소득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의료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계층은 의료수급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차흥봉 외(2004)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를 모색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대안들 중의 하나로 보험료는 현행 방식으로 부과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국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참여복지기획단(2004)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되, 확대지원 대상은 농어업 종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농어민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박대식(2006)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감사원의 농림부 업무감사 시의 지적을 계기로 고소득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의 제외 또는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농림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내에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음.

- 지원제한이 어렵다는 입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을 소득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농어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 또는 그 범위를 변경하거나 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필요

\ 건강보험료의 경감지원은 기본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22%를 포함하여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지원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등지원이나 지원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

\ 2005년 1인당 경감지원액이 평균 132,000원대이나 최고 2,855,000원 등 수 백만원의 혜택을 받는 불공평성 존재

\ 국민연금법에서는 농업소득 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감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되고 있음.

1.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3.1. 연구의 범위

○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

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자체를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한정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함.

1.3.2. 연구의 내용

○ 선행연구의 검토
○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경감 지원의 필요성과 취지
- 경감대책의 추진 경과
- 경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관련 법령의 검토
- 농어업인 관련 현행 관련 규정의 검토
- 사회보험 관련 법령
  · 경감제도의 기본취지(사회보험의 원리)
  · 현행 법 체계하에서의 경감지원의 차등 가능 여부
-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 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
  · 사회보험 관련전문가의 의견

○ 외국의 사례
- 대만
- 일본

○ 경감 대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경감 대책 개선의 기본방향
-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검토
-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시행 시의 정책과제
- 정책적 측면
- 제도(법률)적 측면

1.4.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및 자료의 검토
○ 보험료 부과자료의 통계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보험료 부과 자료 분석
○ 현지 사례조사
○ 실무담당자의 의견 수렴
○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농특위(소위) 안건 상정
○ 관련 전문가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 전문가와의 공동작업

2.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와 문제점

2.1.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경과

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이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1979),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농어촌주민(1988)으로 점차 확대되고 도시주민(1989)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이하였음.

○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되면서 시행초기부터 조합방식으로 시행되던 의료보험의 통합작업이 추진되어 2000년 7월 전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건강보험이 탄생하게 됨.

표 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1963.12 : 의료보험법 제정
○ 1977. 7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시행
○ 1979.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
○ 1981. 7 : 지역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
○ 1982. 7 : 2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1988. 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 1989. 7 :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
○ 1998.10 :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의 통합
(제1차 통합,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 2000. 7 :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
(제2차 통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03. 7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

○ 그동안 1개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 145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군지역조합 92개, 시지역조합 135개)으로 분산되어 있던 의료보험조합이 1998.10월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1차)되고, 2000.7월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2차, 완전통합)되었음.

그림 2-1. 통합직전(1998)의 의료보험 적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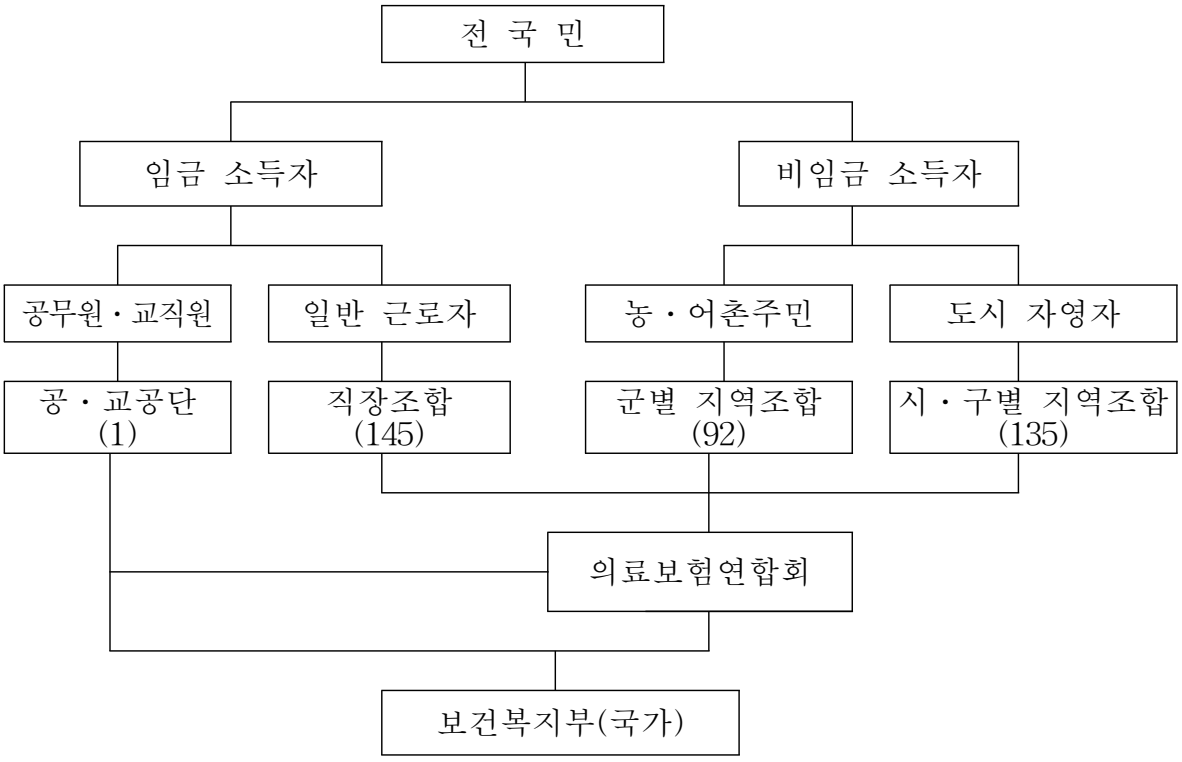

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대두

○ 농어촌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과거 통합 이전에도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노인인구의 분포, 의료시설의 도시편중 및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 제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의 차등지원과 재정공동사업 등으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 왔음.

○ 이러한 기조를 통합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계승하여 농어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감율[5]을 적용하였음.

5) 처음(1998)에는 15%이었으나 2001년부터 22%로 인상됨.

2.2.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조달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비용조달의 원칙에 따름.

-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라 부담(부담의 형평성)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이용의 형평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점은 타 사회보험과 동일하나, 타 사회보험들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되 부담에 비례하여 수혜를 보는 점이 차이점임.

2.3.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

2.3.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내역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대상 :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 세대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생활곤란세대 제외), 재산이 일정 범위 이하이어야 함.

○ 경감 수준 : 10~50%

○ 경감 지원 한도 : 세대당 총보험료의 50% 이내

2.3.2. 농어업인(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3.2.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

표 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내역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경감대상</th><th colspan="3">경감적용</th><th colspan="2">적용요지</th></tr>
<tr><th>등급</th><th>비율(%)</th><th>소득금액</th><th>과표재산</th><th>장애등급</th></tr>
<tr><td rowspan="15">지역가입자</td><td rowspan="3">· 65세 이상 노인세대
· 모자·부자 가정세대
· 소년·소녀 가정 세대</td><td>1</td><td>30</td><td>없어야 함</td><td>3,500만원 이하</td><td rowspan="3"></td></tr>
<tr><td>2</td><td>20</td><td>없어야 함</td><td>6,200만원 이하</td></tr>
<tr><td>3</td><td>10</td><td>없어야 함</td><td>10,000만원 이하</td></tr>
<tr><td rowspan="3">· 등록장애인 세대등
(국가유공자)</td><td>1</td><td>30</td><td>없어야 함</td><td rowspan="3">10,000만원 이하</td><td>1~2등급</td></tr>
<tr><td>2</td><td>20</td><td>없어야 함</td><td>3~4등급
(상이자는3~5등급)</td></tr>
<tr><td>3</td><td>10</td><td>없어야 함</td><td>5~6등급
(상이자는 6~7등급)</td></tr>
<tr><td>·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경매, 압류</td><td>-</td><td>20</td><td>제한없음</td><td>제한없음</td><td>-</td></tr>
<tr><td rowspan="3">·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장기수용
- 만성질환</td><td>1</td><td>30</td><td>없어야 함</td><td>3,500만원 이하</td><td rowspan="3">-</td></tr>
<tr><td>2</td><td>20</td><td>없어야 함</td><td>6,200만원 이하</td></tr>
<tr><td>3</td><td>10</td><td>없어야 함</td><td>10,000만원 이하</td></tr>
<tr><td>· 농어촌 경감</td><td colspan="3">22%</td><td colspan="2">·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세대중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자 제외)</td></tr>
<tr><td>· 도서·벽지 경감</td><td colspan="3">50%</td><td colspan="2">·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td></tr>
<tr><td>· 농업인 경감</td><td colspan="3">28%(추가)</td><td colspan="2">군·도농복합 시의 읍·면(농어촌)지역 거주세대 및 동의 녹지지역(농어촌)·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세대로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td></tr>
<tr><td rowspan="3">직장가입자</td><td>· 도서·벽지 거주 근로자</td><td colspan="3">50%</td><td colspan="2">· 도서·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근로자</td></tr>
<tr><td>· 요양기관 이용제한지역의 군인</td><td colspan="3">20%</td><td colspan="2">· 요양기관이 제한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td></tr>
<tr><td>·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국외 근무자</td><td colspan="3">50%</td><td colspan="2">· 국외근무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td></tr>
</table>

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점수당 보험료)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

2.3.2.2.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2.3.2.3. 부과체계

○ 세대별 소득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31.4원[6](적용점수당 보험료)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31.4원(적용점수당 보험료)

2.3.2.4. 부과항목별 검토

○ 소득 :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음

- 농업소득[7]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을 기초로 조사된 농어민소득
  -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농지소득액의 20%를 부과소득으로 책정
  - ・ 농어업인 세대 535,826세대중 농업소득 보유세대는 276세대에 불과함.
- 사업소득 :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의 근거로 납세자의 신고로 발생된 소득
  - ・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소득금액(사업의 종류,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과표 금액)을 부과소득으로 책정
- 임대소득 : 부동산(건물, 토지 등)등을 임대하여 발생된 소득
  - ・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과표 금액)을 부과소득으로 책정
-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

---

6) 적용점수당 보험료는 매년 변경됨(2005년에는 126.5원이었음).

7) 여기에서 농업소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시・군)이 농가별로 파악하여 통보한 소득자료를 말함.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농업소득이나 이론상의 농업소득의 정의와는 다름. 현재 농업세 부과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군에서 농가의 농업소득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임.

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5개 연금관리기관에서 통보된 연금소득금액의 20%를 부과소득으로 책정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보수, 봉급, 급여 등

·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근로소득액의 20%를 부과소득으로 책정

그림 2-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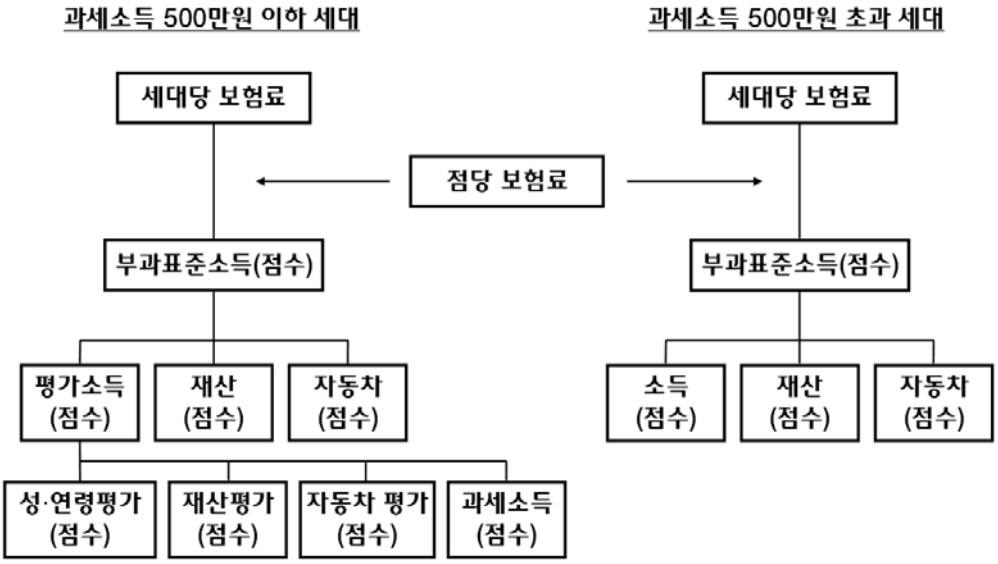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소득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부과등급 구분	산정방법(점수 합산)	보험료 결정
① 소득등급별점수(70등급) ② 재산등급별점수(50등급) ③ 자동차등급별점수 (7등급, 28구간) ④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점수(30등급)	·소득 500만원 이하 (② + ③ + ④) ·소득 501만원 이상 (① + ② + ③)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 결정(100등급) ⇩ 적용점수×적용점수당금액

○ 재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을 기초로 지방세 부과대상인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이 있으며,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금(월세금 포함)을 재산으로 간주

- 건물 : 지방세법 제187조, 시행령 제138조상의 과세표준액
- 토지 : 지방세법 제187조, 시행령 제138조상의 과세표준액
  · 자료 제공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 전월세금 :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세대에 해당
  · 전월세금액은 지역 및 주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조사한 직권 전월세액
  · 전월세금액의 20%를 부과대상으로 책정

○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을 근거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액을 기준
- 자동차 세액은 자동차의 용도·배기량·연식에 따라 결정됨.
  · 자료 제공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생활수준 : 재산 7구간, 자동차(연간세액) 7구간
- 경제활동 참가율 : 가입자의 성·연령별 4구간

2.3.2.5.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8)]

○ 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범위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확대 적용에 따른 '무임승차 심리'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구조상의 '평가소득 및 부과표준소득의 운영 문제'

2.3.3.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의 개요

○ 목적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의료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내용
-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경감지원(22%) 외에 농어업인세대에

8) 차흥봉 외(2004) pp:6~8. 참조

대한 추가 지원을 2004년부터 실시

○ 재원
- 추가 지원은 농특세 재원으로 실시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내용의 변화
- 경 감 율 : (04년) 30 → (05년) 40 → (06년 부터) 50%
  (농어업부분) 8 18 28%
- 예산 지원액 : (04년) 340 → (05년) 794 → (06년) 1,359억원
- 대상지역 확대 : 읍·면지역 → (04.7.1) 시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추가
  → (06.7.29) 특·광역시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원근거 및 지원율 등
- 기본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산정 보험료의 22%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시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율)
    ①항 :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③항 : 100분의 22를 경감(농어촌 경감 부분)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 27조에서 추가하여 지원
  ·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50%이내의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22% 경감을 포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농어업인 경감 부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3조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의 예(시산)

- 소득이 연 300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인 60세 남성
  - · 보험료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05점+재산 88점 = 193점 × 환산액 131.4원 = 25,360원
  - · 경감액 : 25,360원의 50%인 12,680원(농어촌 부분 22% 5,579원, 농어업인 부분 28% 7,100원)
  - · 개인부담 : 12,680원
- 소득이 연 1,200만원, 재산 2천만원, 4년된 1500cc 자동차 소유
  - · 보험료 : 소득 552점+재산 153점+자동차 47점 = 752점 × 환산액 131.4원= 98,810원
  - · 경감액 : 98,810원의 50%인 49,405원(농어촌 부분 22% 21,738원, 농림부 지원 28% 27,667원)
  - · 개인부담 : 49,405원

2.3.4.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

2.3.4.1. 경감지원 대상

○ 군(郡) 및 도농 복합시(市)의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의 정의(특별법 제2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자, 농지를 소유만 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농업인으로 불인정

그림 2-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의 범위

대상자 \ 대상지역		군(郡)지역	시(市)지역			
			읍·면	동(洞)지역		
				녹지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인		A1	A2	A3	A4	A5
어업인		F1	F2	F3	F4	F5
임업인		M1	M2	M3	M4	M5
비농어업인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 자	L1	L2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 자					
	의료부조대상자					

주 : 용도구역 구분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 구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경감 수준별 지원 대상

- 22% 경감 : 농업인(A1 + A2 + A3 + A4)
  + 어업인(F1 + F2 + F3 + F4)
  + 임업인(M1 + M2 + M3 + M4)
  + 연간소득500만원 미만자(L1 + L2)
- 28% 추가 경감 : 농업인(A1 + A2 + A3 +A4)
  + 어업인(F1 + F2 + F3 + F4)
  + 임업인(M1 + M2 + M3 + M4)

2.3.4.2. 농어업인 현황(2006.1월 현재)

○ 2006년 1월 현재 파악된 농어업인은 1,659,100명이며, 세대수로는 1,457,215세대임(표2-3).

-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1,460,364명, 일반시(市) 지역이 155,883

명, 특・광역시가 42,853명임.

- 농업인이 1,441,980명으로 86.9%를 차지하고 어업인이 216,656명(13.1%)이며, 임업인은 464명에 불과함.

○ 농어업인을 건강보험 유형(직역)별로 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944,470명(831,133세대)으로 가장 많고,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농어업인은 612,310명(535,826세대)이며, 의료보호 대상이 102,320명(90,256세대)임.

- 따라서 2006년 1월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9]은 535,826세대임.

표 2-3. 지역별 농어업인 분포 현황

구 분	계	읍, 면지역	시 지역 (녹지지역)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계	1,659,100	1,460,364	155,883	42,853
농 업 인	1,441,980	1,321,759	99,247	20,974
어 업 인	216,656	138,251	56,561	21,844
임 업 인	464	354	75	35

표2-4. 직역별 농어업인 분포 현황

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보호
1,659,100 (1,457,215)	944,470 (831,133)	612,310 (535,826세대)	102,320 (90,256)

2.3.4.3. 보험료 등급별 농어업인세대 분포 현황(2006.1)

○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세대 535,826세대의 보험료 등급별 분포를 보면, 가장 많이 분포된 등급은 32등급임(15,073세대)(그림2-4).

- 반면 한 세대도 없는 등급도 6개 등급(88, 91, 94, 95, 97,100)이나 존재

9) 농어업인 경감 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자격의 득실에 따라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50등급 미만이 489,976세대로 전체의 90.4%를 차지하고, 높은 보험료 등급에는 일부만이 포함되고 있음(표2-5).

- 81등급 이상에는 61세대만이 해당됨.

○ 등급별 보험료를 살펴 보면, 1등급의 산정보험료는 4,590원인데 100등급의 산정보험료는 1,445,400원으로서 1등급 보험료의 315배에 달함.

○ 보험료 등급이 높아질수록 등급간 보험료 격차가 커지는 체계임.

- 처음에는 1,300원 정도하는 등급간 보험료 격차가 등급이 상승하면서 수 천원대로 커지는데, 60등급 이후부터 간격이 10,000원 이상으로 되어 마지막에는 7만원 정도에 달함(표2-5).

그림 2-4. 보험료 등급별 농어업인 분포 현황(2006.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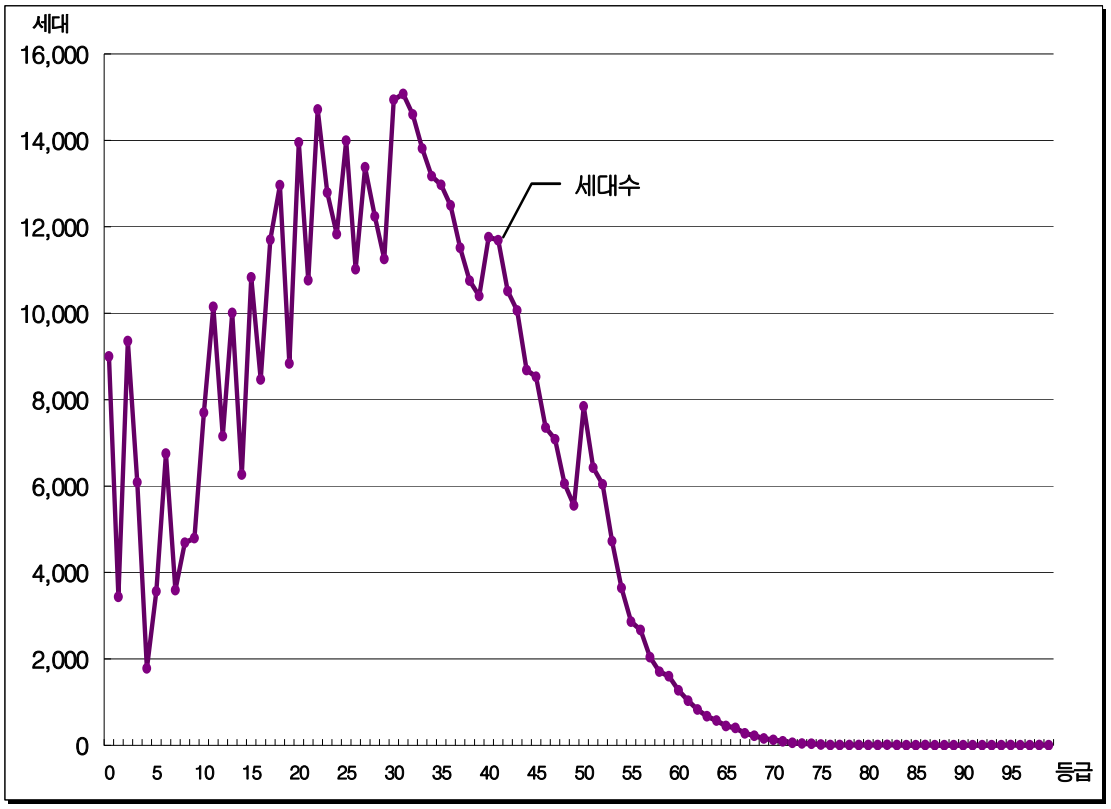

표 2-5. 농어업인세대의 보험료 등급별 분포 현황

등급	적용점수	세대수	누적세대수	누적세대수(역)	산정보험료	등급	적용점수	세대수	누적세대수	누적세대수(역)	산정보험료
1	35	8,998	8,998	535,826	4,590	51	1,055	7,840	497,816	45,850	138,620
2	45	3,435	12,433	526,828	5,910	52	1,105	6,425	504,241	38,010	145,190
3	55	9,356	21,789	523,393	7,220	53	1,160	6,041	510,282	31,585	152,420
4	65	6,083	27,872	514,037	8,540	54	1,220	4,724	515,006	25,544	160,300
5	75	1,776	29,648	507,954	9,850	55	1,280	3,641	518,647	20,820	168,190
6	85	3,560	33,208	506,178	11,160	56	1,340	2,860	521,507	17,179	176,070
7	95	6,751	39,959	502,618	12,480	57	1,405	2,667	524,174	14,319	184,610
8	105	3,590	43,549	495,867	13,790	58	1,475	2,039	526,213	11,652	193,810
9	115	4,686	48,235	492,277	15,110	59	1,545	1,705	527,918	9,613	203,010
10	125	4,791	53,026	487,591	16,420	60	1,620	1,600	529,518	7,908	212,860
11	138	7,696	60,722	482,800	18,130	61	1,700	1,273	530,791	6,308	223,380
12	153	10,144	70,866	475,104	20,100	62	1,785	1,030	531,821	5,035	234,540
13	168	7,153	78,019	464,960	22,070	63	1,875	826	532,647	4,005	246,370
14	183	10,008	88,027	457,807	24,040	64	1,965	670	533,317	3,179	258,200
15	198	6,264	94,291	447,799	26,010	65	2,060	571	533,888	2,509	270,680
16	213	10,826	105,117	441,535	27,980	66	2,160	444	534,332	1,938	283,820
17	228	8,464	113,581	430,709	29,950	67	2,265	402	534,734	1,494	297,620
18	243	11,698	125,279	422,245	31,930	68	2,375	277	535,011	1,092	312,070
19	258	12,958	138,237	410,547	33,900	69	2,490	220	535,231	815	327,180
20	273	8,836	147,073	397,589	35,870	70	2,615	156	535,387	595	343,610
21	290	13,954	161,027	388,753	38,100	71	2,745	127	535,514	439	360,690
22	310	10,761	171,788	374,799	40,730	72	2,880	90	535,604	312	378,430
23	330	14,714	186,502	364,038	43,360	73	3,020	53	535,657	222	396,820
24	350	12,790	199,292	349,324	45,990	74	3,165	42	535,699	169	415,880
25	370	11,826	211,118	336,534	48,610	75	3,320	37	535,736	127	436,240
26	390	13,991	225,109	324,708	51,240	76	3,485	17	535,753	90	457,920
27	410	11,016	236,125	310,717	53,870	77	3,655	7	535,760	73	480,260
28	430	13,378	249,503	299,701	56,500	78	3,820	6	535,766	66	501,940
29	450	12,240	261,743	286,323	59,130	79	4,020	4	535,770	60	528,220
30	470	11,252	272,995	274,083	61,750	80	4,220	5	535,775	56	554,500
31	493	14,936	287,931	262,831	64,780	81	4,425	6	535,781	51	581,440
32	518	15,073	303,004	247,895	68,060	82	4,640	6	535,787	45	609,690
33	543	14,596	317,600	232,822	71,350	83	4,865	11	535,798	39	639,260
34	568	13,810	331,410	218,226	74,630	84	5,105	3	535,801	28	670,790
35	593	13,170	344,580	204,416	77,920	85	5,355	1	535,802	25	703,640
36	618	12,970	357,550	191,246	81,200	86	5,615	2	535,804	24	737,810
37	643	12,496	370,046	178,276	84,490	87	5,890	6	535,810	22	773,940
38	668	11,515	381,561	165,780	87,770	88	6,180	0	535,810	16	812,050
39	693	10,754	392,315	154,265	91,060	89	6,485	2	535,812	16	852,120
40	718	10,395	402,710	143,511	94,340	90	6,800	2	535,814	14	893,520
41	745	11,760	414,470	133,116	97,890	91	7,130	0	535,814	12	936,880
42	775	11,690	426,160	121,356	101,830	92	7,480	1	535,815	12	982,870
43	805	10,509	436,669	109,666	105,770	93	7,845	1	535,816	11	1,030,830
44	835	10,063	446,732	99,157	109,710	94	8,230	0	535,816	10	1,081,420
45	865	8,682	455,414	89,094	113,660	95	8,635	0	535,816	10	1,134,630
46	895	8,528	463,942	80,412	117,600	96	9,055	4	535,820	10	1,189,820
47	925	7,353	471,295	71,884	121,540	97	9,500	0	535,820	6	1,248,300
48	955	7,082	478,377	64,531	125,480	98	9,965	2	535,822	6	1,309,400
49	985	6,052	484,429	57,449	129,420	99	10,450	4	535,826	4	1,373,130
50	1,015	5,547	489,976	51,397	133,370	100	11,000	0	535,826	0	1,445,400

2.3.4.4. 소득 및 재산 유형별 농어업인세대 분포 현황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어업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소득항목과 재산항목이 기준이 되고 있음.
- 부과항목별로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실태를 살펴 보는 것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긴요함.

○ 「종합소득+농업소득」의 분포
- 「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는 257,072세대로 전체 경감 지원대상 세대의 48.0%에 해당함.
  - 따라서 소득자료가 없는 52%의 세대는 재산과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대상의 기준이 됨.
-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56,433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의 평균금액은 500만원임.
-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농업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전체 세대의 36.7%임.

표 2-6. 「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없는 세대(A)		278,753	52.0	
「종합소득 +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257,072	100	48.0
	1~250만원	150,699	58.6	
	250~500만원	41,060	16.0	
	500~1,000만원	32,698	12.7	
	1,000~2,000만원	21,128	8.2	
	2,000~3,000만원	6,547	2.5	
	3,000~4,000만원	2,293	0.9	
	4,000~5,000만원	1,072	0.4	
	5,000~10,000만원	1,315	0.5	
	10,000~20,000만원	221	0.1	
	20,000~30,000만원	26	0	
	30,000~40,000만원	6	0	
	40,000~50,000만원	4	0	
	50,000만원이상	4	0	

○ 농업소득의 분포

-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는 276세대에 불과
  - · 농업소득 자료가 있는 세대는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세 과세 농가가 거의 없어 행정기관이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최저 8만원부터 최고 3,610만원까지 분포하며,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의 평균 농업소득은 362만원임.
  - ·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라도 약 80% 정도가 500만원 이하의 농업소득을 지니고 있음.
- 소득자료가 있는 세대 257,072세대 중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의 비율은 0.1%로 미미함.
- 현재 상태로는 농업소득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혼란만 초래하므로 부과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2-7. 농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농업소득이 없는 세대(A)		535,550	99.95	
농업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276	100	0.05
	1～250만원	144	52.2	
	250～500만원	70	25.4	
	500～1,000만원	46	16.7	
	1,000～2,000만원	13	4.7	
	2,000～3,000만원	0	-	
	3,000만원 이상	3	1.1	

○ 사업소득의 분포

-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는 141,009세대로 경감지원대상 세대의 26.3%에 해당함.
  - · 소득이 있는 전체 세대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의 비율은 54.9%임.
-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37,576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568만원임.
- 2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48.9%로 가장 많고, 77.3%가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음.
- 사업소득은 농어업인세대의 세대원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소득이 해당 세대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됨.

표 2-8.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사업소득이 없는 세대(A)		394,817	73.7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141,009	100	26.3
	1～250만원	68,907	48.9	
	250～500만원	25,934	18.4	
	500～1,000만원	25,720	18.2	
	1,000～2,000만원	13,556	9.6	
	2,000～3,000만원	3,590	2.5	
	3,000～4,000만원	1,447	1.0	
	4,000～5,000만원	697	0.5	
	5,000～10,000만원	964	0.7	
	10,000～20,000만원	161	0.1	
	20,000～30,000만원	21	0	
	30,000～40,000만원	6	0	
	40,000～50,000만원	4	0	
	50,000만원이상	2	0	

○ 임대소득의 분포

-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는 17,840세대로 경감지원대상세대의 3.3%에 해당함.
  - · 소득이 있는 전체 세대에서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의 비율은 6.98%임.
- 최저 6만원부터 최고 60,141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의 평균 임대소득은 820만원임.
- 임대소득 250만원 이하 세대가 31.8%로 가장 많으며, 90% 이상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임.

표 2-9. 임대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임대소득이 없는 세대(A)		517,986		96.7
임대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17,840	100	3.3
	1~250만원	5,668	31.8	
	250~500만원	3,751	21.0	
	500~1,000만원	4,057	22.7	
	1,000~2,000만원	2,968	16.6	
	2,000~3,000만원	851	4.8	
	3,000~4,000만원	300	1.7	
	4,000~5,000만원	14	0.1	
	5,000~10,000만원	185	1.0	
	10,000~20,000만원	44	0.2	
	20,000~30,000만원	1	0	
	30,000~40,000만원	0	0	
	40,000~50,000만원	0	0	
	50,000만원이상	1	0	

○ 연금소득의 분포

-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133,877세대로서 경감지원세대의 25.0%에 해당함.
  - · 소득이 있는 전체세대에서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의 비율은 52.1%임.
  - ·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어 감액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액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2008년 이후부터는 연급수급자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최저 4만원부터 최고 9,037만원까지 분포하며,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의 평균연금소득은 230만원임.
  - · 고액 연금소득자는 주로 공무원·교직원 연금을 수급하는 자로서 장기 근속한 고위 공무원 등이 해당됨.
-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의 약 95%가 5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연금은 주로 감액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 등일 것으로 판단됨.

표 2-10. 연금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연금소득이 없는 세대(A)		401,949	75.0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133,877	100	25.0
	1~250만원	116,902	87.3	
	250~500만원	10,459	7.8	
	500~1,000만원	1,125	0.8	
	1,000~2,000만원	3,537	2.6	
	2,000~3,000만원	1,607	1.2	
	3,000~4,000만원	236	0.2	
	4,000만원 이상	11	0	

○ 근로소득의 분포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는 8,337세대로서 경감지원대상세대의 1.6%에 해당함.
  - · 소득이 있는 전체 세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비율은 3.24%임.
  - · 경감대상 농어업인세대 중 세대주나 세대원이 고용되어 노임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5,146만원까지 분포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평균 근로소득은 390만원임.

표 2-11. 근로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소득 구간		세 대 수	비율(%)	
계(A+B)		535,826	100	
근로소득이 없는 세대(A)		527,489	98.4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소계(B)	8,337	100	1.6
	1～250만원	3,826	45.9	
	250～500만원	2,873	34.5	
	500～1,000만원	1,085	13.0	
	1,000～2,000만원	453	5.4	
	2,000～3,000만원	59	0.7	
	3,000～4,000만원	13	0.1	
	4,000～5,000만원	12	0.1	
	5,000～10,000만원	15	0.2	
	10,000만원 이상	1	0	

○ 재산(토지, 건물)의 분포

- 재산이 있는 세대는 491,885세대로 전체 세대의 91.8%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따라서 재산 없이 소득자료만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는 세대는 8.2%임.
  - · 농어업인들의 경우 평가액은 적지만 대부분 거주하는 주택과 농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재산가액은 수 십만원부터 수 십억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함.

표 2-12. 재산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세대의 분포 현황

재 산 과 표	세 대	재 산 과 표	세대
계(A+B)	535,826		
재산이 없는 세대(A)	43,941		
재산이 있는 세대(B)	491,885		
1 ~ 3,500만원이하	314,304	150,000 ~ 155,000만원이하	30
3,500 ~ 6,200만원이하	76,480	155,000 ~ 160,000만원이하	26
6,200 ~ 10,000만원이하	42,707	160,000 ~ 165,000만원이하	17
10,000 ~ 15,000만원이하	23,644	165,000 ~ 170,000만원이하	18
15,000 ~ 20,000만원이하	11,611	170,000 ~ 175,000만원이하	19
20,000 ~ 25,000만원이하	6,613	175,000 ~ 180,000만원이하	20
25,000 ~ 30,000만원이하	4,161	180,000 ~ 185,000만원이하	8
30,000 ~ 35,000만원이하	2,884	185,000 ~ 190,000만원이하	20
35,000 ~ 40,000만원이하	1,949	190,000 ~ 195,000만원이하	13
40,000 ~ 45,000만원이하	1,518	195,000 ~ 200,000만원이하	10
45,000 ~ 50,000만원이하	1,165	200,000 ~ 205,000만원이하	15
50,000 ~ 55,000만원이하	803	205,000 ~ 210,000만원이하	15
55,000 ~ 60,000만원이하	655	210,000 ~ 215,000만원이하	7
60,000 ~ 65,000만원이하	532	215,000 ~ 220,000만원이하	8
65,000 ~ 70,000만원이하	438	220,000 ~ 225,000만원이하	8
70,000 ~ 75,000만원이하	358	225,000 ~ 230,000만원이하	0
75,000 ~ 80,000만원이하	299	230,000 ~ 235,000만원이하	4
80,000 ~ 85,000만원이하	259	235,000 ~ 240,000만원이하	7
85,000 ~ 90,000만원이하	192	240,000 ~ 245,000만원이하	4
90,000 ~ 95,000만원이하	157	245,000 ~ 250,000만원이하	6
95,000 ~ 100,000만원이하	132	250,000 ~ 255,000만원이하	11
100,000 ~ 105,000만원이하	132	255,000 ~ 260,000만원이하	3
105,000 ~ 110,000만원이하	119	260,000 ~ 265,000만원이하	2
110,000 ~ 115,000만원이하	72	265,000 ~ 270,000만원이하	4
115,000 ~ 120,000만원이하	72	270,000 ~ 275,000만원이하	2
120,000 ~ 125,000만원이하	67	275,000 ~ 280,000만원이하	3
125,000 ~ 130,000만원이하	49	280,000 ~ 285,000만원이하	5
130,000 ~ 135,000만원이하	46	285,000 ~ 290,000만원이하	4
135,000 ~ 140,000만원이하	57	290,000 ~ 295,000만원이하	1
140,000 ~ 145,000만원이하	40	295,000 ~ 300,000만원이하	6
145,000 ~ 150,000만원이하	31	300,000만원이상	43

2.3.4.5. 상위 등급 농어업인 세대의 특성

○ 건강보험료등급이 고등급(90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세대는 ① 현행 농어업인의 규정에 부합하면서 농업을 부업 또는 취미 정도로 하여 농업소득은 미미한 반면, 비농어업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② 농지원부를 토대로 농업인이라는 판단하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결정되어 경감지원을 받았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업인 자격이 변경(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경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두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는 경감대상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임.

2.3.5.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실태

○ 농어업인세대의 평균보험료는 2004년에 58,510원에서 2005년 61,100원, 2006년 69,910원으로 매년 상승하였음(표2-13).

○ 농어업인의 평균보험료는 매년 상승하였지만 보험료 경감율이 같은 기간에 매년 10%씩 상승하여 실제로 농어업인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보험료가 가장 높고, 녹지지역, 읍・면지역의 순서임.

표 2-13. 연도별 농어업인세대 평균건강보험료 추이

구 분		계	읍,면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2004년	경감 전	58,510원	56,240원	77,320원	92,560원
	경감 후	40,957원	39,368원	54,124원	64,792원
2005년	경감 전	61,100원	59,650원	79,180원	96,610원
	경감 후	36,660원	35,790원	47,508원	57,966원
2006년	경감 전	69,910원	68,610원	87,210원	115,630원
	경감 후	34,955원	34,305원	43,605원	57,815원

○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농어업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실태를 보면 <표2-14>~<표2-16>과 같음.

표 2-14. 2004년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합 계		읍,면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계	605,504	33,994,910	588,565	32,662,360	11,891	883,026	5,048	448,523
농업인	590,102	33,169,556	514,963	31,788,696	11,891	883,026	5,048	449,523
어업인	15,270	865,016	15,270	865,016				
임업인	159	8,647	159	8,647				

※ 동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 : 2004년 7월부터 포함.
※ 경감률 : 30%(농어촌 부분 22% + 농어업인 부분 8%)

표 2-15. 2005년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합 계		읍,면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계	602,584	79,533,644	570,811	73,661,233	23,306	3,986,478	9,037	1,885,933
농업인	587,703	77,943,976	555,773	72,125,889	22,982	3,949,566	8,948	1,868,521
어업인	14,656	1,556,403	14,270	1,507,870	307	34,245	79	14,288
임업인	225	33,265	198	27474	17	2,667	10	3,124

※ 경감률 : 40%(농어촌 부분 22% + 농어업인 부분 18%)

표 2-16. 2006년도(6월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합 계		읍,면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계	535,826	62,926,765	508,986	58,671,792	20,088	2,943,281	6,752	1,311,692
농업인	522,516	61,445,064	495,970	57,249,246	19,826	2,891,404	6,720	1,304,414
어업인	13,051	1,411,280	12,796	1,380,428	234	27,775	21	3,077
임업인	259	70,421	220	42,118	28	24,102	11	4,201

※ 경감율 : 50%(농어촌 부분 22% + 농어업인 부분 28%)

2.4. 현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에 대한 견해

2.4.1. 선행연구의 종합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수준(규모)에 대해서는 하위계층은 높게 하고 상위계층은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17.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관련 선행연구의 요약

선행연구	차등・제외에 대한 입장	차등 지원 방법
정명채 외(2000)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 10%, 30%, 50%씩 지원
농특위(2002)	의료서비스여건등 고려 차등지원	경감폭을 세분화 (22~50%)
차흥봉 외(2004)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상,중,하 3등급 구분 1/3, 1/2 ,2/3 지원
이혜훈(2004)	소득등급별 차등화	소득등급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 상한제 설정
최병호 외(2004)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지원	면제 혹은 경감
참여복지기획단 (2004)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구체적 방법 미 제시
박대식(2006)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구체적 방법 미 제시

2.4.2. 관련 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견해[10)]

2.4.2.1. 사안의 요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10)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12~2006.1 기간 중 관련 부처 및 법률전문기관에 검토 요청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용어나 문체 등은 전문적인 사항들이어서 원문대로 표기하였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에 의해 100분의 22를 경감(예산지원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시 경감)하고,
- 농림부는 예산으로 나머지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하여 경감('06년 예산액 1,359억원)

○ 농어민 경감 지원자 중에는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농어민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일반사업소득액이 많은 농어민도 상당수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주장이 있어 일반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28%의 보험료를 차등화해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보험료 경감 농어민 지원세대 60만 4천 세대[11]중 일반사업소득이 있는 농어민은 27만 5천 세대로 45.6%차지
- 농가 평균소득('04년 2,901만원)이나 농업 평균소득('04년 1,205만원)을 기준

2.4.2.2. 관련 기관 및 법률 전문기관의 견해

1) 농림부 의견

가) 지원제한 불가 의견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을 소득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농어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 또는 그 범위를 변경하거나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필요

- 건강보험료의 경감지원은 기본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22%를 포함하여 50%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보험법에서도 소

11) 2005년 기준임.

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거나 배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나) 지원제한 가능 의견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등지원이나 지원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

- 2005년 1인당 경감지원액이 평균 132,000원대이나 최고 2,855,000원 등 수백만원의 혜택을 받는 불공평성 존재
  - · 국민연금법에서는 농업소득 보다 그 외 소득이 많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감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되고 있음.

2)보건복지부

○ 지원제한 불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농어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법무법인 정평(正平)

○ 현행 법령상으로는 소득에 따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생각됨.

- 즉, 특별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6조에서는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40[12]으로 한다"

라고 일괄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현행법령 하에서는 농어민의 소득 등에 따라 지원율에 차별을 둘 수는 없다고 보임.

- 다만 차후에 대통령령 등에 별도규정을 두어 위 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국민연금법과 관련

- 특별법 제31조는 건강보험료의 경우와 유사하게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연금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슴.
- 또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서 농어업인 중 일반사업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과 관련된 규정일 뿐이라는 점(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위 특별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일반사업소득과 농어업인의 자격을 연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령개정이 없이 일반사업소득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봄.

4) 법무법인 화우

가) 현행 법령상의 지원체계

○ 현행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보험료 감면 부분과 농림부에 의한 예산지원 부분이 서로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여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농어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12) 2006년부터는 100 분의 50임.

경감혜택이 반드시 농특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이라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두 가지 제도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목적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고, 다만 법령의 체계 및 법문상으로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뿐이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농림부는 농특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보험료 중 40%[13]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면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음.

○ 이러한 규율체계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분 중 농림부에 의한 예산지원 부분의 삭감문제에 관하여는 농특법만이 고려되면 족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보험료 감면혜택의 삭감 문제에 관하여는 두 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짐.

나) 현행 법령상의 지원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감면부분의 경우

○ 현행 법령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료 징수감면대상인 농민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인'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2) 농림부 지원부분의 경우

○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특별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의 '농어민' 중 '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인을 가리킴(농특법 제2조제3호).

(3) 지원대상인 농어민의 범위

○ 농림부의 지원대상인 농민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상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료 징수감

13) 2006년부터 50%

면 대상인 농민은, 동 농업·농촌기본법의 요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요건도 갖추어야 함.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료 징수감면제도는 농림부의 지원의 경우보다 그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액의 범위가 모두 작다[14]고 할 수 있음.

○ 두 가지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 농민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 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1), (2) 및 (3)의 요건을 모두[15] 갖춘 자임.

○ 즉,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인 농민의 경우 그 요건에 있어 경작면적이나 소득의 하한선은 존재하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상으로는 소득이 많은 농민, 특히 농업 이외의 기타소득이 많은 농민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됨.

다) 현행 법령상 차등지원이 가능한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감면부분의 경우

○ 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는 농어민 등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감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반면 경감의 대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62조 제5항 각호, 시행령 제32조 각호 및 시행규칙 제32조 각호가 이미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감을 시행하고자 결정하였다면 그 경감대상에 관하여는 반드시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써 농업인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농업인을 포함하여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므로 대상자의 범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정리자 의견).

15)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조항이며,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연구자 의견).

○ 한편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경감의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그 경감의 비율에 있어서만 차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2항이 보험료 경감 비율을 22%로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방안도 불가능함.

(2) 농림부 지원부분의 경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역시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2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고 하여, 지원의 실시 여부를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그런데 동 조항은 지원의 대상자를 '농어민'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농어민' 중 '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고 있을 뿐 이들 농업인 중에서 다시 대상자를 선별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들 조항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별도의 법령근거 없이 그 중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여기에서도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지원의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그 지원의 비율에 있어서만 차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6조가 지원비율을 40%[16]로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차등지원방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16) 2005.12.30 개정으로 50%로 상향되었음.

라) 차등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감면부분의 경우

① 경감대상에서의 제외방법

ㅇ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경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경감 대상을 상세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함.

ㅇ 관련법령들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인 법률(건강보험법)에 그러한 경감제한의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호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을 동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제32조) 중에 그러한 근거를 두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② 경감률을 조정하는 방법

ㅇ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실시에 있어, 일부 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경감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2항이 보험료 경감비율을 22%로 고정하여 놓고 있기 때문으로써, 동 조항을 개정한다면 지원대상 농업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2) 농림부 지원부분의 경우

① 경감대상에서의 제외방법

ㅇ 농림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실시에 있어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농특법에서 지원의 대상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이들 농업인 중에서 다시 대상자를 선별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불구

하고 일부 고소득 농업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농특법) 중에 그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② 경감률을 조정하는 방법

○ 농림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실시에 있어 일부 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농특법 시행령 제6조가 지원비율을 일률적으로 40%[17]로 고정하여 놓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동 조항을 개정한다면, 굳이 법률(농특법)의 개정 없이도 지원대상 농업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 법령개정에 있어 유의할 점

○ 위의 "①"항 및 "②"항과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농업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많이 얻고 있는 농민까지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인 농어촌주민의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주된 목적상, 부적합하다는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국가의 농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비단 저소득층의 지원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현재 저소득화, 고령화 및 농업인 구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대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효과와, 농업인들(특히 고령인력)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질을 농민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도 반드시 불공평하지는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개정입법의 추진단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효과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실제 개정논의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논리에 근거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관한 타당한 논리적 대응책을

17) 2005.12.30 개정으로 50%로 상향됨.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5) 법무법인 태평양

가) 차등 지원 가능 여부

○ 농특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농특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40%[18]를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득이 많은 농어민에게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농어민 사이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농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득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농특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혜택이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여 침해행정에 비하여 법률에의 기속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행위는 농특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혜택의 정도를 제한하는 행위인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혜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는 농어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농어민을 소득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나 또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농특법 관련법령상 건강보험료와 간련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농어민을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19].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국가가 그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여 위 법령에서 규율대상으로 규정한 농어민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차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

18) 2006년부터 50%

19) 노인의 요양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25조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고 함.

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농특법 제27조 제1항의 경우 국가에게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혜택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부여[20]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에서 아무런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정하여 농어민 지원에 있어 차별을 줄 수 있는 권한까지 국가에게 부여한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나) 농어촌복지법시행령[21] 개정을 통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 헌법 제75조[22]는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음.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23]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24].

○ 그런데, 농특법 제27조 제2항은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임의 범위에 지원 대상 농어민에 대하여 소득별로 그 정도를 나누어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는 농특법 제27조 제2항에는 "보험료의 지원율 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이미 농특법시행령 제6조에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도의 구별에 관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20) 농특법시행령 제6조에서 보험료의 지원율을 명시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구는 보험료 지원에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임.

21) 다른 전문기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농특법시행령'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연구자 의견).

22)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23)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결정, 1995.7.21. 선고 94헌마125 결정 등 참조.

24)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3헌가12결정 참조.

않고, 따라서 국가가 위 제27조제2항을 근거로 농특법시행령에 그 지원대상 및 정도를 소득별로 구분하여 규정할 경우 이는 위임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될 수 있음.

○ 그러나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25].

- 대법원도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26]하여, 예시적인 위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 살피건대, 농특법 제27조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규정된 것이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급부행정에 관한 영역을 규정한 것으로 침해행정에 비하여 법률에 의한 유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조항의 규정 취지와 "보험료의 지원율 등"이라는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보면, 농특법 제27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의 지원율"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27조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시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25) 헌법재판소 1991.7.29. 선고 93헌가12결정, 1995.11.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결정(병합) 참조.

26) 대법원 1994.1.28. 선고 93누17218판결

-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어민에 대한 급부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급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농특법시행령에서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특법 제27조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6) 농림부 담당 변호사

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에서 “농어민”을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4조에서 농어촌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이 법 개별조항에서 위 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인 “농어촌”, “농어촌주민”, “농어민”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2조에 따라 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위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그 의미 또는 그 범위에 변경이나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별도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나) 또한 이 법 제27조 제1항에서 그 지원대상인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a) 농어민이, (b)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c)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 내용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며, 이에서 나아가 이 법에서 법률로 정의하고 있는 “농어민”이나 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료”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대응범위를 확장 해석하기는 어렵다할 것임.

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민”에 관하여, 그 범위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다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규정 또는 해당 법률규정에서의 위임근거조항에 따른 법제화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2.4.2.2. 관련 기관 및 법률 전문기관의 견해 요약

○ 농림부의 일부 의견을 제외하면 현행 규정만으로 지원을 차등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임.

○ 대다수 의견은 보험료 경감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거나 최소한 현행 법률규정에서의 위임근거조항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봄.

표 2-18. 건강보험료 경감 차등지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견해

기관별		차등・제외의 입장	이유
농림부	A	차등지원・배제 불가	명문규정 부재
	B	차등지원・배제 가능	혜택의 불공평성 존재
보건복지부		지원제한 불가	명문규정 부재
법무법인 정평		지원제한 불가	일괄 규정만으로 지원차등 불가 ⇒ 별도규정 신설과 객관적 기준 적용시 지원 차등 가능
법무법인 화우		차등지원・제외 불가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법무법인 태평양		불가	혜택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 및 법령상 근거 필요
농림부 담당변호사		차등지원 곤란	별도의 명시적 근거 필요 ⇒ 현행 법령상의 범위 규정에 변경이나 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법률규정 또는 위임근거조항에 따른 법제화 필요

2.4.3. 종합

○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소득계층별(부담능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관련 규정만으로는 차등지원하는 것은 무리

3. 외국의 사례

3.1. 대만

3.1.1. 대만의 의료보험체계

○ 대만의 건강보험은 1950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음.
- 이후 공무원 건강보험(1958), 소규모 사업장(1970, 1979), 사립학교 교직원(1980), 임의 농민보험(1989)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1990) 등이 도입되었음.

○ 건강보험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전체 국민의 59%에 불과하였음.
- 자영자나 노약자, 빈곤계층이 배제되었고, 각 직역별로 분산되다 보니 의료보험체계가 상이하여 비효율,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1995년 자영자 등 미적용 계층(국민의 41%)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계기로 그동안 난립되었던 12개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였으며(전민건강보험), 보건부 산하에 중앙건강보험국을 설립하였음.

3.1.2. 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는 소득 및 피부양자수에 비례하여 부과

○ 보험료는 사용주, 피용자, 정부의 3자간에 분담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은 조세전산망, 국민건강보험전산망, 노동보험(연금, 산재, 고용)전산망, 주민전산망간의 Data Base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질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27].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원화된 표준소득등급표(29등급)를 적용

○ 모든 피보험자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소득파악이 임금근로자보다 용이하지 않은 자영자는 단일등급 적용
- 농어민은 5등급, 일반자영자는 6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

○ 보험료부과에 상한선(최고 29등급)을 설정하므로써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음.

---

27) 차흥봉 외(2004), p.161.

3.1.3. 국고지원

○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각 가입집단의 유형에 따른 보험료부과체계에 상응하여 정부가 일부 정률 혹은 전체 정률로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음(표3-1).

3.1.4. 보험료의 경감

○ 경사정단위(經社政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호적지의 시·군·구 사무소가 가입단위이며, 전민건강보험 제5군 피보험자로 가입, 자부담보험료를 면제함.

표 3-1. 대만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유형별 재원분담비율

단위 : %

피보험 대상		분담비율(%)				인구 비율
		피보험인	사용자	중앙정부	지자체	
제1군	공무원 등	30	70	0	-	54.4(%)
	사립학교교직원	30	35	35	or 35	
	사업장피용자(공공,민간)	30	60	10	or 5	
	사용자, 자영자(주로 고소득전문직 및 기술직)	100	0	0	-	
제2군	직종별(union 혹은 association) 소속 자영자(예: 택시기사, 목수, 양복점, 식당주인 등), 외항선원	60	0	40	or 40	17.2%
제3군	농민, 어민, 농전수리회 회원	30	0	60/40	10/30	15.2%
제4군	군인, 대체복무기간중 공익요원	0	0	100	-	
제5군	성(省) 단위 저소득층	0	0	35	65	0.8%
	광역시 단위 저소득층	-	-	-	100	
제6군	퇴역군인	0	0	0	보훈처	14.3%
	퇴역군인의 피부양자	30	0	70	상동	
	제1 내지 5군, 퇴역군인 등의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 이외의 세대 호주 및 대표	60	0	40		

자료: B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Profile 2004., 전민건강법제27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연구보고서 2005-03, p.562에서 재인용.

3.2. 일본

3.2.1.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

○ 1927년에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61년에 전국민보험을 달성하였음.

○ 일본의 건강보험은 조합방식으로 운영

- 1990년 기준으로 피용자보험의 조직은 조합관장이 1,780개 조합, 정부관장은 265개의 사회보험사무소, 국가공무원 24개 조합, 지방공무원 54개 조합, 사립교직원 1개 사업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

표 3-2. 일본 건강보험의 적용유형과 보험료 부과

적용대상 집단(제도유형)		구성 비중	보험료율	국고지원
피용자보험		62.9%		
	조합관장보험(대기업)	25.4%	8.4%	급여비의 13% (노인보건분담금의 16.4%)
	정부관장보험 (중소기업, 비정규직)	29.5%	8.4% + 특별 1%	정액보조
	공무원, 교원 공제조합	8.0%	국가공무원 평균 7.8% 지방공무원 평균 8.6% 사립학교 교직원(8.5%)	
지역보험	시정촌 (자영자, 농민, 퇴역자)	36.9%	소득할, 자산할, 세대할, 세대원할	급여비의 50%
	국보조합 (의사,약사,이미용업 등)			급여비의 32~52%
선원보험		0.2%		
비고) 장기요양보험	1호 : 65세 이상 2호 : 45~64세		1호: 5등급 정액제, 연금 원천 징수 2호: 직장은 보수의 0.76%, 지역은 소득,재산,균등할	50% 조세지원 (중앙 25%, 광역 12.5, 기초(12.5)

※ 이외에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자의료보험제도와 노인보건제도가 있음.

3.2.2. 건강보험의 재원

○ 조합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 국고부담, 도도부현부담(광역부담), 시정촌부담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

3.2.3. 보험료 부과방식

○ 일본의 건강보험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별로 보험료 부과방식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

-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자는 임금비례의 정률을 부과하고, 자영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비례등급별 정액, 자산비례등급별 정액, 피보험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 세대원당 정액 등 4가지 요소를 조합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3.2.4. 국고지원

○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국고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타 재정지원이 집중됨.

○ 국고지원률

-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 급여비의 50% 및 보험료 경감분을 보조
- 국민건강보험조합 : 급여비의 32%와 추가적으로 15%를 한도로 하여 보조
- 국고보조가 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구조임.

3.3. 시사점

○ 기본적으로 양국간에는 의료보험 체계상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직역별로 조합방식인데 비해 대만은 전국민 단일조직임.

○ 대만이나 일본에서 농어업인은 저소득계층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타 계층보다 낮은 보험료 등급이 적용되고 국가지원도 많음.

○ 대만의 경우 직업 유무에 관계 없이 저소득 세대[28]로 심사・결정되면 자부담 보험료가 면제됨.

○ 대만의 경우 농어업인은 모두 동일한 보험등급을 적용받으며, 세대원수(3인까지)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남.

---

28) 감면요건은 ①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② 저소득세대(세대수입이 최저생활비 표준의 2.5배 이하이고 저소득세대보다도 많은 세대), ③ 대북시와 고웅시의 경우 65세 이상(대북시 거주 先住민족은 55세 이상), ④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공무원(資深공무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

4.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4.1.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4.1.1. 기본방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취약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여 부담능력이 열악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

- DDA, FTA 등의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능력에 따른 부담”(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함.
- 농어업인도 다양화되어 대다수는 경제력이 취약하지만 일부는 도시근로자 못지 않은 고소득을 확보
- 비농어업인과의 형평성은 물론 농어업인간의 형평성 고려 필요

4.1.2. 기본원칙

○ 형평성 제고

- 사회보험 원칙하에서의 부담의 형평성 제고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

○ 합리성 확보

- 객관성 및 타당성

○ 실천성 확보

- 실제 적용시 적용의 용이성 확보

○ 국민의 수용성

-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방법)
- 농어업인들의 불만 최소화

· 관련 법령상 경감지원의 상한이 50%(농어업부분 28%)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방안 강구 자체가 지원이 확대되는 세대는 없는 반면 지원이 축소되는 세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1.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 농어업 종사 형태는 전업, 겸업, 부업 등 다양할 수 있으나 현행 농어업인 규정에 합당하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해당함.

○ 현재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22%는 농어촌지역 거주(의료접근성)에 따른 것이며, 28%는 농어업 분야의 종사(농어업의 취약성)에 따른 것임.

- 농어업인 경감율 50% = 농어촌부분 22% + 농어업부분 28%

○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부분 경감율(28%)을 주 대상으로 함.

- 농정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해소 또는 경감하기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임.

- 그러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부분과 농어업부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현행 지원의 상한선인 50%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4.2.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4.2.1. 경감 대책의 유형

4.2.1.1. 제외

○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경제적 능력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취약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게는 경감 지원을 하지 않음.

4.2.1.2. 경감

○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서 산정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기에는 힘겨운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함.

○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균등지원)과 경감대상자를 부담능력에 따라 지원수준의 차이를 두는 방법(차등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차등지원의 경우 차등의 기준(또는 방법)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과 (등급)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4.2.1.3. 면제

○ 경제적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소액의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이 되는 계층(예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면제의 방법에는 건강보험료 산출시부터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출은 정상적으로 하되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

4.2.2. 경감대책 유형별 장・단점

4.2.2.1. 제외 방안

○ 일정 등급 이상은 경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만 차등 지원함.

○ 과제 : ① 일정 등급의 결정 방법 : 지원에서 제외하는 소득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 상존

② 일정등급 이하 차등 방법 : 정액, 정율, 차등

○ 장점 : ①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형평성 원칙을 준수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

○ 단점 : ①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농어업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한 불만 초래

② 현행 관련 규정상 지원범위에 해당하는데도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

4.2.2.2. 차등 지원 방안

① 등급별 차등 지원

- 보험료 등급별로 지원율 또는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 장점 : ㉠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세분화하여 형평성 확보
- 단점 : ㉠ 100등급으로 세분된 등급별로 차등하므로써 효과에 비해 업무의 복잡성을 초래

㉡ 매년 등급 변화에 따라 추가 업무가 발생

② 등급구간별 차등 지원

- 전체 보험료 등급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원
- 과제 : ㉠ 등급구간의 크기 결정 : 동일 또는 차등

㉡ 구간별 차등 지원 방법 : 일정 또는 차등

- 장점 : ㉠ 업무의 복잡성 완화
- 단점 : ㉠ 형평성 감소

4.2.2.3. 면제 방안

○ 장점 : ①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② 보험료 미납(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 단점 : ① 면제 대상 계층의 구별 기준 설정의 어려움
② 재정 추가 소요

4.2.3. 경감대책 대안 설정의 기본 방향

○ 차등지원방식 채택

-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려 고소득 농어업인도 경감지원 대상에 포함함.
  · 현행 농어업인의 기준에 적합시
- 현재 경감지원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의 불만을 해소함.

※ 고소득 농어업인을 경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기존의 관련 법령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4.3.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대안별 검토

4.3.1.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

○ 1등급의 경감율을 가장 높게, 100등급의 경감율을 가장 낮게 설정

4.3.1.1. 제1안

○ 제1등급의 경감율(농어업부분)을 28%로 하고, 제100등급의 경감율

을 0%로 하는 방안(제Ⅰ안)

- 농어촌경감부분 포함시 : 제1등급 50% 제100등급 22%

4.3.1.2. 제2안

○ 제1등급의 경감율을 28%로 하고, 제100등급의 경우에도 일정율(예: 3% 또는 8%)을 경감지원하는 방안

- 총경감율을 25%(22% + 3%)로 하는 방법(제Ⅱ-1안)
- 총경감율을 30%(22% + 8%)로 하는 방법(제Ⅱ-2안)

4.3.1.3. 등급별 차등지원의 문제점

○ 지원등급 세분화로 실천성 미흡

○ 등급간의 차등화 효과 의문

그림 4-1.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제1안, 제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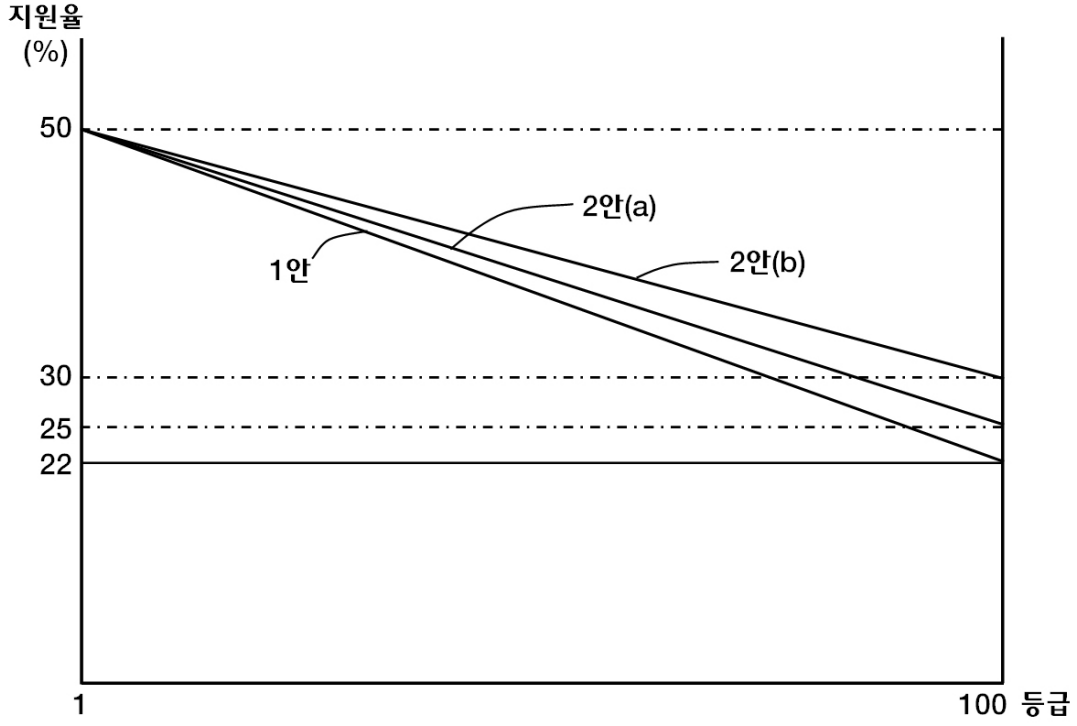

4.3.2. 등급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 전체 농어업인세대를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동일 구간의 농어업인세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감율을 적용

○ 경감비율은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하되 구간의 범위는 차등

4.3.2.1. 등급 구간 간격 균등화 방안

○ 3구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예)

- 3구간 : 상(~33), 중(34~67), 하(68~100)
- 3구간의 구간 부분 : 1/3구간 : 1~178,609 세대
  2/3구간 : 178,610~357,218 세대
  3/3구간 : 357,219~535,826 세대
- 1/3구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대는 178,609번째 세대로서 23등급에 속하는 14,714세대중 6,821번째 세대에 해당하는데, 동일 등급 세대중 일부는 1/3 구간 등급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2/3 구간 등급으로 나뉘어져 상이한 경감지원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구간	해당세대 번호	해당등급범위 (차하~차상)	차하등급 까지의 누계	차상등급 까지의 누계	차상등급의 세대수
1/3	178,609	22~23	171,788	186,502	14,714
2/3	357,218	35~36	344,580	357,550	13,170

※ 총세대수 : 535,826세대(2006.6현재)

○ 구간을 5구간으로 하여도 동일한 문제 발생

- 따라서 등급구간을 균등화하는 방안은 대안 검토에서 제외

○ 문제점

- 구간이 많을수록 업무가 복잡한데 비해 효과는 미미
- 단순히 구간간격을 동일하게 구분할 경우 동일한 소득수준 및 동일한 보험료 등급이라도 구간이 나뉘어져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를 초래

4.3.2.2. 등급구간 간격 차등화 방안

1) 등급구간 차등화의 기준지표 : 농가소득

○ 보험료 경감의 취지가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가소득을 등급구간 차등화 지표로 활용

○ 과거 9개년간의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분포를 보면, 5.0ha 이상의 대농의 농가소득이 평균농가소득의 약 2배로 나타남.

○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농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는 시각에서 접근

○ 2004년도 평균농가소득(2,901만원)을 기준으로 그 배수가 되는 소득수준으로 구분기준을 고려・설정

※ 2004년도의 농업소득은 1,205만원

○ 농가소득수준별 소득등급 및 적용점수를 보면 <표4-1>과 같음.

표 4-1.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 천원

	평균(A)	3.0~5.0	5.0~7.0(B)	7.0~10.0(B′)	10ha이상	B/A
1996	23,298	32,806	35,584	-	-	1.53
1997	23,488	35,164	43,076	-	-	1.83
1998	20,494	31,498	44,248	-	-	2.16
1999	22,323	35,710	56,382	-	-	2.53
2000	23,072	36,022	44,713	-	-	1.94
2001	23,907	36,459	50,205	-	-	2.10
2002	24,475	36,256	51,087	-	-	2.09
2003	26,878	30,834	34,735	50,875	53,372	1.89
2004	29,001	36,063	38,636	56,805	66,994	1.96

주 : 2002년까지는 2.0~3.0, 3.0~5.0, 5.0ha 이상으로 분류, 2003년부터는 5.0~7.0, 7.0~10.0, 10.0ha 이상으로 분류

표 4-2. 소득수준별 소득등급의 비교

기준소득 (만원)	소득등급		부과표준소득등급		농어업인 세대수 (누계)
	등급	적용점수	등급	적용점수	
500	1	380	25	370	211,118(39.4)
1,205	8	580	34	568	331,410(61.9)
2,900(1)	22	981	49	985	484,429(90.4)
5,800(2)	33	1,303	55	1,280	518,647(96.8)
8,700(3)	40	1,560	59	1,545	527,918(98.5)
11,600(4)	45	1,776	62	1,785	531,821(99.3)
14,500(5)	49	1,969	64	1,965	533,317(99.5)
17,400(6)	53	2,714	71	2,745	535,514(99.9)
20,300(7)	56	3,492	76	3,485	535,753(100)
23,200(8)	59	4,400	81	4,425	535,781(100)
26,100(9)	61	5,080	84	5,105	535,801(100)
29,000(10)	63	5,831	87	5,890	535,810(100)

주 : 1. 기준소득란의 ( )는 2004년도 평균농가소득의 배수를 나타냄.
2. 농어업인세대수(누계)의 ( )는 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세대수(535,826)에 대한 해당 등급까지의 세대수누계의 비율임.

2) 제3안 : 등급 구간을 5개 구간으로 구분(제Ⅲ안)

○ 제1구간(농가소득 기준 2,901만원 이하) : 49등급이하
○ 제2구간(농가소득 기준 8,700만원 이하) : 59등급
○ 제3구간(농가소득 기준 17,400만원 이하) : 71등급
○ 제4구간(농가소득 기준 23,200만원 이하) : 81등급
○ 제5구간(농가소득 기준 23,200만원 이상) : 82등급 이상
○ 구간별 경감율(안) : 제1구간 : 28% 제2구간 : 23%
제3구간 : 18% 제4구간 : 13%
제5구간 : 8%

그림 4-2.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제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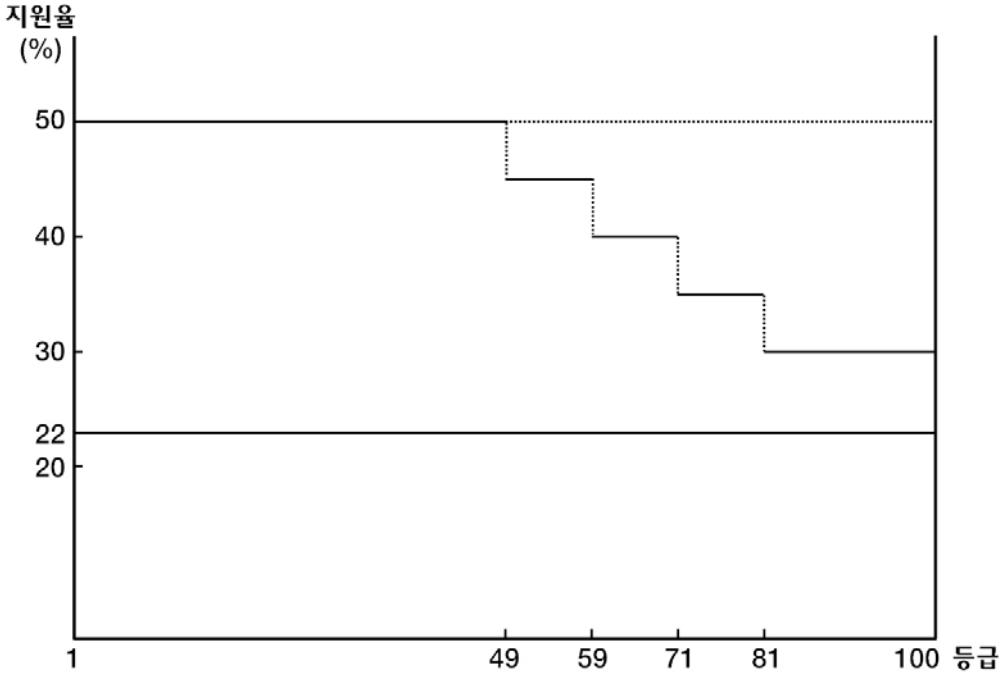

3) 제4안 : 3구간으로 구분하는 방안

○ 평균농가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55등급)까지 50%를 지원하고, 6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71등급)까지 40%, 그 이상의 소득수준(72등급 이상)은 30%를 지원하는 방안(제Ⅳ-1안)

○ 제Ⅳ-1안과 같이 55등급 이상에 대해서 경감지원폭을 하향조정하는데 비해, 평균농가소득수준(49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감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제Ⅳ-2안 : 1등급부터 34등급(평균농업소득수준)까지 70%, 35등급부터 49까지는 60%를 경감하고, 50등급 이상에서는 제Ⅳ-1안과 동일
- 제Ⅳ-3안 : 1등급부터 25등급(소득수준 500만원)까지 70%, 26등급부터 34등급(평균농업소득수준)까지 60%, 35등급부터 55등급까지는 50%를 경감하고, 56등급 이상에서는 제Ⅳ-1안과 동일
- 이를 위해 경감지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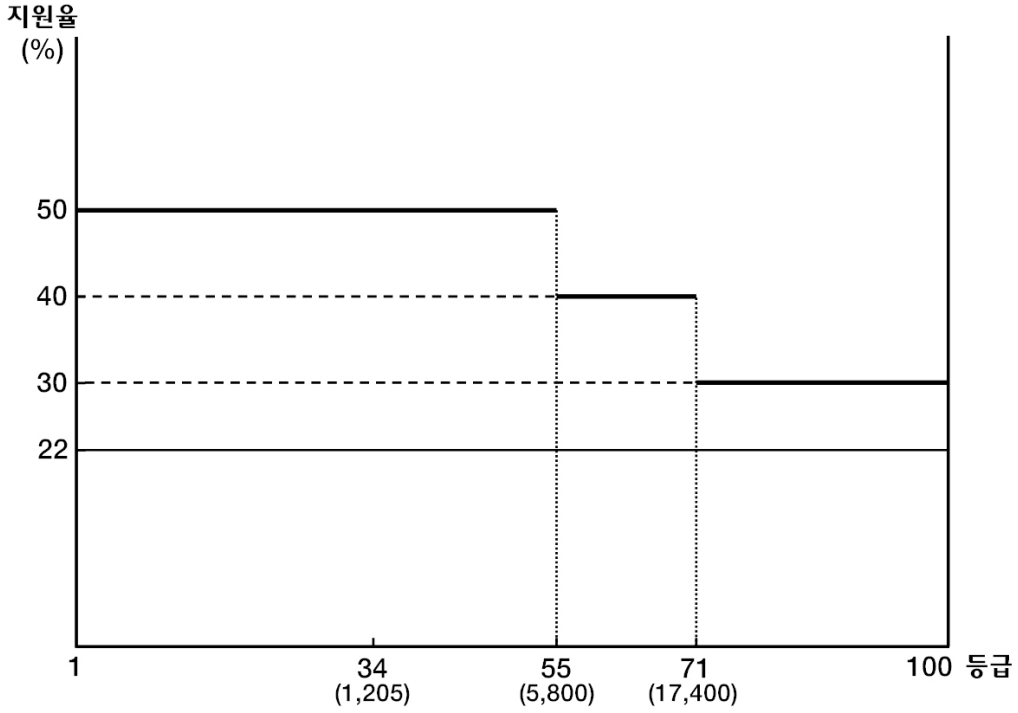

그림 4-4.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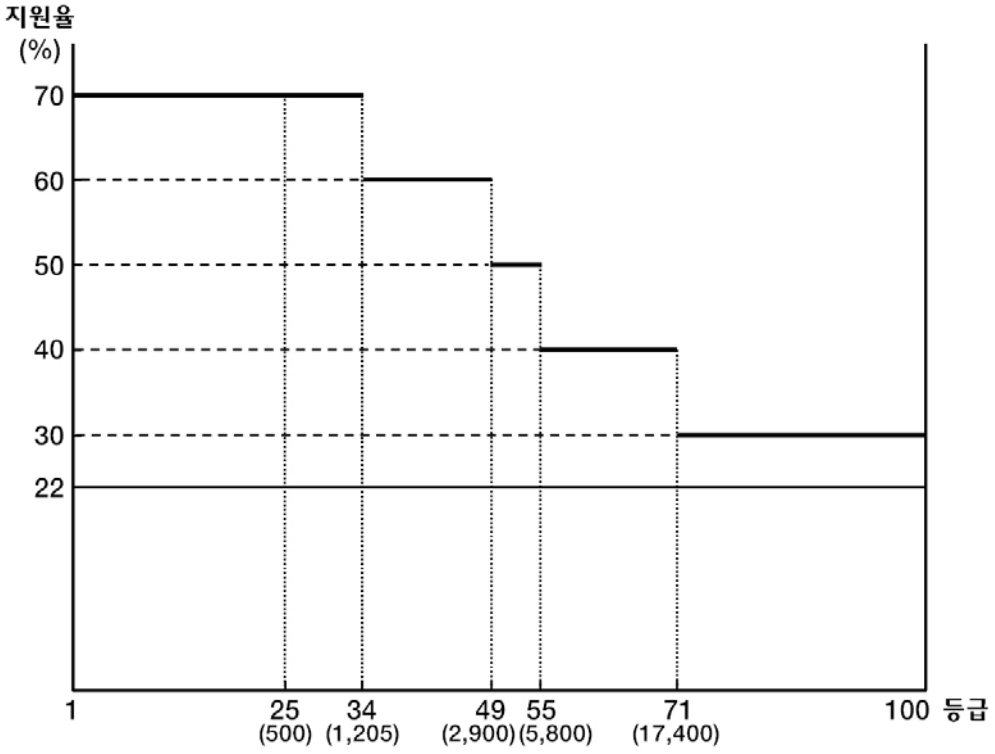

그림 4-5.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Ⅳ-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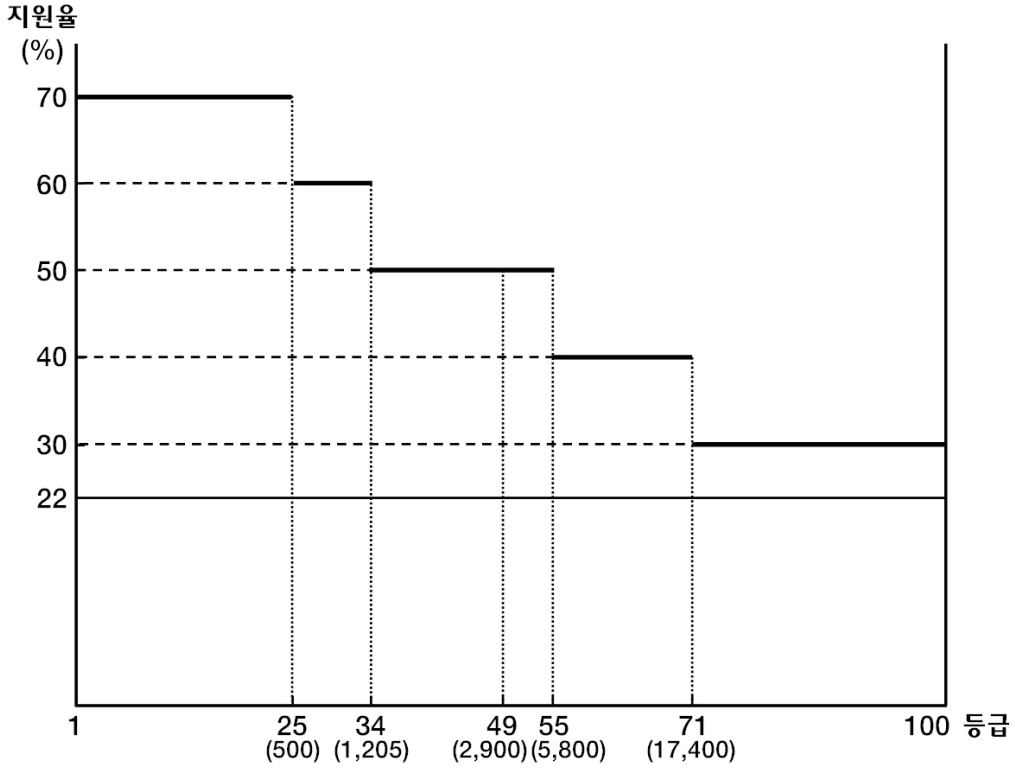

4) 제5안 : 일정 등급 이하는 정률 지원, 일정등급 이상은 정액지원하는 방안

○ 55등급(평균농가소득의 2배 수준)을 기준으로 이 등급까지는 50%를 정률지원하고, 56등급 이상은 55등급의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제Ⅴ-1안)

○ <제Ⅴ-1안>을 기준으로 하되, 33등급 이하는 경감율을 점차 높여 1등급은 경감지원율이 60%가 되도록 하는 방안(제Ⅴ-2안)

○ 55등급 이상의 등급은 등급이 높아질수록 경감지원율이 낮아져 형평성 제고에 기여

○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55등급 이하의 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경감지원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 최고등급인 100등급의 경우 추가경감지원율은 5.25%에 불과

- 2006년 기준으로 55등급의 산정보험료는 168,190원으로 이의 50%는 84,090원

- 84,090원(50%) = 농어촌부분(22%) 37,000원
  + 농어업인부분(28%) 47,090원(정액지원분)
- 100등급의 산정보험료는 1,445,400원으로 47,090원을 정액으로 경감지원 받을 경우 산정보험료에 대한 경감 지원율은 5.25%에 해당함.

그림 4-6.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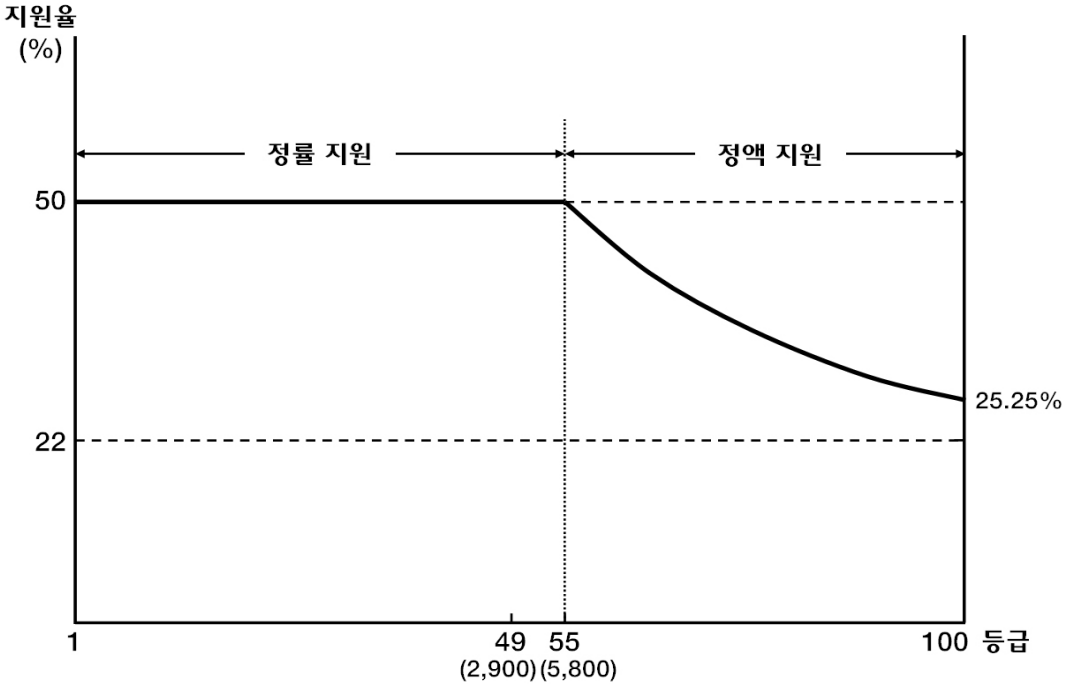

그림 4-7. 구간별 차등지원방안(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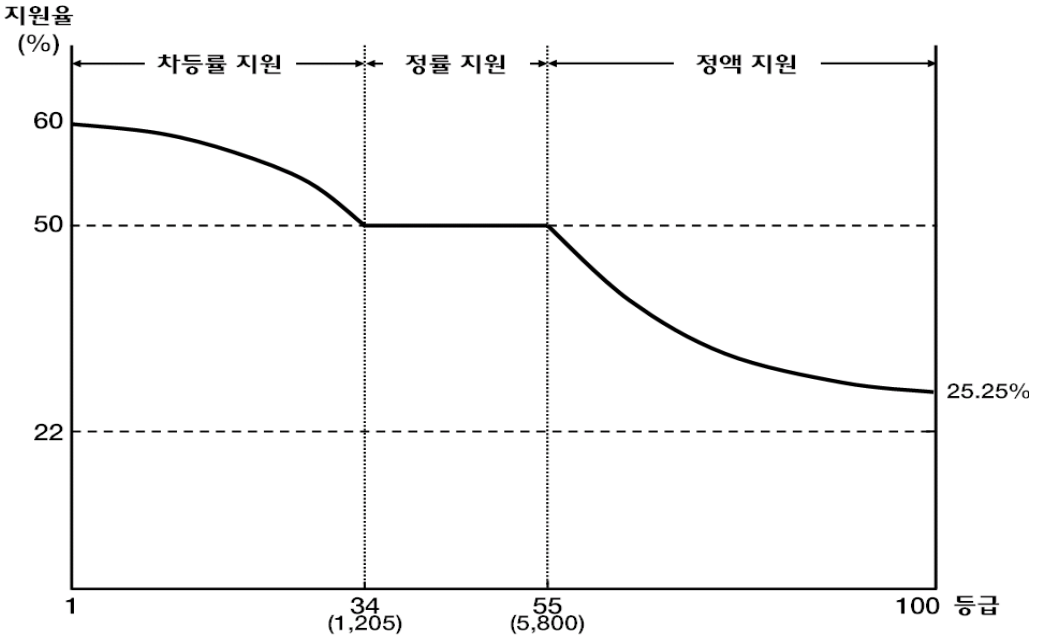

4.3.3. 경감 대책 대안별 비교 분석

4.3.3.1. 대안별 개요

○ 제Ⅰ안

-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경감율을 차등하는 방안으로서 1등급의 경감율을 28%(농어촌부분 포함시 50%)로 하고 한 등급이 높아질수록 경감율이 0.28%씩 감소하여 100등급의 경우에는 경감율이 0%(농어촌부분 22%만 경감)가 됨.

○ 제Ⅱ안

-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등급별로 경감율을 차등하는 방식은 <제Ⅰ안>과 동일하나, 등급간 경감율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임.
- <제Ⅱ-1안>은 등급간 경감율 감소폭이 0.25%이며, <제Ⅱ-2안>의 감소폭은 0.20%임.

표 4-3. 대안별 경감지원 내역

구간수			1	2	3	4	5
제Ⅰ안 제Ⅱ안		등급범위	· 100등급				
		경감율(%)	· 제1안 : 50% ~ 22%(등급별로 0.28%씩 차등) · 제2안 : 50% ~ 25(30)%(등급별로 0.25(0.20)%씩 차등)				
제Ⅲ안		등급범위	49등급 이하	50~59	60~70	71~81	82등급이상
		경감율(%)	50(28)	45(23)	40(18)	35(13)	30(8)
제Ⅳ안	1	등급범위	55등급 이하	56~71	72등급이상	-	-
		경감율(%)	50	40	30	-	-
	2	등급범위	34등급 이하	35~49	50~55	56~71	72등급 이상
		경감율(%)	70	60	50	40	30
	3	등급범위	25등급 이하	26~34	35~55	56~71	72등급 이상
		경감율(%)	70	60	50	40	30
제Ⅴ안	1	등급범위	55등급 이하	56등급 이상	-	-	-
		경감율(%)	50	50~25.25	-	-	-
	2	등급범위	34등급 이하	35~55	56등급 이상	-	-
		경감율(%)	60~50	50	50~25.25	-	-

주 : 경감율은 농어촌부분(22%)까지 포함한 비율임.

○ 제Ⅲ안

- 100등급까지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경감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임.

○ 제Ⅳ안

- <제Ⅳ-1안>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은 현재와 같이 28%(농어촌 부분 포함 시 50%)를 경감하고 상위 등급은 각각 18%, 8%씩 경감하여 상위 등급에 속하는 농어업인세대에 대한 경감율을 축소하는 것임.
- <제Ⅳ-2안>은 5개의 구간으로 나누되, 상위 2개의 등급 구간은 <제Ⅳ-1안>과 동일하며 하위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낮은 등급 구간일수록 경감율을 높이는 방안임.
- <제Ⅳ-3안>은 위의 <제Ⅳ-2안>과 동일한 형태이며, 단지 등급 구간의 설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임.

○ 제Ⅴ안

- <제Ⅴ-1안>은 55등급까지는 현재와 같이 28%(농어촌부분까지 포함 시 50%)를 경감하고 56등급 이상은 55등급의 경감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안임(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
- <제Ⅴ-2안>은 <제Ⅴ-1안>과 마찬가지이나, 34등급 이하에서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경감율을 높여 1등급이 38%(농어촌 부분 포함 시 60%)가 되게 하는 방안

4.3.2.2. 대안별 장단점 비교

○ <제Ⅰ안>은 등급별로 경감율을 차등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형평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100개의 등급별로 경감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별로 경감율을 차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1등급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농어업인들은 현재보다 경감

수준이 낮아지는데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제Ⅱ안>도 기본적으로 <제Ⅰ안>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제Ⅲ안>은 <제Ⅰ안>과 <제Ⅱ안>보다는 구간을 대폭 축소하여 적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간의 수와 구간구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음.
- 지원이 축소되는 농어업인들의 불만

○ <제Ⅳ안>은 구간수를 <제Ⅲ안>보다 단순화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별이 축소되어 형평성 효과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제Ⅳ-2안>과 <제Ⅳ-3안>의 경우 하위 등급을 3구간으로 나누어 경감율을 상향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제Ⅲ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음.

○ <제Ⅴ안>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경감 지원이 축소되는 상위등급의 농어업인세대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

표 4-4. 대안별 장단점 비교

대안별	장점	단점
제1안 제2안	○ 형평성 원리에 부합	○ 지원등급 세분화로 실천성 부재 ○ 등급간의 차등화 효과 의문 ○ 대다수 농어업인들의 지원 축소에 따른 불만 초래
제3안	○ 구간수의 축소로 적용 용이	○ 각 등급구간 결정의 어려움
제4안	○ 구간수의 단순화로 적용 용이 (제3안보다 용이)	○ 형평성 미흡
제5안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 준용	○ 정액지원대상계층의 불만 ○ 형평성 미흡

4.4. 경감대책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4.4.1. 분석 기준

○ 2006년도에 건강보험료를 경감 지원하는 농어업인세대를 대상
- 경감지원세대 : 535,826세대
- 경 감 률 : 산정보험료의 50%(농어업인28%, 농어촌22%)
- 소요예산 : 125,963백만원

○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농어업인 경감(28%)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 따라서 대안별 세대별 연간지원액(평균, 최저, 최고)과 소요예산은 농어업인 경감(28%)부분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임.

4.4.2.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4.4.2.1. 제Ⅰ안

○ 제1등급만 현재와 같이 28%(총 50%)를 경감지원받으며, 2등급부터는 0.28%씩 경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지원이 축소됨.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144,180원이며, 최저지원액은 15,420원, 최고지원액은 391,250원임.

○ 이 안대로 적용할 경우 총소요예산은 77,255백만원으로 48,708백만원의 예산이 감소됨.

표 4-5. 제Ⅰ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8,998세대	-
		2그룹	-	-	526,828세대
		계	-	-	526,828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계	-	-	△48,708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4,856,544원

4.4.2.2. 제Ⅱ안

○ 이 안은 1등급은 50%를 경감하고 2등급부터 일정율로 체감하여 차등지원하는 점에서는 제Ⅰ안과 동일한 형태이나, 등급간 차감 비율을 0.25%(제Ⅱ-1안)와 0.20%(제Ⅱ-2안)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경우임.

- 따라서 100등급도 농어업인 경감부분을 지원(3%, 8%)받게 됨.

○ 제Ⅱ-1안의 경우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153,81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15,420원, 최고지원액은 629,100원임.

- 소요예산은 82,418백만원으로 43,545백만원의 예산이 감소함.

○ 제Ⅱ-2안의 경우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170,84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15,420원, 최고지원액은 1,422,270원임.

- 소요예산은 91,542백만원이며, 34,421백만원의 예산이 감소됨.

표 4-6. 제Ⅱ-1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8,998세대	-
		2그룹	-	-	526,828세대
		계	-	8,998세대	526,828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	△43,545백만원
		계	-	-	△43,545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4,336,200원

표 4-7. 제Ⅱ-2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8,998세대	-
		2그룹	-	-	526,828세대
		계	-	8,998세대	526,828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	△34,421백만원
		계	-	-	△34,421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3,434,270원

4.4.2.3. 제Ⅲ안

○ 이 안은 농어업인세대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1그룹만 현재와 같이 50%를 경감하고 나머지 4개 그룹은 경감비율을 각각 45%, 40%, 35%, 3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1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속하는 농어업인세대는 경감지원수준이 현재보다 적어지게 됨.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222,68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15,420원, 최고지원액은 1,387,580원임.

○ 소요예산은 119,318백만원으로 6,644백만원의 예산이 감소됨.

표 4-8. 제Ⅲ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484,429세대	-
		2그룹	-	-	43,489세대
		3그룹			7,596세대
		4그룹			267세대
		5그룹			45세대
		계	-	484,429세대	51,397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	△4,481백만원
		3그룹	-	-	△1,872백만원
		4그룹	-	-	△200백만원
		5그룹	-	-	△91백만원
		계	-	-	△6,644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3,468,960원

4.4.2.4. 제Ⅳ안

○ 제Ⅳ-1안

- 이 안은 농어업인세대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50%, 40%,

30%를 경감지원하는 방식으로 제Ⅲ안보다 그룹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임.

- 제1그룹만 50% 경감지원을 받아 현재와 동일한 경감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두 그룹은 현재보다 경감지원 수준이 낮아지게 됨.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226,26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15,420원, 최고지원액은 1,387,580원임.
- 소요예산은 121,239백만원으로 4,723백만원의 예산이 감소됨.

○ 제Ⅳ-2안

- 이 안은 49등급 이상에서는 <제Ⅳ-1안>과 같이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50%, 40%, 30%를 경감지원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48등급 이하에서는 1~25등급 그룹은 70%, 26~48등급 그룹은 60%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임.
  - · 상위등급 그룹은 경감지원율을 축소하되, 하위 등급그룹에 대해서는 경감지원율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식임.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320,51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26,430원, 최고지원액은 1,387,580원임.
- 소요예산은 171,741백만원으로 45,778백만원의 예산이 증가됨.

표 4-9. 제Ⅳ-1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518,647세대	-
		2그룹	-	-	16,867세대
		3그룹	-	-	312세대
		계	-	518,647세대	17,179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	4,366백만원
		3그룹	-	-	357백만원
		계	-	-	4,723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3,468,960원

표 4-10. 제Ⅳ-2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317,600세대	-	-
		2그룹	166,829세대	-	-
		3그룹	-	35,218세대	-
		4그룹	-	-	16,867세대
		5그룹	-	-	312세대
		계	484,429세대	35,218세대	16,179세대
	금액(연간)	1그룹	32,241백만원	-	-
		2그룹	18,261백만원	-	-
		3그룹	-	-	-
		4그룹	-	-	△4,365백만원
		5그룹	-	-	△358백만원
		계	50,502백만원	-	△4,723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25등급	-	100
	금액(연간)		116,664원	-	△3,468,960원

○ 제Ⅳ-3안

- 이 안은 기본적으로 <제Ⅳ-2안>과 동일한 방식이나, 현재와 같은 방식을 34등급(<제Ⅳ-2안>에서는 49등급)부터 적용하는 점이 차이점임.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269,52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26,438원, 최고지원액은 1,387,584원임.
- 소요예산은 144,420백만원으로 18,455백만원의 예산이 증가함.

표 4-11. 제Ⅳ-3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211,118세대	-	-
		2그룹	120,292세대	-	-
		3그룹	-	188,237세대	-
		4그룹	-	-	16,867세대
		5그룹	-	-	312세대
		계	331,410세대	188,237세대	17,179세대
	금액(연간)	1그룹	14,120백만원	-	-
		2그룹	9,060백만원	-	-
		3그룹	-	-	-
		4그룹	-	-	△4,367백만원
		5그룹	-	-	△358백만원
		계	23,180백만원	-	△4,725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25등급	-	100
	금액(연간)		116,664원	-	△3,468,960원

4.4.2.5. 제Ⅴ안

○ 제Ⅴ-1안

- 이 안은 55등급까지는 현재와 같이 50%를 경감지원하고 56등급부터는 55등급이 지원받는 금액을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과 동일한 형태임.
  - · 56등급에서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경감지원율은 하락하게 되어 100등급의 경우 경감지원율은 25.25%가 됨.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229,26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15,422원, 최고지원액은 971,023원임.
- 소요예산은 122,845백만원으로 3,018백만원의 예산이 감소됨.

표 4-12. 제Ⅴ-1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	518,647세대	-
		2그룹	-	-	-
		계	-	518,647세대	17,179세대
	금액(연간)	1그룹	-	-	-
		2그룹	-	-	△3,018백만원
		계	-	-	△3,018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	-	100등급
	금액(연간)		-	-	△4,292,888원

○ 제Ⅴ-2안

- 이 안은 55등급까지는 현재와 같이 50%를 경감지원하고 56등급부터는 55등급이 지원받는 금액을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Ⅴ-1안>과 동일하나, 33등급 이하에서는 등급이 낮아질수록 경감율을 높여 1등급의 경감율을 60%로 하는 점이 다름.

표 4-13. 제Ⅴ-2안의 지원 증감 비교

구 분			지원 확대	지원 불변	지원 축소
전체	대상자수	1그룹	331,410세대	-	-
		2그룹	-	188,237세대	-
		3그룹	-	-	17,179세대
		계	331,410세대	188,237세대	17,179세대
	금액(연간)	1그룹	4,616백만원	-	-
		2그룹	-	-	-
		3그룹	-	-	△3,018백만원
		계	4,616백만원	-	△3,018백만원
개인	최대계층		19등급	-	100등급
	금액(연간)		38,304원	-	△4,292,888원

- 세대평균지원액(연간)은 238,060원이고, 최저지원액은 20,930원, 최고지원액은 971,023원임.
- 소요예산은 127,561백만원으로 1,598백만원의 예산이 증가됨.

4.4.3. 종합

○ 각 대안을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예산 사정, 형평성 개선 효과, 실천 가능성, 농어업인의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함.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 절차와 법 개정 일정이 장기간 소요됨.
  · 개정사항이 법이냐 시행령이냐에 따라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음.
- 예산 사정은 금년도 경감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형평성 개선 효과는 현재의 50% 일률경감에 비해 상·하 계층간에 소득재분배효과를 추가적으로 초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음.
- 실천 가능성은 실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실무적으로 복잡성 정도 및 효율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함.
- 수용성은 지원수준이 축소되는 계층은 불만을 제기하고, 지원이 확대되는 계층은 찬성한다는 시각에서 축소 그룹과 확대 그룹을 비교하였음.

○ 관련 법의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제Ⅳ-1안>과 <제Ⅴ-1>안을 들 수 있음.
- 관련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견해와 시행규칙만 개정한다는 견해가 있음.
- 앞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에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정비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제Ⅴ-2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 4-14. 대안별 비교

		법 개정 필요성	예산 사정	형평성 개선효과	용이성 (실현성)	수용성	종합	추진 순위
제Ⅰ안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제Ⅱ안	1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2	불필요	충분	보통	불량	작음	· 실현성 적음	-
제Ⅲ안		불필요	충분	작음	보통	보통		③
제Ⅳ안	1	불필요	충분	작음	양호	보통		①
	2	필요	불충분	큼	양호	큼	· 법 개정 필요 · 예산 추가 확보	⑥
	3	필요	불충분	큼	양호	큼	· 법 개정 필요 · 예산 추가 확보	⑤
제Ⅴ안	1	불필요	충분	보통	양호	보통		②
	2	필요	충분	큼	보통	큼	· 법 개정 필요	④

주 :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57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등이 있음.

4.5. 금후의 과제

4.5.1. 관련 법령의 보완

4.5.1.1. 주요내용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내용(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차등화 방안 도입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한선(50%)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4.5.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

강보험료 경감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6조의2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 중

○ 개정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사유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경감절차,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시행함으로써 빠른 기한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로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및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신설조항)
第62條(保險料) ①·② (생 략) ⑤다음 各戶의 1에 해당하는 加入者의 경우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속한 世帶의 保險料는 公團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輕減할 수 있다. 1. 島嶼·僻地·農漁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者. 다만, 農漁村에 거주하는 者는 農業 또는 漁業에 종사하는 者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 2. 65歲 이상인 者 3. 障碍人福祉法에 의하여 등록 障碍人 4.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또는 第14號에 規定된 國家有功者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등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

현 행	개 정 안(신설조항)
	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5.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 개정방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경감방법, 절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지게 되므로,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건강보험료의 지원율)등의 개정에 대하여
-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한선 폐지 및 지원방법(지원률)의 제한 철폐로 차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	제27조 (건강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그 일부의 금액(동법 제66조의2제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현 행	개 정 안
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개정(안)

-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관련예산 집행부처인 농림부장관에게 위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13, 2005.12.30> 〈신설〉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금액 중 그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2005.12.30> ②제1항에 따른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때 상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5.1.4.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 개정방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개정(안)에 맞추어 준농어촌지역을 일치시킴.

○ 법 제43조의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43조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선 안
제14조(준농산어촌의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사항 3.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준농산어촌의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이하생략)

4.5.2.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 세대 여부 확인 철저

○ 농어업인의 정의 및 농어촌·준농어촌의 범위의 명확화

- 현재 관련 법령상에 정의되어 있는 '농어업인'의 정의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하여도 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농어업인 규정만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6.7.29자로 특·광역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준농어촌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

어업인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음.

○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대상지역을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데 따른 복잡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 수 있음.

- 첫 번째, 경감대상지역을 고시하여 대상지역을 일일이 명시하는 방법임.
  - · 현재의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고시"와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임.
- 두 번째, 경감지원을 농어촌 부분과 농어업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의 대상 여부만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방법임.
  - · 현행 규정상의 농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던 농어업인 부분(28%)을 지원
  - · 농어촌 부분(22%)은 농어촌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 위의 두 조건을 종합하여 농어업인 세대별 최종 경감지원율을 결정·지원

○ 농어업인 여부 확인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현재는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군에서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실정임.
-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의 업무가 해당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의3(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관련법(지방자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장, 군수의 업무로 규정하고, 하위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인

력, 예산, 전산 등 시스템 운영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29]도 한 방법임.

- 장기적으로 수혜자가 경감지원을 신청하는 「신고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확인서」 비치의 의무화

4.5.3.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맞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 및 생활수준 등을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련 연구들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도 공감하고 있음.

○ 이 분야는 앞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 및 급여 업무의 통합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9)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시행계획점검・평가단, 「200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06.5,p.50.

5.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의료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그러나 고소득층까지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인들은 2004년부터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22%)외에 추가적인 경감을 받고 있음. 추가 경감율은 2004년에 8%, 2005년에 18%, 그리고 2006년에는 28%로 해마다 인상됨. 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산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었지만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감소되었음.

○ 2006.1월 현재 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은 535,826세대임. 대부분은 낮은 보험료등급에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는 높은 등급에 속해 있음.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함. 이들은 하위계층은 경감지원율을 높이고, 상위계층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

○ 여기에서는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소득재분배)에 충실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 경감지원방법에는 제외, 경감, 면제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여기에서는 차등경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여러 가지 대안 중 중간계층은 현행과 같이 50%를 경감하고 상위계층은 정액지원하고, 하위계층은 정률 지원하는 방안이 형평성, 실천성, 수용성 등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함.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해외자료조사 2003-01, 200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2005.

농림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해설」, 200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시행계획점검・평가단, 「200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06.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박대식, “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방향”, 「농업전망 2006(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박대식 외,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C2001-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박대식 외,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C2004-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P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신영석, “국민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체계 및 재정운영방안”, 「보건복지포럼」 제2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11.

신영석 외,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홍규,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CEO Focus 제102호, 농협조사부, 2002.7.

이혜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1, 2004.

정명채, “보험료 경감의 합리적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 발표자료, 2005.11.

정명채, 최경환, 박대식, 채혜윤,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C200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참여복지기획단(보건복지부 외), 「참여복지 5개년계획 : 2004～2008」, 2004.

최경환, 「한국 의료보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6.

최병호 외,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200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2001.

최병호 외, 「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4-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2006-02, 2006.3.3.

홍석표 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차등지원 방안」, 정책보고서 2002-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부표1.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등 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등 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1등급	40점 이하	35	51등급	1,031 - 1,080	1,055
2등급	41 - 50	45	52등급	1,081 - 1,130	1,105
3등급	51 - 60	55	53등급	1,131 - 1,190	1,160
4등급	61 - 70	65	54등급	1,191 - 1,250	1,220?
5등급	71 - 80	75	55등급	1,251 - 1,310	1,280?
6등급	81 - 90	85	56등급	1,311 - 1,370	1,340?
7등급	91 - 100	95	57등급	1,371 - 1,440	1,405?
8등급	101 - 110	105	58등급	1,441 - 1,510	1,475?
9등급	111 - 120	115	59등급	1,511 - 1,580	1,545?
10등급	121 - 130	125	60등급	1,581 - 1,660	1,620?
11등급	131 - 145	138	61등급	1,661 - 1,740	1,700?
12등급	146 - 160	153	62등급	1,741 - 1,830	1,785?
13등급	161 - 175	168	63등급	1,831 - 1,920	1,875?
14등급	176 - 190	183	64등급	1,921 - 2,010	1,965?
15등급	191 - 205	198	65등급	2,011 - 2,110	2,060?
16등급	206 - 220	213	66등급	2,111 - 2,210	2,160?
17등급	221 - 235	228	67등급	2,211 - 2,320	2,265?
18등급	236 - 250	243	68등급	2,321 - 2,430	2,375?
19등급	251 - 265	258	69등급	2,431 - 2,550	2,490?
20등급	266 - 280	273	70등급	2,551 - 2,680	2,615?
21등급	281 - 300	290	71등급	2,681 - 2,810	2,745?
22등급	301 - 320	310	72등급	2 811 - 2,950	2,880?
23등급	321 - 340	330	73등급	2,951 - 3,090	3,020?
24등급	341 - 360	350	74등급	3,091 - 3,240	3,165?
25등급	361 - 380	370	75등급	3,241 - 3,400	3,320
26등급	381 - 400	390	76등급	3,401 - 3,570	3,485?
27등급	401 - 420	410	77등급	3,571 - 3,740	3,655
28등급	421 - 440	430	78등급	3,741 - 3,920	3,830
29등급	441 - 460	450	79등급	3,921 - 4,120	4,020
30등급	461 - 480	470	80등급	4,121 - 4,320	4,220
31등급	481 - 505	493	81등급	4,321 - 4,530	4,425
32등급	506 - 530	518	82등급	4,531 - 4,750	4,640
33등급	531 - 555	543	83등급	4,751 - 4,980	4,865
34등급	556 - 580	568	84등급	4,981 - 5,230	5,105
35등급	581 - 605	593	85등급	5,231 - 5,480	5,355
36등급	606 - 630	618	86등급	5,481 - 5,750	5,615
37등급	631 - 655	643	87등급	5,751 - 6,030	5,890
38등급	656 - 680	668	88등급	6,031 - 6,330	6,180
39등급	681 - 705	693	89등급	6,331 - 6,640	6,485
40등급	706 - 730	718	90등급	6,641 - 6,960	6,800
41등급	731 - 760	745	91등급	6,961 - 7,300	7,130
42등급	761 - 790	775	92등급	7,301 - 7,660	7,480
43등급	791 - 820	805	93등급	7,661 - 8,030	7,845
44등급	821 - 850	835	94등급	8,031 - 8,430	8,230
45등급	851 - 880	865	95등급	8,431 - 8,840	8,635
46등급	881 - 910	895	96등급	8,841 - 9,270	9,055
47등급	911 - 940	925	97등급	9,271 - 9,730	9,500
48등급	941 - 970	955	98등급	9,731 - 10,200	9,965
49등급	971 - 1,000	985	99등급	10,201 - 10,700	10,450
50등급	1,001 - 1,030	1,015	100등급	10,701점 이상	11,000

부표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구 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1등급	1.4 - 2.5	20
2등급	2.6 - 3.7	32
3등급	3.8 - 4.9	44
4등급	5.0 - 6.1	56
5등급	6.2 - 7.3	68
6등급	7.4 - 8.4	81
7등급	8.5 - 9.6	93
8등급	9.7 - 10.8	105
9등급	10.9 - 12.0	117
10등급	12.1 - 13.2	129
11등급	13.3 - 14.4	141
12등급	14.5 - 15.6	153
13등급	15.7 - 16.8	165
14등급	16.9 - 18.0	178
15등급	18.1 - 19.2	190
16등급	19.3 - 20.3	202
17등급	20.4 - 21.5	214
18등급	21.6 - 22.7	226
19등급	22.8 - 23.9	238
20등급	24.0 - 25.1	250
21등급	25.2 - 26.3	263
22등급	26.4 - 27.5	275
23등급	27.6 - 28.7	287
24등급	28.8 - 29.9	299
25등급	30.0 - 31.1	311
26등급	31.2 - 32.2	323
27등급	32.3 - 33.4	335
28등급	33.5 - 34.6	348
29등급	34.7 - 35.8	360
30등급	35.9 이상	372

부표3. 소득등급별 점수

등 급	소득금액(점수)	적용점수	등 급	소득금액(점수)	적용점수
1등급	500-600	380	36등급	6,560-6,960	1,407
2등급	600-700	409	37등급	6,960-7,380	1,443
3등급	700-800	437	38등급	7,380-7,840	1,481
4등급	800-900	466	39등급	7,840-8,320	1,520
5등급	900-1000	494	40등급	8,320-8,820	1,560
6등급	1,000-1,100	523	41등급	8,820-9,360	1,601
7등급	1,100-1,200	552	42등급	9,360-9,930	1,643
8등급	1,200-1,300	580	43등급	9,930-10,600	1,687
9등급	1,300-1,400	609	44등급	10,600-11,200	1,731
10등급	1,400-1,500	637	45등급	11,200-11,900	1,776
11등급	1,500-1,600	666	46등급	11,900-12,600	1,823
12등급	1,600-1,700	695	47등급	12,600-13,400	1,871
13등급	1,700-1,800	723	48등급	13,400-14,200	1,920
14등급	1,800-1,900	752	49등급	14,200-15,000	1,969
15등급	1,900-2,020	780	50등급	15,000-15,800	2,020
16등급	2,020-2,140	809	51등급	15,800-16,600	2,247
17등급	2,140-2,270	838	52등급	16,600-17,400	2,474
18등급	2,270-2,410	866	53등급	17,400-18,300	2,714
19등급	2,410-2,560	895	54등급	18,300-19,200	2,969
20등급	2,560-2,710	923	55등급	19,200-20,100	3,224
21등급	2,710-2,880	952	56등급	20,100-21,100	3,492
22등급	2,880-3,050	981	57등급	21,100-22,100	3,777
23등급	3,050-3,240	1,009	58등급	22,100-23,200	4,074
24등급	3,240-3,430	1,038	59등급	23,200-24,400	4,400
25등급	3,430-3,640	1,066	60등급	24,400-25,600	4,740
26등급	3,640-3,860	1,095	61등급	25,600-26,800	5,080
27등급	3,860-4,100	1,124	62등급	26,800-28,200	5,449
28등급	4,100-4,350	1,152	63등급	28,200-29,500	5,831
29등급	4,350-4,610	1,181	64등급	29,500-31,000	6,228
30등급	4,610-4,890	1,209	65등급	31,000-32,500	6,653
31등급	4,890-5,190	1,240	66등급	32,500-34,100	7,092
32등급	5,190-5,500	1,271	67등급	34,100-35,800	7,559
33등급	5,500-5,840	1,303	68등급	35,800-37,600	8,055
34등급	5,840-6,190	1,336	69등급	37,600-39,400	8,565
35등급	6,190-6,560	1,371	70등급	39,400 초과	9,104

부표4. 재산등급별 점수

구 분	재산등급별 점수		구 분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등급	100 - 300	22	26등급	15,100 - 16,800	569
2등급	300 - 600	44	27등급	16,800 - 18,800	591
3등급	600 - 900	66	28등급	18,800 - 20,900	613
4등급	900 - 1,200	88	29등급	20,900 - 23,300	635
5등급	1,200 - 1,500	110	30등급	23,300 - 25,900	657
6등급	1,500 - 1,800	131	31등급	25,900 - 28,800	680
7등급	1,800 - 2,100	153	32등급	28,800 - 32,100	704
8등급	2,100 - 2,400	175	33등급	32,100 - 35,800	730
9등급	2,400 - 2,700	197	34등급	35,800 - 39,800	756
10등급	2,700 - 3,000	219	35등급	39,800 - 44,300	784
11등급	3,000 - 3,350	241	36등급	44,300 - 49,400	812
12등급	3,350 - 3,700	263	37등급	49,400 - 55,000	842
13등급	3,700 - 4,100	285	38등급	55,000 - 61,200	873
14등급	4,100 - 4,600	307	39등급	61,200 - 68,200	905
15등급	4,600 - 5,200	329	40등급	68,200 - 75,900	938
16등급	5,200 - 5,800	350	41등급	75,900 - 84,600	972
17등급	5,800 - 6,400	372	42등급	84,600 - 94,200	1,007
18등급	6,400 - 7,100	394	43등급	94,200 - 105,000	1,043
19등급	7,100 - 7,900	416	44등급	105,000 - 117,000	1,081
20등급	7,900 - 8,800	438	45등급	117,000 - 131,000	1,119
21등급	8,800 - 9,800	460	46등급	131000 - 145,000	1,159
22등급	9,800 - 11,000	482	47등급	145,000 - 162,000	1,199
23등급	11,000 - 12,200	504	48등급	162,000 - 180,000	1,241
24등급	12,200 - 13,600	526	49등급	180,000 - 200,000	1,284
25등급	13,600 - 15,100	548	50등급	200,000 초과	1,328

부표5. 자동차 등급별 점수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기량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 연간세액[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자동차 등급별 점수 적용

부표 6. 평가소득점수 산정방법(제41조 제3항 관련)

※ 평가소득점수 산출식

평가소득점수 = 평가점수 + 가산점수

1. 평가점수 산출

1) 평가소득 요소의 기준구간표

구 분		1구간 (기본)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피보험자의 성·연령별	남성	19세 이하	60~64세	20~29세	30~49세	-	-	-
		65세 이상		50~59세				
	여성	19세 이하	60~64세	25~29세	20~24세	-	-	-
		65세 이상		50~59세	30~49세			
재 산 정 도		0~300	301~600	601~1,000	1,001~2,000	2,001~5,000	5,001~10,000	10,001 이상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10만원 이하	21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5만원 이하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주: 1) 자동차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산출된 자동차 연간세액 기준임.
2) 영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또는 자동차가 없는 세대의 경우 기본등급인 1구간을 적용한다.

2) 구간별 평가점수 결정표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피보험자의 성·연령별	남성	1.4	4.8	5.7	6.6	-	-	-
	여성	1.4	3	4.3	5.2	-	-	-
재 산 정 도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정도		2	3.9	5.9	7.9	9.9	11.8	13.8

2. 가산점수 산출: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세소득금액이 있는 세대의 경우는 산정된 평가점수에 소득금액 50만원당 1점씩을 가산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소득자료의 구간별 가산점수 결정표

등급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소득구간 (연간:만원)	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400	401~450	451~500
가산점수	1	2	3	4	5	6	7	8	9	10

부록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 법 제62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4.6.5., 2005.7.1.>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3.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자

- 국민건강보협법시행령 제32조제5호(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05.6.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신설 2004.4.24.>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2조제3항)에 의한 경감 대상자 :

- 농어민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경감하는 수준 이상의 경감률에 대하여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상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농특법 제2조제3호)

· 농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8호)

/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함

/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ㅇ 참고 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나.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자

다.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영임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임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참고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겸업시 판매액등의 합산)

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제38조의3 (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등)

①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록 2. 경감방안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 제 I 안 :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

* 보험료 등급 1등급은 50%를 경감 지원하고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경감률을 0.28%씩 하향 적용하여 100등급은 농어촌경감 22%만 경감 지원하는 경우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 I 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49.72%	2,938	35,259	121,115,683	-17	-201	-689,417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49.43%	3,569	42,830	400,713,902	-41	-490	-4,588,018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49.15%	4,197	50,370	306,400,374	-73	-870	-5,292,546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48.87%	4,813	57,762	102,585,269	-112	-1,338	-2,376,331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48.59%	5,422	65,065	231,631,514	-158	-1,895	-6,746,086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48.30%	6,028	72,337	488,347,595	-212	-2,543	-17,167,285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48.02%	6,622	79,462	285,268,010	-273	-3,278	-11,768,59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47.74%	7,213	86,555	405,596,333	-342	-4,105	-19,236,427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47.45%	7,792	93,501	447,965,165	-418	-5,019	-24,044,155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47.17%	8,552	102,623	789,787,008	-513	-6,157	-47,383,872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46.89%	9,424	113,091	1,147,199,608	-626	-7,509	-76,166,792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46.60%	10,286	123,426	882,866,418	-749	-8,994	-64,333,842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46.32%	11,136	133,627	1,337,337,223	-884	-10,613	-106,216,697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46.04%	11,974	143,694	900,097,998	-1,031	-12,366	-77,461,842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45.76%	12,802	153,627	1,663,165,772	-1,188	-14,253	-154,303,108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45.47%	13,619	163,426	1,383,240,779	-1,356	-16,274	-137,740,021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45.19%	14,429	173,146	2,025,463,925	-1,536	-18,434	-215,638,915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44.91%	15,223	182,678	2,367,136,444	-1,727	-20,722	-268,520,756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44.62%	16,006	192,075	1,697,176,831	-1,929	-23,145	-204,507,089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44.34%	16,894	202,722	2,828,789,486	-2,156	-25,878	-361,094,914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44.06%	17,944	215,333	2,317,198,340	-2,421	-29,047	-312,574,840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43.77%	18,980	227,765	3,351,332,397	-2,700	-32,395	-476,661,843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43.49%	20,002	240,018	3,069,831,893	-2,993	-35,922	-459,440,707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43.21%	21,003	252,041	2,980,635,750	-3,302	-39,619	-468,535,410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42.93%	21,995	263,937	3,692,745,925	-3,625	-43,503	-608,647,115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42.64%	22,971	275,655	3,036,614,872	-3,964	-47,565	-523,976,648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42.36%	23,933	287,194	3,842,081,600	-4,317	-51,806	-693,060,40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42.08%	24,880	298,554	3,654,306,659	-4,685	-56,226	-688,200,541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41.79%	25,807	309,686	3,484,588,335	-5,068	-60,814	-684,277,665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41.51%	26,890	322,682	4,819,580,383	-5,500	-65,998	-985,744,097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41.23%	28,059	336,709	5,075,217,084	-5,971	-71,651	-1,079,993,196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40.94%	29,214	350,563	5,116,810,659	-6,461	-77,537	-1,131,736,941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40.66%	30,345	364,144	5,028,823,829	-6,970	-83,636	-1,155,017,971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40.38%	31,463	377,550	4,972,339,442	-7,497	-89,970	-1,184,898,958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40.10%	32,557	390,686	5,067,193,270	-8,043	-96,514	-1,251,790,73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39.81%	33,637	403,646	5,043,959,236	-8,608	-103,294	-1,290,763,004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39.53%	34,695	416,335	4,794,100,284	-9,190	-110,285	-1,269,929,016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39.25%	35,737	428,849	4,611,840,976	-9,793	-117,511	-1,263,714,464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38.96%	36,758	441,092	4,585,154,775	-10,412	-124,948	-1,298,831,025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38.68%	37,864	454,366	5,343,346,794	-11,081	-132,974	-1,563,771,606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38.40%	39,100	469,196	5,484,901,020	-11,815	-141,784	-1,657,455,18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38.11%	40,313	483,758	5,083,814,226	-12,572	-150,862	-1,585,407,354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37.83%	41,504	498,053	5,011,904,131	-13,351	-160,207	-1,612,166,249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37.55%	42,677	512,125	4,446,266,486	-14,153	-169,835	-1,474,510,234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37.27%	43,824	525,884	4,484,736,023	-14,976	-179,716	-1,532,620,777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36.98%	44,948	539,375	3,966,024,916	-15,822	-189,865	-1,396,076,804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36.70%	46,050	552,599	3,913,505,144	-16,690	-200,281	-1,418,391,016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36.42%	47,130	565,555	3,422,739,141	-17,580	-210,965	-1,276,759,899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36.13%	48,191	578,287	3,207,757,907	-18,494	-221,933	-1,231,062,433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Ⅰ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35.85%	49,695	596,343	4,675,331,002	-19,615	-235,377	-1,845,353,798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35.57%	51,640	619,677	3,981,422,975	-20,955	-251,463	-1,615,651,525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35.28%	53,780	645,358	3,898,610,539	-22,430	-269,162	-1,626,004,781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35.00%	56,107	673,279	3,180,571,111	-24,043	-288,521	-1,362,972,089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34.72%	58,392	700,706	2,551,272,186	-25,703	-308,434	-1,123,006,554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34.44%	60,630	727,556	2,080,811,458	-27,405	-328,864	-940,549,742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34.15%	63,048	756,576	2,017,788,422	-29,257	-351,084	-936,340,798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33.87%	65,642	787,698	1,606,116,440	-31,263	-375,162	-764,955,100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33.59%	68,183	818,195	1,395,022,924	-33,322	-399,865	-681,769,376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33.30%	70,889	850,665	1,361,064,303	-35,541	-426,495	-682,391,697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33.02%	73,760	885,121	1,126,758,921	-37,930	-455,159	-579,417,519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32.74%	76,781	921,376	949,017,607	-40,489	-485,864	-500,439,593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32.45%	79,957	959,483	792,532,989	-43,228	-518,737	-428,476,731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32.17%	83,066	996,786	667,846,797	-46,034	-552,414	-370,117,203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31.89%	86,314	1,035,773	591,426,532	-49,026	-588,307	-335,923,148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31.61%	89,701	1,076,416	477,928,585	-52,209	-626,504	-278,167,895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31.32%	93,221	1,118,646	449,695,868	-55,589	-667,074	-268,163,572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31.04%	96,863	1,162,361	321,973,966	-59,172	-710,059	-196,686,374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30.76%	100,627	1,207,530	265,656,549	-62,963	-755,550	-166,221,051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30.47%	104,708	1,256,499	196,013,891	-67,097	-805,161	-125,605,069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30.19%	108,892	1,306,708	165,951,882	-71,453	-857,432	-108,893,898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29.91%	113,177	1,358,125	122,231,225	-76,038	-912,455	-82,120,975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29.62%	117,554	1,410,647	74,764,317	-80,856	-970,273	-51,424,443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29.34%	122,023	1,464,280	61,499,769	-85,917	-1,031,000	-43,301,991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29.06%	126,763	1,521,151	56,282,603	-91,357	-1,096,289	-40,562,677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28.78%	131,766	1,581,198	26,880,362	-97,194	-1,166,322	-19,827,478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28.49%	136,836	1,642,028	11,494,197	-103,294	-1,239,532	-8,676,723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28.21%	141,592	1,699,107	10,194,642	-109,378	-1,312,533	-7,875,198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27.93%	147,511	1,770,129	7,080,514	-116,599	-1,399,191	-5,596,766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27.64%	153,280	1,839,365	9,196,826	-123,970	-1,487,635	-7,438,174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27.36%	159,082	1,908,984	11,453,903	-131,638	-1,579,656	-9,477,937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27.08%	165,086	1,981,029	11,886,175	-139,759	-1,677,111	-10,062,665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26.79%	171,283	2,055,400	22,609,399	-148,347	-1,780,160	-19,581,761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26.51%	177,833	2,133,998	6,401,993	-157,562	-1,890,742	-5,672,227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26.23%	184,551	2,214,608	2,214,608	-167,269	-2,007,232	-2,007,232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25.95%	191,425	2,297,098	4,594,195	-177,480	-2,129,762	-4,259,525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25.66%	198,608	2,383,302	14,299,811	-188,362	-2,260,338	-13,562,029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25.38%	206,090	2,473,082	0	-199,935	-2,399,218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25.10%	213,848	2,566,176	5,132,353	-212,212	-2,546,544	-5,093,087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24.81%	221,709	2,660,509	5,321,019	-225,051	-2,700,611	-5,401,221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24.53%	229,817	2,757,800	0	-238,623	-2,863,480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24.25%	238,316	2,859,798	2,859,798	-253,119	-3,037,422	-3,037,422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23.96%	247,028	2,964,337	2,964,337	-268,387	-3,220,643	-3,220,643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23.68%	256,091	3,073,093	0	-284,619	-3,415,427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23.40%	265,481	3,185,769	0	-301,834	-3,622,011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23.12%	275,027	3,300,323	13,201,291	-319,883	-3,838,597	-15,354,389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22.83%	285,012	3,420,142	0	-339,138	-4,069,658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22.55%	295,257	3,543,079	7,086,159	-359,443	-4,313,321	-8,626,641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22.27%	305,741	3,668,894	14,675,574	-380,824	-4,569,886	-18,279,546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22.00%	317,988	3,815,856	0	-404,712	-4,856,544	0
		535,826			224,935,042,860				176,226,181,769			-48,708,861,091

나. 제Ⅱ-1안 :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

* 보험료 등급 1등급은 50%를 경감 지원하고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0.25%씩 경감율을 하향 적용하여 100등급은 농어촌경감 22%+3%를 경감 지원하는 경우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Ⅱ-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49.75%	2,940	35,281	121,188,766	-15	-179	-616,334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49.49%	3,573	42,882	401,200,265	-37	-438	-4,101,655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49.24%	4,205	50,462	306,961,421	-65	-778	-4,731,499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48.99%	4,825	57,904	102,837,177	-100	-1,196	-2,124,423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48.74%	5,439	65,266	232,346,647	-141	-1,694	-6,030,953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48.48%	6,051	72,607	490,167,448	-189	-2,273	-15,347,432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48.23%	6,651	79,809	286,515,564	-244	-2,931	-10,521,036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47.98%	7,249	86,990	407,635,530	-306	-3,670	-17,197,230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47.72%	7,836	94,033	450,514,016	-374	-4,487	-21,495,304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47.47%	8,606	103,276	794,810,033	-459	-5,504	-42,360,847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47.22%	9,491	113,887	1,155,273,826	-559	-6,713	-68,092,574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46.96%	10,365	124,379	889,686,260	-670	-8,041	-57,514,000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46.71%	11,229	134,752	1,348,596,943	-791	-9,488	-94,956,977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46.46%	12,084	145,005	908,309,501	-921	-11,055	-69,250,339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46.21%	12,928	155,138	1,679,522,992	-1,062	-12,742	-137,945,888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45.95%	13,763	165,151	1,397,842,194	-1,212	-14,549	-123,138,606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45.70%	14,592	175,100	2,048,323,174	-1,373	-16,480	-192,779,666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45.45%	15,406	184,874	2,395,601,542	-1,544	-18,526	-240,055,658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45.19%	16,211	194,529	1,718,856,028	-1,724	-20,691	-182,827,892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44.94%	17,122	205,466	2,867,068,099	-1,928	-23,134	-322,816,301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44.69%	18,201	218,412	2,350,333,482	-2,164	-25,968	-279,439,698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44.43%	19,267	231,199	3,401,861,921	-2,413	-28,961	-426,132,319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44.18%	20,319	243,826	3,118,535,855	-2,676	-32,114	-410,736,745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43.93%	21,353	256,241	3,030,303,814	-2,952	-35,419	-418,867,346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43.68%	22,379	268,549	3,757,266,820	-3,241	-38,891	-544,126,220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43.42%	23,391	280,697	3,092,160,100	-3,544	-42,523	-468,431,420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43.17%	24,390	292,686	3,915,550,900	-3,860	-46,314	-619,591,10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42.92%	25,376	304,515	3,727,260,780	-4,189	-50,265	-615,246,42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42.66%	26,344	316,133	3,557,126,603	-4,531	-54,367	-611,739,397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42.41%	27,473	329,678	4,924,076,224	-4,917	-59,002	-881,248,256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42.16%	28,692	344,305	5,189,703,995	-5,338	-64,055	-965,506,285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41.90%	29,899	358,782	5,236,782,773	-5,776	-69,318	-1,011,764,827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41.65%	31,084	373,010	5,151,263,896	-6,231	-74,770	-1,032,577,904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41.40%	32,257	387,088	5,097,947,106	-6,703	-80,432	-1,059,291,294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41.15%	33,410	400,917	5,199,891,934	-7,190	-86,283	-1,119,092,066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40.89%	34,550	414,596	5,180,789,237	-7,695	-92,344	-1,153,933,003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40.64%	35,669	428,026	4,928,721,734	-8,216	-98,594	-1,135,307,566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40.39%	36,775	441,306	4,745,803,640	-8,755	-105,054	-1,129,751,80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40.13%	37,861	454,338	4,722,840,042	-9,309	-111,702	-1,161,145,758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39.88%	39,039	468,462	5,509,117,636	-9,906	-118,878	-1,398,000,764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39.63%	40,352	484,226	5,660,602,983	-10,563	-126,754	-1,481,753,217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39.37%	41,646	499,751	5,251,878,610	-11,239	-134,869	-1,417,342,97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39.12%	42,920	515,036	5,182,805,147	-11,935	-143,224	-1,441,265,233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38.87%	44,177	530,128	4,602,574,991	-12,653	-151,832	-1,318,201,729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38.62%	45,411	544,935	4,647,204,657	-13,389	-160,665	-1,370,152,143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38.36%	46,625	559,502	4,114,018,924	-14,145	-169,738	-1,248,082,796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38.11%	47,819	573,830	4,063,864,615	-14,921	-179,050	-1,268,031,545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37.86%	48,993	587,919	3,558,084,713	-15,717	-188,601	-1,141,414,327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37.60%	50,151	601,813	3,338,259,225	-16,534	-198,407	-1,100,561,115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Ⅱ-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37.35%	51,775	621,295	4,870,951,546	-17,535	-210,425	-1,649,733,254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37.10%	53,861	646,334	4,152,693,455	-18,734	-224,806	-1,444,381,045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36.84%	56,158	673,891	4,070,978,537	-20,052	-240,629	-1,453,636,783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36.59%	58,655	703,864	3,325,055,785	-21,495	-257,936	-1,218,487,415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36.34%	61,117	733,403	2,670,318,817	-22,978	-275,737	-1,003,959,923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36.09%	63,535	762,418	2,180,516,378	-24,500	-294,002	-840,844,822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35.83%	66,149	793,793	2,117,047,164	-26,156	-313,867	-837,082,056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35.58%	68,956	827,468	1,687,207,086	-27,949	-335,392	-683,864,454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35.33%	71,715	860,584	1,467,295,296	-29,790	-357,476	-609,497,004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35.07%	74,656	895,877	1,433,402,646	-31,774	-381,283	-610,053,354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34.82%	77,781	933,371	1,188,181,273	-33,909	-406,909	-517,995,167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34.57%	81,073	972,881	1,002,067,741	-36,197	-434,359	-447,389,459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34.31%	84,539	1,014,473	837,954,551	-38,646	-463,747	-383,055,169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34.06%	87,946	1,055,346	707,081,836	-41,154	-493,854	-330,882,164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33.81%	91,511	1,098,138	627,036,760	-43,829	-525,942	-300,312,920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33.56%	95,236	1,142,830	507,416,348	-46,674	-560,090	-248,680,132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33.30%	99,113	1,189,361	478,123,101	-49,697	-596,359	-239,736,339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33.05%	103,136	1,237,632	342,824,112	-52,899	-634,788	-175,836,228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32.80%	107,302	1,287,623	283,277,155	-56,288	-675,457	-148,600,445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32.54%	111,821	1,341,852	209,328,916	-59,984	-719,808	-112,290,044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32.29%	116,467	1,397,602	177,495,405	-63,878	-766,538	-97,350,375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2.04%	121,238	1,454,851	130,936,629	-67,977	-815,729	-73,415,571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1.78%	126,125	1,513,503	80,215,671	-72,285	-867,417	-45,973,089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1.53%	131,131	1,573,573	66,090,086	-76,809	-921,707	-38,711,674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1.28%	136,447	1,637,366	60,582,533	-81,673	-980,074	-36,262,747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1.03%	142,070	1,704,836	28,982,215	-86,890	-1,042,684	-17,725,625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0.77%	147,786	1,773,427	12,413,991	-92,344	-1,108,133	-7,756,929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0.52%	153,187	1,838,245	11,029,469	-97,783	-1,173,395	-7,040,371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0.27%	159,871	1,918,453	7,673,811	-104,239	-1,250,867	-5,003,469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0.01%	166,422	1,997,065	9,985,325	-110,828	-1,329,935	-6,649,675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29.76%	173,037	2,076,439	12,458,631	-117,683	-1,412,201	-8,473,209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29.51%	179,901	2,158,815	12,952,888	-124,944	-1,499,325	-8,995,952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29.25%	187,009	2,244,109	24,685,204	-132,621	-1,591,451	-17,505,956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29.00%	194,536	2,334,430	7,003,289	-140,859	-1,690,310	-5,070,931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28.75%	202,282	2,427,389	2,427,389	-149,538	-1,794,451	-1,794,451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28.50%	210,239	2,522,868	5,045,735	-158,666	-1,903,992	-3,807,985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28.24%	218,576	2,622,914	15,737,482	-168,394	-2,020,726	-12,124,358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27.99%	227,285	2,727,416	0	-178,740	-2,144,884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27.74%	236,344	2,836,128	5,672,256	-189,716	-2,276,592	-4,553,184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27.48%	245,566	2,946,793	5,893,586	-201,194	-2,414,327	-4,828,654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27.23%	255,112	3,061,349	0	-213,328	-2,559,931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26.98%	265,149	3,181,786	3,181,786	-226,286	-2,715,434	-2,715,434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26.72%	275,479	3,305,748	3,305,748	-239,936	-2,879,232	-2,879,232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26.47%	286,263	3,435,152	0	-254,447	-3,053,368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26.22%	297,477	3,569,728	0	-269,838	-3,238,052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25.97%	308,937	3,707,241	14,828,965	-285,973	-3,431,679	-13,726,715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25.71%	320,963	3,851,555	0	-303,187	-3,638,245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25.46%	333,360	4,000,322	8,000,644	-321,340	-3,856,078	-7,712,156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25.21%	346,111	4,153,334	16,613,335	-340,454	-4,085,446	-16,341,785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25.00%	361,350	4,336,200	0	-361,350	-4,336,200	0
		535,826			224,935,042,860				181,389,665,277			-43,545,377,583

다. 제Ⅱ-2안 : 등급별 차등지원 방안

* 보험료 등급 1등급은 50%를 경감 지원하고 상위등급으로 올라갈수록 0.20%씩 경감율을 하향 적용하여 100등급은 농어촌경감 22%+8%를 경감 지원하는 경우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Ⅱ-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49.80%	2,943	35,318	121,317,904	-12	-142	-487,196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49.60%	3,581	42,973	402,059,667	-29	-347	-3,242,253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49.40%	4,219	50,625	307,952,792	-51	-615	-3,740,128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49.20%	4,846	58,154	103,282,298	-79	-946	-1,679,302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49.00%	5,468	65,621	233,610,286	-112	-1,339	-4,767,314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48.80%	6,090	73,083	493,383,129	-150	-1,797	-12,131,751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48.60%	6,702	80,423	288,719,991	-193	-2,317	-8,316,609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48.40%	7,313	87,759	411,238,791	-242	-2,901	-13,593,969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48.20%	7,914	94,973	455,017,834	-296	-3,547	-16,991,486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48.00%	8,702	104,429	803,685,719	-363	-4,351	-33,485,161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47.80%	9,608	115,294	1,169,540,970	-442	-5,306	-53,825,43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47.60%	10,505	126,064	901,736,921	-530	-6,356	-45,463,339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47.40%	11,395	136,740	1,368,492,869	-625	-7,500	-75,061,051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47.20%	12,277	147,321	922,819,226	-728	-8,739	-54,740,614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47.00%	13,151	157,808	1,708,426,200	-839	-10,072	-109,042,680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46.80%	14,017	168,200	1,423,642,896	-958	-11,500	-97,337,904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46.60%	14,879	178,553	2,088,715,467	-1,086	-13,027	-152,387,373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46.40%	15,730	188,756	2,445,899,370	-1,220	-14,644	-189,757,83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46.20%	16,572	198,864	1,757,163,168	-1,363	-16,356	-144,520,752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46.00%	17,526	210,313	2,934,706,408	-1,524	-18,287	-255,177,992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45.80%	18,654	223,853	2,408,883,278	-1,711	-20,527	-220,889,902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45.60%	19,772	237,267	3,491,147,590	-1,908	-22,893	-336,846,650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45.40%	20,880	250,555	3,204,595,755	-2,115	-25,385	-324,676,845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45.20%	21,972	263,662	3,118,067,285	-2,333	-27,998	-331,103,875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45.00%	23,058	276,698	3,871,275,243	-2,562	-30,742	-430,117,797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44.80%	24,134	289,607	3,190,308,517	-2,801	-33,613	-370,283,003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44.60%	25,199	302,390	4,045,371,154	-3,051	-36,610	-489,770,846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44.40%	26,254	315,047	3,856,170,712	-3,311	-39,733	-486,336,488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44.20%	27,294	327,524	3,685,301,723	-3,581	-42,976	-483,564,277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44.00%	28,503	342,041	5,108,720,374	-3,887	-46,639	-696,604,106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43.80%	29,810	357,726	5,392,002,368	-4,220	-50,634	-763,207,912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43.60%	31,109	373,306	5,448,773,498	-4,566	-54,794	-799,774,102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43.40%	32,390	388,676	5,367,615,496	-4,925	-59,104	-816,226,304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43.20%	33,662	403,940	5,319,895,847	-5,298	-63,580	-837,342,553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43.00%	34,916	418,995	5,434,370,473	-5,684	-68,205	-884,613,527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42.80%	36,162	433,944	5,422,567,847	-6,083	-72,996	-912,154,393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42.60%	37,390	448,684	5,166,597,837	-6,495	-77,936	-897,431,463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42.40%	38,610	463,317	4,982,515,667	-6,920	-83,043	-893,039,773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42.20%	39,812	477,742	4,966,129,910	-7,358	-88,298	-917,855,89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42.00%	41,114	493,370	5,802,034,713	-7,831	-93,970	-1,105,083,687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41.80%	42,565	510,784	5,971,068,351	-8,350	-100,196	-1,171,287,849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41.60%	44,001	528,009	5,548,848,376	-8,884	-106,611	-1,120,373,204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41.40%	45,420	545,045	5,484,787,242	-9,435	-113,215	-1,139,283,138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41.20%	46,828	561,941	4,878,772,120	-10,002	-120,019	-1,042,004,60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41.00%	48,217	578,598	4,934,286,732	-10,583	-127,002	-1,083,070,068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40.80%	49,589	595,067	4,375,524,335	-11,181	-134,173	-986,577,385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40.60%	50,945	611,346	4,329,549,802	-11,795	-141,534	-1,002,346,358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40.40%	52,286	627,436	3,797,240,340	-12,424	-149,084	-902,258,70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40.20%	53,615	643,385	3,568,855,054	-13,070	-156,835	-869,965,286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Ⅱ-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 (월)	세대 (연)	**총액 (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40.00%	55,449	665,384	5,216,613,047	-13,861	-166,336	-1,304,071,753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39.80%	57,786	693,436	4,455,328,392	-14,809	-177,704	-1,141,746,108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39.60%	60,359	724,309	4,375,552,789	-15,851	-190,211	-1,149,062,531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39.40%	63,159	757,909	3,580,360,203	-16,991	-203,891	-963,182,997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39.20%	65,931	791,177	2,880,674,214	-18,164	-217,963	-793,604,526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39.00%	68,668	824,019	2,356,694,971	-19,367	-232,401	-664,666,229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38.80%	71,630	859,557	2,292,437,361	-20,675	-248,103	-661,691,859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38.60%	74,812	897,741	1,830,494,259	-22,093	-265,119	-540,577,281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38.40%	77,957	935,484	1,595,000,577	-23,548	-282,576	-481,791,723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38.20%	81,314	975,765	1,561,224,497	-25,116	-301,395	-482,231,503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38.00%	84,886	1,018,629	1,296,714,569	-26,804	-321,651	-409,461,871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37.80%	88,658	1,063,891	1,095,807,327	-28,612	-343,349	-353,649,873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37.60%	92,637	1,111,640	918,214,450	-30,548	-366,580	-302,795,270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37.40%	96,568	1,158,821	776,410,150	-32,532	-390,379	-261,553,85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37.20%	100,695	1,208,336	689,960,032	-34,645	-415,744	-237,389,648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37.00%	105,015	1,260,183	559,521,224	-36,895	-442,737	-196,575,256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36.80%	109,526	1,314,313	528,354,024	-39,284	-471,407	-189,505,416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36.60%	114,220	1,370,637	379,666,319	-41,815	-501,783	-138,994,021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36.40%	119,096	1,429,149	314,412,766	-44,494	-533,931	-117,464,834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36.20%	124,389	1,492,670	232,856,565	-47,416	-568,990	-88,762,395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36.00%	129,851	1,558,211	197,892,809	-50,494	-605,929	-76,952,971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5.80%	135,481	1,625,768	146,319,077	-53,734	-644,812	-58,033,123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5.60%	141,271	1,695,249	89,848,214	-57,139	-685,671	-36,340,546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5.40%	147,225	1,766,695	74,201,176	-60,715	-728,585	-30,600,584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5.20%	153,560	1,842,716	68,180,510	-64,560	-774,724	-28,664,770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5.00%	160,275	1,923,305	32,696,189	-68,685	-824,215	-14,011,651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4.80%	167,134	2,005,610	14,039,267	-72,996	-875,950	-6,131,653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4.60%	173,675	2,084,101	12,504,608	-77,295	-927,539	-5,565,232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4.40%	181,712	2,180,542	8,722,166	-82,398	-988,778	-3,955,114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4.20%	189,643	2,275,721	11,378,603	-87,607	-1,051,279	-5,256,397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4.00%	197,694	2,372,331	14,233,986	-93,026	-1,116,309	-6,697,854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3.80%	206,080	2,472,962	14,837,771	-98,765	-1,185,178	-7,111,069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3.60%	214,797	2,577,559	28,353,151	-104,833	-1,258,001	-13,838,009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3.40%	224,049	2,688,593	8,065,779	-111,346	-1,336,147	-4,008,441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3.20%	233,614	2,803,373	2,803,373	-118,206	-1,418,467	-1,418,467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3.00%	243,484	2,921,803	5,843,606	-125,421	-1,505,057	-3,010,114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2.80%	253,859	3,046,308	18,277,846	-133,111	-1,597,332	-9,583,994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2.60%	264,735	3,176,824	0	-141,290	-1,695,476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2.40%	276,094	3,313,133	6,626,265	-149,966	-1,799,587	-3,599,175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2.20%	287,721	3,452,657	6,905,313	-159,039	-1,908,463	-3,816,927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2.00%	299,810	3,597,720	0	-168,630	-2,023,560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31.80%	312,562	3,750,739	3,750,739	-178,873	-2,146,481	-2,146,481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31.60%	325,752	3,909,021	3,909,021	-189,663	-2,275,959	-2,275,959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31.40%	339,576	4,074,911	0	-201,134	-2,413,609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31.20%	354,015	4,248,183	0	-213,300	-2,559,597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31.00%	368,856	4,426,266	17,705,064	-226,054	-2,712,654	-10,850,616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30.80%	384,488	4,613,861	0	-239,662	-2,875,939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30.60%	400,689	4,808,269	9,616,538	-254,011	-3,048,131	-6,096,262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30.40%	417,445	5,009,340	20,037,359	-269,120	-3,229,440	-12,917,761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30.00%	433,620	5,203,440	0	-289,080	-3,468,960	0
		535,826			224,935,042,860				190,513,540,635			-34,421,502,225

라. 제Ⅲ안 : 등급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제1구간 : (1등급~49등급) 50%경감 제2구간 : (50등급~59등급) 45%경감 제3구간 : (60등급~71등급) 40%경감
제4구간 : (72등급~81등급) 35%경감 제5구간 : (82등급~100등급) 45%경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Ⅲ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50.00%	2,955	35,460	121,805,100	0	0	0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50.00%	3,610	43,320	405,301,920	0	0	0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50.00%	4,270	51,240	311,692,920	0	0	0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50.00%	4,925	59,100	104,961,600	0	0	0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50.00%	5,580	66,960	238,377,600	0	0	0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50.00%	6,240	74,880	505,514,880	0	0	0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50.00%	6,895	82,740	297,036,600	0	0	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50.00%	7,555	90,660	424,832,760	0	0	0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50.00%	8,210	98,520	472,009,320	0	0	0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50.00%	9,065	108,780	837,170,880	0	0	0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50.00%	10,050	120,600	1,223,366,400	0	0	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50.00%	11,035	132,420	947,200,260	0	0	0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50.00%	12,020	144,240	1,443,553,920	0	0	0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50.00%	13,005	156,060	977,559,840	0	0	0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50.00%	13,990	167,880	1,817,468,880	0	0	0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50.00%	14,975	179,700	1,520,980,800	0	0	0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50.00%	15,965	191,580	2,241,102,840	0	0	0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50.00%	16,950	203,400	2,635,657,200	0	0	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50.00%	17,935	215,220	1,901,683,920	0	0	0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50.00%	19,050	228,600	3,189,884,400	0	0	0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50.00%	20,365	244,380	2,629,773,180	0	0	0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50.00%	21,680	260,160	3,827,994,240	0	0	0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50.00%	22,995	275,940	3,529,272,600	0	0	0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50.00%	24,305	291,660	3,449,171,160	0	0	0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50.00%	25,620	307,440	4,301,393,040	0	0	0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50.00%	26,935	323,220	3,560,591,520	0	0	0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50.00%	28,250	339,000	4,535,142,000	0	0	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50.00%	29,565	354,780	4,342,507,200	0	0	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50.00%	30,875	370,500	4,168,866,000	0	0	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50.00%	32,390	388,680	5,805,324,480	0	0	0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50.00%	34,030	408,360	6,155,210,280	0	0	0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50.00%	35,675	428,100	6,248,547,600	0	0	0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50.00%	37,315	447,780	6,183,841,800	0	0	0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50.00%	38,960	467,520	6,157,238,400	0	0	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50.00%	40,600	487,200	6,318,984,000	0	0	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50.00%	42,245	506,940	6,334,722,240	0	0	0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50.00%	43,885	526,620	6,064,029,300	0	0	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50.00%	45,530	546,360	5,875,555,440	0	0	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50.00%	47,170	566,040	5,883,985,800	0	0	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50.00%	48,945	587,340	6,907,118,400	0	0	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50.00%	50,915	610,980	7,142,356,200	0	0	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50.00%	52,885	634,620	6,669,221,580	0	0	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50.00%	54,855	658,260	6,624,070,380	0	0	0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50.00%	56,830	681,960	5,920,776,720	0	0	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50.00%	58,800	705,600	6,017,356,800	0	0	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50.00%	60,770	729,240	5,362,101,720	0	0	0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50.00%	62,740	752,880	5,331,896,160	0	0	0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50.00%	64,710	776,520	4,699,499,040	0	0	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45.00%	60,017	720,198	3,994,938,306	-6,669	-80,022	-443,882,034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Ⅲ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45.00%	62,379	748,548	5,868,616,320	-6,931	-83,172	-652,068,48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45.00%	65,336	784,026	5,037,367,050	-7,260	-87,114	-559,707,45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45.00%	68,589	823,068	4,972,153,788	-7,621	-91,452	-552,461,532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45.00%	72,135	865,620	4,089,188,880	-8,015	-96,180	-454,354,32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45.00%	75,686	908,226	3,306,850,866	-8,410	-100,914	-367,427,874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5.00%	79,232	950,778	2,719,225,080	-8,804	-105,642	-302,136,120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5.00%	83,075	996,894	2,658,716,298	-9,231	-110,766	-295,412,922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5.00%	87,215	1,046,574	2,133,964,386	-9,691	-116,286	-237,107,154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5.00%	91,355	1,096,254	1,869,113,070	-10,151	-121,806	-207,679,230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0.00%	85,144	1,021,728	1,634,764,800	-21,286	-255,432	-408,691,20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0.00%	89,352	1,072,224	1,364,941,152	-22,338	-268,056	-341,235,288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0.00%	93,816	1,125,792	1,159,565,760	-23,454	-281,448	-289,891,440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0.00%	98,548	1,182,576	976,807,776	-24,637	-295,644	-244,201,944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0.00%	103,280	1,239,360	830,371,200	-25,820	-309,840	-207,592,80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0.00%	108,272	1,299,264	741,879,744	-27,068	-324,816	-185,469,936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0.00%	113,528	1,362,336	604,877,184	-28,382	-340,584	-151,219,296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0.00%	119,048	1,428,576	574,287,552	-29,762	-357,144	-143,571,888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0.00%	124,828	1,497,936	414,928,272	-31,207	-374,484	-103,732,068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0.00%	130,872	1,570,464	345,502,080	-32,718	-392,616	-86,375,520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0.00%	137,444	1,649,328	257,295,168	-34,361	-412,332	-64,323,792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0.00%	144,276	1,731,312	219,876,624	-36,069	-432,828	-54,969,156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5.00%	132,451	1,589,406	143,046,540	-56,765	-681,174	-61,305,660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5.00%	138,887	1,666,644	88,332,132	-59,523	-714,276	-37,856,628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5.00%	145,558	1,746,696	73,361,232	-62,382	-748,584	-31,440,528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5.00%	152,684	1,832,208	67,791,696	-65,436	-785,232	-29,053,584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5.00%	160,272	1,923,264	32,695,488	-68,688	-824,256	-14,012,352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5.00%	168,091	2,017,092	14,119,644	-72,039	-864,468	-6,051,276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5.00%	175,679	2,108,148	12,648,888	-75,291	-903,492	-5,420,952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5.00%	184,877	2,218,524	8,874,096	-79,233	-950,796	-3,803,184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5.00%	194,075	2,328,900	11,644,500	-83,175	-998,100	-4,990,5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5.00%	203,504	2,442,048	14,652,288	-87,216	-1,046,592	-6,279,552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0.00%	182,907	2,194,884	13,169,304	-121,938	-1,463,256	-8,779,536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0.00%	191,778	2,301,336	25,314,696	-127,852	-1,534,224	-16,876,464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0.00%	201,237	2,414,844	7,244,532	-134,158	-1,609,896	-4,829,688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0.00%	211,092	2,533,104	2,533,104	-140,728	-1,688,736	-1,688,736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0.00%	221,343	2,656,116	5,312,232	-147,562	-1,770,744	-3,541,488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0.00%	232,182	2,786,184	16,717,104	-154,788	-1,857,456	-11,144,736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0.00%	243,615	2,923,380	0	-162,410	-1,948,920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0.00%	255,636	3,067,632	6,135,264	-170,424	-2,045,088	-4,090,17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00%	268,056	3,216,672	6,433,344	-178,704	-2,144,448	-4,288,896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00%	281,064	3,372,768	0	-187,376	-2,248,512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30.00%	294,861	3,538,332	3,538,332	-196,574	-2,358,888	-2,358,888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30.00%	309,249	3,710,988	3,710,988	-206,166	-2,473,992	-2,473,992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30.00%	324,426	3,893,112	0	-216,284	-2,595,408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30.00%	340,389	4,084,668	0	-226,926	-2,723,112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30.00%	356,946	4,283,352	17,133,408	-237,964	-2,855,568	-11,422,272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30.00%	374,490	4,493,880	0	-249,660	-2,995,920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30.00%	392,820	4,713,840	9,427,680	-261,880	-3,142,560	-6,285,120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30.00%	411,939	4,943,268	19,773,072	-274,626	-3,295,512	-13,182,048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30.00%	433,620	5,203,440	0	-289,080	-3,468,960	0
		535,826			224,935,042,860				218,290,355,160			-6,644,687,700

마. 제Ⅳ-1안 : 등급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제1구간 : (1등급~55등급) 50%경감 제2구간 : (56등급~71등급) 40%경감 제3구간 : (72등급~100등급) 30%경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50.00%	2,955	35,460	121,805,100	0	0	0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50.00%	3,610	43,320	405,301,920	0	0	0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50.00%	4,270	51,240	311,692,920	0	0	0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50.00%	4,925	59,100	104,961,600	0	0	0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50.00%	5,580	66,960	238,377,600	0	0	0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50.00%	6,240	74,880	505,514,880	0	0	0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50.00%	6,895	82,740	297,036,600	0	0	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50.00%	7,555	90,660	424,832,760	0	0	0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50.00%	8,210	98,520	472,009,320	0	0	0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50.00%	9,065	108,780	837,170,880	0	0	0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50.00%	10,050	120,600	1,223,366,400	0	0	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50.00%	11,035	132,420	947,200,260	0	0	0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50.00%	12,020	144,240	1,443,553,920	0	0	0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50.00%	13,005	156,060	977,559,840	0	0	0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50.00%	13,990	167,880	1,817,468,880	0	0	0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50.00%	14,975	179,700	1,520,980,800	0	0	0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50.00%	15,965	191,580	2,241,102,840	0	0	0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50.00%	16,950	203,400	2,635,657,200	0	0	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50.00%	17,935	215,220	1,901,683,920	0	0	0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50.00%	19,050	228,600	3,189,884,400	0	0	0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50.00%	20,365	244,380	2,629,773,180	0	0	0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50.00%	21,680	260,160	3,827,994,240	0	0	0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50.00%	22,995	275,940	3,529,272,600	0	0	0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50.00%	24,305	291,660	3,449,171,160	0	0	0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50.00%	25,620	307,440	4,301,393,040	0	0	0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50.00%	26,935	323,220	3,560,591,520	0	0	0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50.00%	28,250	339,000	4,535,142,000	0	0	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50.00%	29,565	354,780	4,342,507,200	0	0	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50.00%	30,875	370,500	4,168,866,000	0	0	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50.00%	32,390	388,680	5,805,324,480	0	0	0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50.00%	34,030	408,360	6,155,210,280	0	0	0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50.00%	35,675	428,100	6,248,547,600	0	0	0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50.00%	37,315	447,780	6,183,841,800	0	0	0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50.00%	38,960	467,520	6,157,238,400	0	0	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50.00%	40,600	487,200	6,318,984,000	0	0	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50.00%	42,245	506,940	6,334,722,240	0	0	0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50.00%	43,885	526,620	6,064,029,300	0	0	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50.00%	45,530	546,360	5,875,555,440	0	0	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50.00%	47,170	566,040	5,883,985,800	0	0	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50.00%	48,945	587,340	6,907,118,400	0	0	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50.00%	50,915	610,980	7,142,356,200	0	0	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50.00%	52,885	634,620	6,669,221,580	0	0	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50.00%	54,855	658,260	6,624,070,380	0	0	0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50.00%	56,830	681,960	5,920,776,720	0	0	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50.00%	58,800	705,600	6,017,356,800	0	0	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50.00%	60,770	729,240	5,362,101,720	0	0	0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50.00%	62,740	752,880	5,331,896,160	0	0	0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50.00%	64,710	776,520	4,699,499,040	0	0	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50.00%	66,685	800,220	4,438,820,340	0	0	0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50.00%	69,310	831,720	6,520,684,800	0	0	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50.00%	72,595	871,140	5,597,074,500	0	0	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50.00%	76,210	914,520	5,524,615,320	0	0	0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50.00%	80,150	961,800	4,543,543,200	0	0	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50.00%	84,095	1,009,140	3,674,278,740	0	0	0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0.00%	70,428	845,136	2,417,088,960	-17,607	-211,284	-604,272,240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0.00%	73,844	886,128	2,363,303,376	-18,461	-221,532	-590,825,844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0.00%	77,524	930,288	1,896,857,232	-19,381	-232,572	-474,214,308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0.00%	81,204	974,448	1,661,433,840	-20,301	-243,612	-415,358,460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0.00%	85,144	1,021,728	1,634,764,800	-21,286	-255,432	-408,691,20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0.00%	89,352	1,072,224	1,364,941,152	-22,338	-268,056	-341,235,288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0.00%	93,816	1,125,792	1,159,565,760	-23,454	-281,448	-289,891,440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0.00%	98,548	1,182,576	976,807,776	-24,637	-295,644	-244,201,944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0.00%	103,280	1,239,360	830,371,200	-25,820	-309,840	-207,592,80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0.00%	108,272	1,299,264	741,879,744	-27,068	-324,816	-185,469,936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0.00%	113,528	1,362,336	604,877,184	-28,382	-340,584	-151,219,296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0.00%	119,048	1,428,576	574,287,552	-29,762	-357,144	-143,571,888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0.00%	124,828	1,497,936	414,928,272	-31,207	-374,484	-103,732,068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0.00%	130,872	1,570,464	345,502,080	-32,718	-392,616	-86,375,520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0.00%	137,444	1,649,328	257,295,168	-34,361	-412,332	-64,323,792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0.00%	144,276	1,731,312	219,876,624	-36,069	-432,828	-54,969,156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0.00%	113,529	1,362,348	122,611,320	-75,686	-908,232	-81,740,880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0.00%	119,046	1,428,552	75,713,256	-79,364	-952,368	-50,475,504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0.00%	124,764	1,497,168	62,881,056	-83,176	-998,112	-41,920,704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0.00%	130,872	1,570,464	58,107,168	-87,248	-1,046,976	-38,738,112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0.00%	137,376	1,648,512	28,024,704	-91,584	-1,099,008	-18,683,136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0.00%	144,078	1,728,936	12,102,552	-96,052	-1,152,624	-8,068,368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0.00%	150,582	1,806,984	10,841,904	-100,388	-1,204,656	-7,227,936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0.00%	158,466	1,901,592	7,606,368	-105,644	-1,267,728	-5,070,912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0.00%	166,350	1,996,200	9,981,000	-110,900	-1,330,800	-6,654,0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0.00%	174,432	2,093,184	12,559,104	-116,288	-1,395,456	-8,372,736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0.00%	182,907	2,194,884	13,169,304	-121,938	-1,463,256	-8,779,536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0.00%	191,778	2,301,336	25,314,696	-127,852	-1,534,224	-16,876,464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0.00%	201,237	2,414,844	7,244,532	-134,158	-1,609,896	-4,829,688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0.00%	211,092	2,533,104	2,533,104	-140,728	-1,688,736	-1,688,736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0.00%	221,343	2,656,116	5,312,232	-147,562	-1,770,744	-3,541,488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0.00%	232,182	2,786,184	16,717,104	-154,788	-1,857,456	-11,144,736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0.00%	243,615	2,923,380	0	-162,410	-1,948,920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0.00%	255,636	3,067,632	6,135,264	-170,424	-2,045,088	-4,090,17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00%	268,056	3,216,672	6,433,344	-178,704	-2,144,448	-4,288,896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00%	281,064	3,372,768	0	-187,376	-2,248,512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30.00%	294,861	3,538,332	3,538,332	-196,574	-2,358,888	-2,358,888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30.00%	309,249	3,710,988	3,710,988	-206,166	-2,473,992	-2,473,992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30.00%	324,426	3,893,112	0	-216,284	-2,595,408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30.00%	340,389	4,084,668	0	-226,926	-2,723,112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30.00%	356,946	4,283,352	17,133,408	-237,964	-2,855,568	-11,422,272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30.00%	374,490	4,493,880	0	-249,660	-2,995,920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30.00%	392,820	4,713,840	9,427,680	-261,880	-3,142,560	-6,285,120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30.00%	411,939	4,943,268	19,773,072	-274,626	-3,295,512	-13,182,048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30.00%	433,620	5,203,440	0	-289,080	-3,468,960	0
		535,826			224,935,042,860				220,211,183,352			-4,723,859,508

바. 제Ⅳ-2안 : 등급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제1구간 : (1등급~34등급) 70%경감 제2구간 : (35등급~49등급) 60%경감 제3구간 : (50등급~55등급) 50%경감
제4구간 : (56등급~71등급) 40%경감 제5구간 : (72등급~100등급)30%경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70.00%	3,213	38,556	346,926,888	918	11,016	99,121,968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70.00%	4,137	49,644	170,527,140	1,182	14,184	48,722,040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70.00%	5,054	60,648	567,422,688	1,444	17,328	162,120,768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70.00%	5,978	71,736	436,370,088	1,708	20,496	124,677,168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70.00%	6,895	82,740	146,946,240	1,970	23,640	41,984,640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70.00%	7,812	93,744	333,728,640	2,232	26,784	95,351,040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70.00%	8,736	104,832	707,720,832	2,496	29,952	202,205,952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70.00%	9,653	115,836	415,851,240	2,758	33,096	118,814,64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70.00%	10,577	126,924	594,765,864	3,022	36,264	169,933,104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70.00%	11,494	137,928	660,813,048	3,284	39,408	188,803,728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70.00%	12,691	152,292	1,172,039,232	3,626	43,512	334,868,352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70.00%	14,070	168,840	1,712,712,960	4,020	48,240	489,346,56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70.00%	15,449	185,388	1,326,080,364	4,414	52,968	378,880,104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70.00%	16,828	201,936	2,020,975,488	4,808	57,696	577,421,568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70.00%	18,207	218,484	1,368,583,776	5,202	62,424	391,023,936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70.00%	19,586	235,032	2,544,456,432	5,596	67,152	726,987,552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70.00%	20,965	251,580	2,129,373,120	5,990	71,880	608,392,320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70.00%	22,351	268,212	3,137,543,976	6,386	76,632	896,441,136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70.00%	23,730	284,760	3,689,920,080	6,780	81,360	1,054,262,88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70.00%	25,109	301,308	2,662,357,488	7,174	86,088	760,673,568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70.00%	26,670	320,040	4,465,838,160	7,620	91,440	1,275,953,760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70.00%	28,511	342,132	3,681,682,452	8,146	97,752	1,051,909,272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70.00%	30,352	364,224	5,359,191,936	8,672	104,064	1,531,197,696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70.00%	32,193	386,316	4,940,981,640	9,198	110,376	1,411,709,040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70.00%	34,027	408,324	4,828,839,624	9,722	116,664	1,379,668,464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70.00%	35,868	430,416	6,021,950,256	10,248	122,976	1,720,557,216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70.00%	37,709	452,508	4,984,828,128	10,774	129,288	1,424,236,608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70.00%	39,550	474,600	6,349,198,800	11,300	135,600	1,814,056,80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70.00%	41,391	496,692	6,079,510,080	11,826	141,912	1,737,002,88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70.00%	43,225	518,700	5,836,412,400	12,350	148,200	1,667,546,40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70.00%	45,346	544,152	8,127,454,272	12,956	155,472	2,322,129,792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70.00%	47,642	571,704	8,617,294,392	13,612	163,344	2,462,084,112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70.00%	49,945	599,340	8,747,966,640	14,270	171,240	2,499,419,040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70.00%	52,241	626,892	8,657,378,520	14,926	179,112	2,473,536,720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60.00%	46,752	561,024	7,388,686,080	7,792	93,504	1,231,447,68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60.00%	48,720	584,640	7,582,780,800	8,120	97,440	1,263,796,80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60.00%	50,694	608,328	7,601,666,688	8,449	101,388	1,266,944,448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60.00%	52,662	631,944	7,276,835,160	8,777	105,324	1,212,805,86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60.00%	54,636	655,632	7,050,666,528	9,106	109,272	1,175,111,088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60.00%	56,604	679,248	7,060,782,960	9,434	113,208	1,176,797,16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60.00%	58,734	704,808	8,288,542,080	9,789	117,468	1,381,423,68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60.00%	61,098	733,176	8,570,827,440	10,183	122,196	1,428,471,24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60.00%	63,462	761,544	8,003,065,896	10,577	126,924	1,333,844,316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60.00%	65,826	789,912	7,948,884,456	10,971	131,652	1,324,814,076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60.00%	68,196	818,352	7,104,932,064	11,366	136,392	1,184,155,344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60.00%	70,560	846,720	7,220,828,160	11,760	141,120	1,203,471,36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60.00%	72,924	875,088	6,434,522,064	12,154	145,848	1,072,420,344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60.00%	75,288	903,456	6,398,275,392	12,548	150,576	1,066,379,232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60.00%	77,652	931,824	5,639,398,848	12,942	155,304	939,899,808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50.00%	66,685	800,220	4,438,820,340	0	0	0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50.00%	69,310	831,720	6,520,684,800	0	0	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50.00%	72,595	871,140	5,597,074,500	0	0	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50.00%	76,210	914,520	5,524,615,320	0	0	0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50.00%	80,150	961,800	4,543,543,200	0	0	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50.00%	84,095	1,009,140	3,674,278,740	0	0	0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0.00%	70,428	845,136	2,417,088,960	-17,607	-211,284	-604,272,240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0.00%	73,844	886,128	2,363,303,376	-18,461	-221,532	-590,825,844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0.00%	77,524	930,288	1,896,857,232	-19,381	-232,572	-474,214,308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0.00%	81,204	974,448	1,661,433,840	-20,301	-243,612	-415,358,460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0.00%	85,144	1,021,728	1,634,764,800	-21,286	-255,432	-408,691,20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0.00%	89,352	1,072,224	1,364,941,152	-22,338	-268,056	-341,235,288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0.00%	93,816	1,125,792	1,159,565,760	-23,454	-281,448	-289,891,440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0.00%	98,548	1,182,576	976,807,776	-24,637	-295,644	-244,201,944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0.00%	103,280	1,239,360	830,371,200	-25,820	-309,840	-207,592,80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0.00%	108,272	1,299,264	741,879,744	-27,068	-324,816	-185,469,936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0.00%	113,528	1,362,336	604,877,184	-28,382	-340,584	-151,219,296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0.00%	119,048	1,428,576	574,287,552	-29,762	-357,144	-143,571,888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0.00%	124,828	1,497,936	414,928,272	-31,207	-374,484	-103,732,068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0.00%	130,872	1,570,464	345,502,080	-32,718	-392,616	-86,375,520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0.00%	137,444	1,649,328	257,295,168	-34,361	-412,332	-64,323,792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0.00%	144,276	1,731,312	219,876,624	-36,069	-432,828	-54,969,156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0.00%	113,529	1,362,348	122,611,320	-75,686	-908,232	-81,740,880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0.00%	119,046	1,428,552	75,713,256	-79,364	-952,368	-50,475,504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0.00%	124,764	1,497,168	62,881,056	-83,176	-998,112	-41,920,704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0.00%	130,872	1,570,464	58,107,168	-87,248	-1,046,976	-38,738,112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0.00%	137,376	1,648,512	28,024,704	-91,584	-1,099,008	-18,683,136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0.00%	144,078	1,728,936	12,102,552	-96,052	-1,152,624	-8,068,368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0.00%	150,582	1,806,984	10,841,904	-100,388	-1,204,656	-7,227,936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0.00%	158,466	1,901,592	7,606,368	-105,644	-1,267,728	-5,070,912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0.00%	166,350	1,996,200	9,981,000	-110,900	-1,330,800	-6,654,0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0.00%	174,432	2,093,184	12,559,104	-116,288	-1,395,456	-8,372,736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0.00%	182,907	2,194,884	13,169,304	-121,938	-1,463,256	-8,779,536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0.00%	191,778	2,301,336	25,314,696	-127,852	-1,534,224	-16,876,464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0.00%	201,237	2,414,844	7,244,532	-134,158	-1,609,896	-4,829,688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0.00%	211,092	2,533,104	2,533,104	-140,728	-1,688,736	-1,688,736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0.00%	221,343	2,656,116	5,312,232	-147,562	-1,770,744	-3,541,488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0.00%	232,182	2,786,184	16,717,104	-154,788	-1,857,456	-11,144,736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0.00%	243,615	2,923,380	0	-162,410	-1,948,920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0.00%	255,636	3,067,632	6,135,264	-170,424	-2,045,088	-4,090,17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00%	268,056	3,216,672	6,433,344	-178,704	-2,144,448	-4,288,896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00%	281,064	3,372,768	0	-187,376	-2,248,512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30.00%	294,861	3,538,332	3,538,332	-196,574	-2,358,888	-2,358,888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30.00%	309,249	3,710,988	3,710,988	-206,166	-2,473,992	-2,473,992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30.00%	324,426	3,893,112	0	-216,284	-2,595,408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30.00%	340,389	4,084,668	0	-226,926	-2,723,112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30.00%	356,946	4,283,352	17,133,408	-237,964	-2,855,568	-11,422,272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30.00%	374,490	4,493,880	0	-249,660	-2,995,920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30.00%	392,820	4,713,840	9,427,680	-261,880	-3,142,560	-6,285,120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30.00%	411,939	4,943,268	19,773,072	-274,626	-3,295,512	-13,182,048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30.00%	433,620	5,203,440	0	-289,080	-3,468,960	0
		535,826			224,935,042,860				270,714,006,612			45,778,963,752

사. 제Ⅳ-3안 : 등급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제1구간 : (1등급~25등급) 70%경감 제2구간 : (26등급~34등급) 60%경감 제3구간 : (35등급~55등급) 50%경감
제4구간 : (56등급~71등급) 40%경감 제5구간 : (72등급~100등급)30%경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3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 (월)	세대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70.00%	3,213	38,556	346,926,888	918	11,016	99,121,968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70.00%	4,137	49,644	170,527,140	1,182	14,184	48,722,040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70.00%	5,054	60,648	567,422,688	1,444	17,328	162,120,768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70.00%	5,978	71,736	436,370,088	1,708	20,496	124,677,168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70.00%	6,895	82,740	146,946,240	1,970	23,640	41,984,640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70.00%	7,812	93,744	333,728,640	2,232	26,784	95,351,040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70.00%	8,736	104,832	707,720,832	2,496	29,952	202,205,952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70.00%	9,653	115,836	415,851,240	2,758	33,096	118,814,64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70.00%	10,577	126,924	594,765,864	3,022	36,264	169,933,104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70.00%	11,494	137,928	660,813,048	3,284	39,408	188,803,728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70.00%	12,691	152,292	1,172,039,232	3,626	43,512	334,868,352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70.00%	14,070	168,840	1,712,712,960	4,020	48,240	489,346,56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70.00%	15,449	185,388	1,326,080,364	4,414	52,968	378,880,104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70.00%	16,828	201,936	2,020,975,488	4,808	57,696	577,421,568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70.00%	18,207	218,484	1,368,583,776	5,202	62,424	391,023,936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70.00%	19,586	235,032	2,544,456,432	5,596	67,152	726,987,552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70.00%	20,965	251,580	2,129,373,120	5,990	71,880	608,392,320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70.00%	22,351	268,212	3,137,543,976	6,386	76,632	896,441,136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70.00%	23,730	284,760	3,689,920,080	6,780	81,360	1,054,262,88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70.00%	25,109	301,308	2,662,357,488	7,174	86,088	760,673,568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70.00%	26,670	320,040	4,465,838,160	7,620	91,440	1,275,953,760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70.00%	28,511	342,132	3,681,682,452	8,146	97,752	1,051,909,272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70.00%	30,352	364,224	5,359,191,936	8,672	104,064	1,531,197,696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70.00%	32,193	386,316	4,940,981,640	9,198	110,376	1,411,709,040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70.00%	34,027	408,324	4,828,839,624	9,722	116,664	1,379,668,464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60.00%	30,744	368,928	5,161,671,648	5,124	61,488	860,278,608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60.00%	32,322	387,864	4,272,709,824	5,387	64,644	712,118,304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60.00%	33,900	406,800	5,442,170,400	5,650	67,800	907,028,40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60.00%	35,478	425,736	5,211,008,640	5,913	70,956	868,501,44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60.00%	37,050	444,600	5,002,639,200	6,175	74,100	833,773,20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60.00%	38,868	466,416	6,966,389,376	6,478	77,736	1,161,064,896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60.00%	40,836	490,032	7,386,252,336	6,806	81,672	1,231,042,056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60.00%	42,810	513,720	7,498,257,120	7,135	85,620	1,249,709,520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60.00%	44,778	537,336	7,420,610,160	7,463	89,556	1,236,768,360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50.00%	38,960	467,520	6,157,238,400	0	0	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50.00%	40,600	487,200	6,318,984,000	0	0	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50.00%	42,245	506,940	6,334,722,240	0	0	0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50.00%	43,885	526,620	6,064,029,300	0	0	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50.00%	45,530	546,360	5,875,555,440	0	0	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50.00%	47,170	566,040	5,883,985,800	0	0	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50.00%	48,945	587,340	6,907,118,400	0	0	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50.00%	50,915	610,980	7,142,356,200	0	0	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50.00%	52,885	634,620	6,669,221,580	0	0	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50.00%	54,855	658,260	6,624,070,380	0	0	0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50.00%	56,830	681,960	5,920,776,720	0	0	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50.00%	58,800	705,600	6,017,356,800	0	0	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50.00%	60,770	729,240	5,362,101,720	0	0	0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50.00%	62,740	752,880	5,331,896,160	0	0	0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50.00%	64,710	776,520	4,699,499,040	0	0	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50.00%	66,685	800,220	4,438,820,340	0	0	0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Ⅳ-3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50.00%	69,310	831,720	6,520,684,800	0	0	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50.00%	72,595	871,140	5,597,074,500	0	0	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50.00%	76,210	914,520	5,524,615,320	0	0	0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50.00%	80,150	961,800	4,543,543,200	0	0	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50.00%	84,095	1,009,140	3,674,278,740	0	0	0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0.00%	70,428	845,136	2,417,088,960	-17,607	-211,284	-604,272,240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0.00%	73,844	886,128	2,363,303,376	-18,461	-221,532	-590,825,844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0.00%	77,524	930,288	1,896,857,232	-19,381	-232,572	-474,214,308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0.00%	81,204	974,448	1,661,433,840	-20,301	-243,612	-415,358,460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0.00%	85,144	1,021,728	1,634,764,800	-21,286	-255,432	-408,691,20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0.00%	89,352	1,072,224	1,364,941,152	-22,338	-268,056	-341,235,288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0.00%	93,816	1,125,792	1,159,565,760	-23,454	-281,448	-289,891,440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0.00%	98,548	1,182,576	976,807,776	-24,637	-295,644	-244,201,944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0.00%	103,280	1,239,360	830,371,200	-25,820	-309,840	-207,592,80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0.00%	108,272	1,299,264	741,879,744	-27,068	-324,816	-185,469,936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0.00%	113,528	1,362,336	604,877,184	-28,382	-340,584	-151,219,296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0.00%	119,048	1,428,576	574,287,552	-29,762	-357,144	-143,571,888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0.00%	124,828	1,497,936	414,928,272	-31,207	-374,484	-103,732,068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0.00%	130,872	1,570,464	345,502,080	-32,718	-392,616	-86,375,520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0.00%	137,444	1,649,328	257,295,168	-34,361	-412,332	-64,323,792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0.00%	144,276	1,731,312	219,876,624	-36,069	-432,828	-54,969,156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30.00%	113,529	1,362,348	122,611,320	-75,686	-908,232	-81,740,880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30.00%	119,046	1,428,552	75,713,256	-79,364	-952,368	-50,475,504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0.00%	124,764	1,497,168	62,881,056	-83,176	-998,112	-41,920,704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0.00%	130,872	1,570,464	58,107,168	-87,248	-1,046,976	-38,738,112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0.00%	137,376	1,648,512	28,024,704	-91,584	-1,099,008	-18,683,136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0.00%	144,078	1,728,936	12,102,552	-96,052	-1,152,624	-8,068,368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0.00%	150,582	1,806,984	10,841,904	-100,388	-1,204,656	-7,227,936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0.00%	158,466	1,901,592	7,606,368	-105,644	-1,267,728	-5,070,912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0.00%	166,350	1,996,200	9,981,000	-110,900	-1,330,800	-6,654,0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0.00%	174,432	2,093,184	12,559,104	-116,288	-1,395,456	-8,372,736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0.00%	182,907	2,194,884	13,169,304	-121,938	-1,463,256	-8,779,536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0.00%	191,778	2,301,336	25,314,696	-127,852	-1,534,224	-16,876,464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0.00%	201,237	2,414,844	7,244,532	-134,158	-1,609,896	-4,829,688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0.00%	211,092	2,533,104	2,533,104	-140,728	-1,688,736	-1,688,736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0.00%	221,343	2,656,116	5,312,232	-147,562	-1,770,744	-3,541,488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0.00%	232,182	2,786,184	16,717,104	-154,788	-1,857,456	-11,144,736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0.00%	243,615	2,923,380	0	-162,410	-1,948,920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0.00%	255,636	3,067,632	6,135,264	-170,424	-2,045,088	-4,090,17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00%	268,056	3,216,672	6,433,344	-178,704	-2,144,448	-4,288,896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00%	281,064	3,372,768	0	-187,376	-2,248,512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30.00%	294,861	3,538,332	3,538,332	-196,574	-2,358,888	-2,358,888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30.00%	309,249	3,710,988	3,710,988	-206,166	-2,473,992	-2,473,992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30.00%	324,426	3,893,112	0	-216,284	-2,595,408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30.00%	340,389	4,084,668	0	-226,926	-2,723,112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30.00%	356,946	4,283,352	17,133,408	-237,964	-2,855,568	-11,422,272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30.00%	374,490	4,493,880	0	-249,660	-2,995,920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30.00%	392,820	4,713,840	9,427,680	-261,880	-3,142,560	-6,285,120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30.00%	411,939	4,943,268	19,773,072	-274,626	-3,295,512	-13,182,048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30.00%	433,620	5,203,440	0	-289,080	-3,468,960	0
		535,826			224,935,042,860				243,391,939,392			18,456,896,532

아. 제Ⅴ-1안 : 등급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

* 55등급 이하는 정율 지원하고, 56등급이상은 정액으로 경감하는 경우
  제1구간 : (1등급~55등급) 50%경감 제2구간 : (56등급이상) 농어촌22%+47,000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Ⅴ-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50.00%	2,295	27,540	247,804,920	0	0	0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50.00%	2,955	35,460	121,805,100	0	0	0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50.00%	3,610	43,320	405,301,920	0	0	0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50.00%	4,270	51,240	311,692,920	0	0	0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50.00%	4,925	59,100	104,961,600	0	0	0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50.00%	5,580	66,960	238,377,600	0	0	0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50.00%	6,240	74,880	505,514,880	0	0	0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50.00%	6,895	82,740	297,036,600	0	0	0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50.00%	7,555	90,660	424,832,760	0	0	0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50.00%	8,210	98,520	472,009,320	0	0	0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50.00%	9,065	108,780	837,170,880	0	0	0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50.00%	10,050	120,600	1,223,366,400	0	0	0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50.00%	11,035	132,420	947,200,260	0	0	0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50.00%	12,020	144,240	1,443,553,920	0	0	0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50.00%	13,005	156,060	977,559,840	0	0	0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50.00%	13,990	167,880	1,817,468,880	0	0	0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50.00%	14,975	179,700	1,520,980,800	0	0	0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50.00%	15,965	191,580	2,241,102,840	0	0	0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50.00%	16,950	203,400	2,635,657,200	0	0	0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50.00%	17,935	215,220	1,901,683,920	0	0	0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50.00%	19,050	228,600	3,189,884,400	0	0	0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50.00%	20,365	244,380	2,629,773,180	0	0	0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50.00%	21,680	260,160	3,827,994,240	0	0	0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50.00%	22,995	275,940	3,529,272,600	0	0	0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50.00%	24,305	291,660	3,449,171,160	0	0	0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50.00%	25,620	307,440	4,301,393,040	0	0	0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50.00%	26,935	323,220	3,560,591,520	0	0	0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50.00%	28,250	339,000	4,535,142,000	0	0	0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50.00%	29,565	354,780	4,342,507,200	0	0	0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50.00%	30,875	370,500	4,168,866,000	0	0	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50.00%	32,390	388,680	5,805,324,480	0	0	0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50.00%	34,030	408,360	6,155,210,280	0	0	0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50.00%	35,675	428,100	6,248,547,600	0	0	0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50.00%	37,315	447,780	6,183,841,800	0	0	0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50.00%	38,960	467,520	6,157,238,400	0	0	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50.00%	40,600	487,200	6,318,984,000	0	0	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50.00%	42,245	506,940	6,334,722,240	0	0	0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50.00%	43,885	526,620	6,064,029,300	0	0	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50.00%	45,530	546,360	5,875,555,440	0	0	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50.00%	47,170	566,040	5,883,985,800	0	0	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50.00%	48,945	587,340	6,907,118,400	0	0	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50.00%	50,915	610,980	7,142,356,200	0	0	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50.00%	52,885	634,620	6,669,221,580	0	0	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50.00%	54,855	658,260	6,624,070,380	0	0	0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50.00%	56,830	681,960	5,920,776,720	0	0	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50.00%	58,800	705,600	6,017,356,800	0	0	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50.00%	60,770	729,240	5,362,101,720	0	0	0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50.00%	62,740	752,880	5,331,896,160	0	0	0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50.00%	64,710	776,520	4,699,499,040	0	0	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50.00%	66,685	800,220	4,438,820,340	0	0	0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Ⅴ-1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50.00%	69,310	831,720	6,520,684,800	0	0	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50.00%	72,595	871,140	5,597,074,500	0	0	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50.00%	76,210	914,520	5,524,615,320	0	0	0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50.00%	80,150	961,800	4,543,543,200	0	0	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50.00%	84,095	1,009,140	3,674,278,740	0	0	0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9.450%	85,825	1,029,905	2,945,527,728	-2,210	-26,515	-75,833,472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8.900%	87,704	1,052,450	2,806,885,217	-4,601	-55,210	-147,244,003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8.350%	89,728	1,076,738	2,195,469,598	-7,177	-86,122	-175,601,942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7.800%	91,752	1,101,026	1,877,250,012	-9,753	-117,034	-199,542,288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7.250%	93,919	1,127,030	1,803,248,640	-12,511	-150,130	-240,207,36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6.700%	96,234	1,154,803	1,470,064,474	-15,456	-185,477	-236,111,966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6.150%	98,689	1,184,266	1,219,793,568	-18,581	-222,974	-229,663,632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5.600%	101,291	1,215,497	1,004,000,357	-21,894	-262,723	-217,009,363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5.050%	103,894	1,246,728	835,307,760	-25,206	-302,472	-202,656,24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4.500%	106,640	1,279,675	730,694,539	-28,700	-344,405	-196,655,141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3.950%	109,530	1,314,365	583,577,971	-32,380	-388,555	-172,518,509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3.400%	112,566	1,350,797	543,020,314	-36,244	-434,923	-174,839,126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2.850%	115,745	1,388,945	384,737,710	-40,290	-483,475	-133,922,630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2.300%	119,070	1,428,835	314,343,744	-44,520	-534,245	-117,533,856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1.750%	122,684	1,472,210	229,664,822	-49,121	-589,450	-91,954,138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1.200%	126,442	1,517,302	192,697,303	-53,903	-646,838	-82,148,477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40.650%	130,345	1,564,135	140,772,168	-58,870	-706,445	-63,580,032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40.100%	134,390	1,612,685	85,472,294	-64,020	-768,235	-40,716,466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9.550%	138,584	1,663,003	69,846,134	-69,356	-832,277	-34,955,626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9.000%	143,063	1,716,754	63,519,883	-75,057	-900,686	-33,325,397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8.450%	147,832	1,773,989	30,157,810	-81,128	-973,531	-16,550,030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7.900%	152,747	1,832,966	12,830,765	-87,383	-1,048,594	-7,340,155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7.350%	157,517	1,890,202	11,341,210	-93,453	-1,121,438	-6,728,630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6.800%	163,298	1,959,581	7,838,323	-100,812	-1,209,739	-4,838,957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6.250%	169,080	2,028,960	10,144,800	-108,170	-1,298,040	-6,490,2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5.700%	175,007	2,100,082	12,600,490	-115,713	-1,388,558	-8,331,350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5.150%	181,222	2,174,662	13,047,970	-123,623	-1,483,478	-8,900,870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4.600%	187,727	2,252,726	24,779,990	-131,903	-1,582,834	-17,411,170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4.050%	194,664	2,335,966	7,007,897	-140,731	-1,688,774	-5,066,323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3.500%	201,891	2,422,690	2,422,690	-149,929	-1,799,150	-1,799,150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2.950%	209,408	2,512,898	5,025,797	-159,497	-1,913,962	-3,827,923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2.400%	217,357	2,608,282	15,649,690	-169,613	-2,035,358	-12,212,150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1.850%	225,741	2,708,892	0	-180,284	-2,163,408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1.300%	234,556	2,814,677	5,629,354	-191,504	-2,298,043	-4,596,08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750%	243,664	2,923,973	5,847,946	-203,096	-2,437,147	-4,874,294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200%	253,204	3,038,443	0	-215,236	-2,582,837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29.650%	263,321	3,159,857	3,159,857	-228,114	-2,737,363	-2,737,363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29.100%	273,873	3,286,471	3,286,471	-241,542	-2,898,509	-2,898,509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28.550%	285,002	3,420,029	0	-255,708	-3,068,491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28.000%	296,709	3,560,503	0	-270,606	-3,247,277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27.450%	308,850	3,706,205	14,824,819	-286,060	-3,432,715	-13,730,861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26.900%	321,716	3,860,592	0	-302,434	-3,629,208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26.350%	335,158	4,021,896	8,043,792	-319,542	-3,834,504	-7,669,008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25.800%	349,179	4,190,143	16,760,573	-337,386	-4,048,637	-16,194,547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25.250%	365,078	4,380,936	0	-357,622	-4,291,464	0
		535,826			224,935,042,860				221,916,825,617			-3,018,217,243

자. 제Ⅴ-2안 : 등급구간별 차등 지원 방안

제1구간 : (1등급~34등급)60%에서 50.30%감액경감

제2구간 : (35등급~55등급)정율50%경감

제3구간 : (56등급~100등급)정액 농어촌22%+47,000원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Ⅴ-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당 (연)	총액(연간)
1	4,590	8,998	2,295	27,540	247,804,920	60.00%	2,754	33,048	297,365,904	459	5,508	49,560,984
2	5,910	3,435	2,955	35,460	121,805,100	59.71%	3,529	42,343	145,449,906	574	6,883	23,644,806
3	7,220	9,356	3,610	43,320	405,301,920	59.41%	4,290	51,475	481,595,953	680	8,155	76,294,033
4	8,540	6,083	4,270	51,240	311,692,920	59.12%	5,049	60,584	368,533,241	779	9,344	56,840,321
5	9,850	1,776	4,925	59,100	104,961,600	58.82%	5,794	69,530	123,485,223	869	10,430	18,523,623
6	11,160	3,560	5,580	66,960	238,377,600	58.53%	6,532	78,383	279,044,819	952	11,423	40,667,219
7	12,480	6,751	6,240	74,880	505,514,880	58.24%	7,268	87,214	588,783,291	1,028	12,334	83,268,411
8	13,790	3,590	6,895	82,740	297,036,600	57.94%	7,990	95,882	344,217,894	1,095	13,142	47,181,294
9	15,110	4,686	7,555	90,660	424,832,760	57.65%	8,711	104,527	489,815,179	1,156	13,867	64,982,419
10	16,420	4,791	8,210	98,520	472,009,320	57.35%	9,418	113,010	541,432,451	1,208	14,490	69,423,131
11	18,130	7,696	9,065	108,780	837,170,880	57.06%	10,345	124,140	955,379,408	1,280	15,360	118,208,528
12	20,100	10,144	10,050	120,600	1,223,366,400	56.77%	11,410	136,920	1,388,912,341	1,360	16,320	165,545,941
13	22,070	7,153	11,035	132,420	947,200,260	56.47%	12,463	149,560	1,069,805,862	1,428	17,140	122,605,602
14	24,040	10,008	12,020	144,240	1,443,553,920	56.18%	13,505	162,062	1,621,919,442	1,485	17,822	178,365,522
15	26,010	6,264	13,005	156,060	977,559,840	55.88%	14,535	174,425	1,092,599,082	1,530	18,365	115,039,242
16	27,980	10,826	13,990	167,880	1,817,468,880	55.59%	15,554	186,649	2,020,661,901	1,564	18,769	203,193,021
17	29,950	8,464	14,975	179,700	1,520,980,800	55.30%	16,561	198,734	1,682,083,086	1,586	19,034	161,102,286
18	31,930	11,698	15,965	191,580	2,241,102,840	55.00%	17,562	210,746	2,465,302,768	1,597	19,166	224,199,928
19	33,900	12,958	16,950	203,400	2,635,657,200	54.71%	18,546	222,552	2,883,830,682	1,596	19,152	248,173,482
20	35,870	8,836	17,935	215,220	1,901,683,920	54.41%	19,518	234,220	2,069,564,576	1,583	19,000	167,880,656
21	38,100	13,954	19,050	228,600	3,189,884,400	54.12%	20,620	247,437	3,452,730,875	1,570	18,837	262,846,475
22	40,730	10,761	20,365	244,380	2,629,773,180	53.83%	21,923	263,080	2,831,003,424	1,558	18,700	201,230,244
23	43,360	14,714	21,680	260,160	3,827,994,240	53.53%	23,211	278,538	4,098,403,753	1,531	18,378	270,409,513
24	45,990	12,790	22,995	275,940	3,529,272,600	53.24%	24,484	293,810	3,757,828,294	1,489	17,870	228,555,694
25	48,610	11,826	24,305	291,660	3,449,171,160	52.94%	25,736	308,833	3,652,258,358	1,431	17,173	203,087,198
26	51,240	13,991	25,620	307,440	4,301,393,040	52.65%	26,978	323,734	4,529,366,871	1,358	16,294	227,973,831
27	53,870	11,016	26,935	323,220	3,560,591,520	52.36%	28,204	338,450	3,728,366,592	1,269	15,230	167,775,072
28	56,500	13,378	28,250	339,000	4,535,142,000	52.06%	29,415	352,980	4,722,171,256	1,165	13,980	187,029,256
29	59,130	12,240	29,565	354,780	4,342,507,200	51.77%	30,610	367,325	4,496,058,255	1,045	12,545	153,551,055
30	61,750	11,252	30,875	370,500	4,168,866,000	51.47%	31,785	381,422	4,291,764,170	910	10,922	122,898,170
31	64,780	14,936	32,390	388,680	5,805,324,480	51.18%	33,154	397,853	5,942,330,138	764	9,173	137,005,658
32	68,060	15,073	34,030	408,360	6,155,210,280	50.89%	34,633	415,596	6,264,280,606	603	7,236	109,070,326
33	71,350	14,596	35,675	428,100	6,248,547,600	50.59%	36,097	433,169	6,322,530,404	422	5,069	73,982,804
34	74,630	13,810	37,315	447,780	6,183,841,800	50.30%	37,537	450,449	6,220,697,497	222	2,669	36,855,697
35	77,920	13,170	38,960	467,520	6,157,238,400	50.00%	38,960	467,520	6,157,238,400	0	0	0
36	81,200	12,970	40,600	487,200	6,318,984,000	50.00%	40,600	487,200	6,318,984,000	0	0	0
37	84,490	12,496	42,245	506,940	6,334,722,240	50.00%	42,245	506,940	6,334,722,240	0	0	0
38	87,770	11,515	43,885	526,620	6,064,029,300	50.00%	43,885	526,620	6,064,029,300	0	0	0
39	91,060	10,754	45,530	546,360	5,875,555,440	50.00%	45,530	546,360	5,875,555,440	0	0	0
40	94,340	10,395	47,170	566,040	5,883,985,800	50.00%	47,170	566,040	5,883,985,800	0	0	0
41	97,890	11,760	48,945	587,340	6,907,118,400	50.00%	48,945	587,340	6,907,118,400	0	0	0
42	101,830	11,690	50,915	610,980	7,142,356,200	50.00%	50,915	610,980	7,142,356,200	0	0	0
43	105,770	10,509	52,885	634,620	6,669,221,580	50.00%	52,885	634,620	6,669,221,580	0	0	0
44	109,710	10,063	54,855	658,260	6,624,070,380	50.00%	54,855	658,260	6,624,070,380	0	0	0
45	113,660	8,682	56,830	681,960	5,920,776,720	50.00%	56,830	681,960	5,920,776,720	0	0	0
46	117,600	8,528	58,800	705,600	6,017,356,800	50.00%	58,800	705,600	6,017,356,800	0	0	0
47	121,540	7,353	60,770	729,240	5,362,101,720	50.00%	60,770	729,240	5,362,101,720	0	0	0
48	125,480	7,082	62,740	752,880	5,331,896,160	50.00%	62,740	752,880	5,331,896,160	0	0	0
49	129,420	6,052	64,710	776,520	4,699,499,040	50.00%	64,710	776,520	4,699,499,040	0	0	0
50	133,370	5,547	66,685	800,220	4,438,820,340	50.00%	66,685	800,220	4,438,820,340	0	0	0

등급	산정보험료	적용 세대	현행 보험료 경감액			제Ⅴ-2안 적용 시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 증감 내역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경감율 (정액)	세대당 (월)	세대당 (연간)	총소요액 (연간)	세대당 (월)	세대ed (연)	총액(연간)
51	138,620	7,840	69,310	831,720	6,520,684,800	50.00%	69,310	831,720	6,520,684,800	0	0	0
52	145,190	6,425	72,595	871,140	5,597,074,500	50.00%	72,595	871,140	5,597,074,500	0	0	0
53	152,420	6,041	76,210	914,520	5,524,615,320	50.00%	76,210	914,520	5,524,615,320	0	0	0
54	160,300	4,724	80,150	961,800	4,543,543,200	50.00%	80,150	961,800	4,543,543,200	0	0	0
55	168,190	3,641	84,095	1,009,140	3,674,278,740	50.00%	84,095	1,009,140	3,674,278,740	0	0	0
56	176,070	2,860	88,035	1,056,420	3,021,361,200	49.450%	85,825	1,029,905	2,945,527,728	-2,210	-26,515	-75,833,472
57	184,610	2,667	92,305	1,107,660	2,954,129,220	48.900%	87,704	1,052,450	2,806,885,217	-4,601	-55,210	-147,244,003
58	193,810	2,039	96,905	1,162,860	2,371,071,540	48.350%	89,728	1,076,738	2,195,469,598	-7,177	-86,122	-175,601,942
59	203,010	1,705	101,505	1,218,060	2,076,792,300	47.800%	91,752	1,101,026	1,877,250,012	-9,753	-117,034	-199,542,288
60	212,860	1,600	106,430	1,277,160	2,043,456,000	47.250%	93,919	1,127,030	1,803,248,640	-12,511	-150,130	-240,207,360
61	223,380	1,273	111,690	1,340,280	1,706,176,440	46.700%	96,234	1,154,803	1,470,064,474	-15,456	-185,477	-236,111,966
62	234,540	1,030	117,270	1,407,240	1,449,457,200	46.150%	98,689	1,184,266	1,219,793,568	-18,581	-222,974	-229,663,632
63	246,370	826	123,185	1,478,220	1,221,009,720	45.600%	101,291	1,215,497	1,004,000,357	-21,894	-262,723	-217,009,363
64	258,200	670	129,100	1,549,200	1,037,964,000	45.050%	103,894	1,246,728	835,307,760	-25,206	-302,472	-202,656,240
65	270,680	571	135,340	1,624,080	927,349,680	44.500%	106,640	1,279,675	730,694,539	-28,700	-344,405	-196,655,141
66	283,820	444	141,910	1,702,920	756,096,480	43.950%	109,530	1,314,365	583,577,971	-32,380	-388,555	-172,518,509
67	297,620	402	148,810	1,785,720	717,859,440	43.400%	112,566	1,350,797	543,020,314	-36,244	-434,923	-174,839,126
68	312,070	277	156,035	1,872,420	518,660,340	42.850%	115,745	1,388,945	384,737,710	-40,290	-483,475	-133,922,630
69	327,180	220	163,590	1,963,080	431,877,600	42.300%	119,070	1,428,835	314,343,744	-44,520	-534,245	-117,533,856
70	343,610	156	171,805	2,061,660	321,618,960	41.750%	122,684	1,472,210	229,664,822	-49,121	-589,450	-91,954,138
71	360,690	127	180,345	2,164,140	274,845,780	41.200%	126,442	1,517,302	192,697,303	-53,903	-646,838	-82,148,477
72	378,430	90	189,215	2,270,580	204,352,200	40.650%	130,345	1,564,135	140,772,168	-58,870	-706,445	-63,580,032
73	396,820	53	198,410	2,380,920	126,188,760	40.100%	134,390	1,612,685	85,472,294	-64,020	-768,235	-40,716,466
74	415,880	42	207,940	2,495,280	104,801,760	39.550%	138,584	1,663,003	69,846,134	-69,356	-832,277	-34,955,626
75	436,240	37	218,120	2,617,440	96,845,280	39.000%	143,063	1,716,754	63,519,883	-75,057	-900,686	-33,325,397
76	457,920	17	228,960	2,747,520	46,707,840	38.450%	147,832	1,773,989	30,157,810	-81,128	-973,531	-16,550,030
77	480,260	7	240,130	2,881,560	20,170,920	37.900%	152,747	1,832,966	12,830,765	-87,383	-1,048,594	-7,340,155
78	501,940	6	250,970	3,011,640	18,069,840	37.350%	157,517	1,890,202	11,341,210	-93,453	-1,121,438	-6,728,630
79	528,220	4	264,110	3,169,320	12,677,280	36.800%	163,298	1,959,581	7,838,323	-100,812	-1,209,739	-4,838,957
80	554,500	5	277,250	3,327,000	16,635,000	36.250%	169,080	2,028,960	10,144,800	-108,170	-1,298,040	-6,490,200
81	581,440	6	290,720	3,488,640	20,931,840	35.700%	175,007	2,100,082	12,600,490	-115,713	-1,388,558	-8,331,350
82	609,690	6	304,845	3,658,140	21,948,840	35.150%	181,222	2,174,662	13,047,970	-123,623	-1,483,478	-8,900,870
83	639,260	11	319,630	3,835,560	42,191,160	34.600%	187,727	2,252,726	24,779,990	-131,903	-1,582,834	-17,411,170
84	670,790	3	335,395	4,024,740	12,074,220	34.050%	194,664	2,335,966	7,007,897	-140,731	-1,688,774	-5,066,323
85	703,640	1	351,820	4,221,840	4,221,840	33.500%	201,891	2,422,690	2,422,690	-149,929	-1,799,150	-1,799,150
86	737,810	2	368,905	4,426,860	8,853,720	32.950%	209,408	2,512,898	5,025,797	-159,497	-1,913,962	-3,827,923
87	773,940	6	386,970	4,643,640	27,861,840	32.400%	217,357	2,608,282	15,649,690	-169,613	-2,035,358	-12,212,150
88	812,050	0	406,025	4,872,300	0	31.850%	225,741	2,708,892	0	-180,284	-2,163,408	0
89	852,120	2	426,060	5,112,720	10,225,440	31.300%	234,556	2,814,677	5,629,354	-191,504	-2,298,043	-4,596,086
90	893,520	2	446,760	5,361,120	10,722,240	30.750%	243,664	2,923,973	5,847,946	-203,096	-2,437,147	-4,874,294
91	936,880	0	468,440	5,621,280	0	30.200%	253,204	3,038,443	0	-215,236	-2,582,837	0
92	982,870	1	491,435	5,897,220	5,897,220	29.650%	263,321	3,159,857	3,159,857	-228,114	-2,737,363	-2,737,363
93	1,030,830	1	515,415	6,184,980	6,184,980	29.100%	273,873	3,286,471	3,286,471	-241,542	-2,898,509	-2,898,509
94	1,081,420	0	540,710	6,488,520	0	28.550%	285,002	3,420,029	0	-255,708	-3,068,491	0
95	1,134,630	0	567,315	6,807,780	0	28.000%	296,709	3,560,503	0	-270,606	-3,247,277	0
96	1,189,820	4	594,910	7,138,920	28,555,680	27.450%	308,850	3,706,205	14,824,819	-286,060	-3,432,715	-13,730,861
97	1,248,300	0	624,150	7,489,800	0	26.900%	321,716	3,860,592	0	-302,434	-3,629,208	0
98	1,309,400	2	654,700	7,856,400	15,712,800	26.350%	335,158	4,021,896	8,043,792	-319,542	-3,834,504	-7,669,008
99	1,373,130	4	686,565	8,238,780	32,955,120	25.800%	349,179	4,190,143	16,760,573	-337,386	-4,048,637	-16,194,547
100	1,445,400	0	722,700	8,672,400	0	25.250%	365,078	4,380,936	0	-357,622	-4,291,464	0
		535,826			224,935,042,860				226,533,797,058			1,598,754,198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발 행	2006. 9
발행인	김 현 영
발행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전 화 031 - 400 - 1754 FAX 031 - 409 - 6055

■ 이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외 표 지 - 후면]

농 림 부

한국농촌공사